

碩士學位論文

일제하 식민지 경마정책의 성격

濟州大學校 大學院

社 會 學 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金 正

1999년 6월

碩士學位論文

일제하 식민지 경마정책의 성격

濟州大學校 大學院
社 會 學 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金 正

1999년 6월

일제하 식민지 경마정책의 성격

指導教授 趙 誠 倫

金 正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6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金 正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9年 6月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RSE RACING POLICY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Jeong Kim

(Supervised by Professor Sung-Youn Cho)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9. 6.

목 차

I. 들어가는 말	1
II. 이론적 검토	5
1. 제국주의와 식민지정책	5
2. 경마의 개념과 경마정책	9
3. 연구의 범위와 과제	13
III. 식민지 경마정책의 전개과정	17
1. 일제 초기(합방~1920년대)	17
2. 법·제도화 시기(1930년대)	26
3. 관(官) 주도 운영기(1940년대)	38
IV. 식민지 경마정책의 목적	43
1. 군사적 필요성	43
2. 세수(稅收)의 확보	46
3. 지배이데올로기의 강화	52
V. 식민지 경마정책의 영향	57
1. 운영조직의 국가 독점화	57
2. 국내 경마정책의 전근대적 성격	62
3.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구조화	64
VI. 맺음말	67
<도움받은 글들>	72
<부 록> 일제하 경마관련 법규 및 규칙	74

표 목 차

<표 3-1> 전국 경마 개최현황(1022-1927)	22
<표 3-2> 조선경마시행령 주요내용	27
<표 3-3> 조선경마령 시행규칙 주요내용	28
<표 3-4> 소화 17-18년 경마매출 및 입장인원	33
<표 3-5> 조선마사회 설립목적과 사업의 범위	40
<표 4-1> 일본의 군사비와 조세부담	48
<표 4-2> 마권매출액 및 세금지출 현황(1933-1939)	50
<표 5-1> 운영시기별 경마운영조직체의 법인성격	58
<표 5-2> 경마법인의 운영근거법규	60

SUMMARY

Modern horse racing in Korea began in the early stage of the Japanese colonialism when the Government general of Chosun surfaced as the acting ruling power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Naturally, the Japanese, who kept a firm hold on the colony, occupied the seats of an organization controlling the horse racing business. In this respect the thesis lays out on the premise that the modern style of the horse racing virtually began and was already institutionalized in Korea (then, Chosun) under Japanese colonialism. In addition, I can say it was the historical result of the colonial policies on horse racing that the organization, which assumed full charge of the horse racing business, could be legitimately run as one of the affiliate organizations of the government. That is to say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gained virtual control over the horse racing business as part of the colonial policies and had an exclusive power on matters of the organization. Even now, a half century after Korea was liberalized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managing rights of the horse racing industry is still possessed and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which is the same as it was during colonialism.

Under the point of this argument, I will observe in chapter 2 the militant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its national objectives, which were the backgrounds of the horse racing policy under colonialism. The periodic developments of the policy during the colonial periods will be considered in chapter 3 and the purposes for which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enforced the policy will be examined in chapter 4. And I will pay attention to the pervasive effects themselves seen in the process of the execution of the horse racing policy and to what extent they impacted the Korean horse racing industry.

As you may know from the above, the Korean horse racing was under the very tight control and influence of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as part of the colonial policies. Thus, policies not only left a direct impact over the character formation of the horse racing industry itself, they also had far-reaching effects on the business orientation of the organization and on the recognition of the horse racing industry by the participants and the general citizens.

Especially we need to notice that Japan showed interest in the horse racing industry because it served as a political tool for the Japanese. It served as a mechanism for expanding her militant imperialism. It also asks for attention that Japan needed the horse racing in order to secure tax revenues and reinforce the ideology of the ruler.

From the viewpoint of the participants in horse racing, however, it was obvious that the horse racing had a dual character to it. One was curiosity for products of the modern civilization, the expectation from betting on the horse racing, and the pleasant feelings associated with the speed of a running horse, all of which brought spectators to watch the races again and again. The other was the uncomfortable emotion for the fact that the horse racing was controlled mostly by the Japanese of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and self-awareness that they were getting addicted to the game and bordering on gambling in spite of themselves. Such dualism reflected the character of colonialism

on one hand, but also that experienced in modernity on the other hand.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horse racing industry can be materialized in a concept, namely *colonial modernity*.

While considering the backgrounds on which the colonial horse racing industry has developed into today's, we feel it very necessary to observe the fact that horse racing was legally institutionalized as a political policy of a nation all over the world. That is, although gambling activities such as horse racing are controlled in direct or indirect manners by the laws of a government or a self-governing body in most countries, they are also legitimately run by the necessity of the government within an institutionalized frame.

The fundamental reason that most countries legalize horse racing is to enlarge a national finance. Therefore, a country that considers horse racing as an object of its tax revenues may show the sam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power as those of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in the period of the introduction of horse racing and the Government for a nation at the present time. In addition, the human psychological reaction to the games bordering on gambling would not have changed much since then. Because of this attribute, horse racing has, since then, been able to be institutionalized thus gaining a solid footing in national policy, taken deep root, and been reproduced in the real world.

I. 들어가는 말

국내 최초의 경마법인(競馬法人)은 1922년 설립이 인가된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朝鮮競馬俱樂部)>였으며, 설립된 해에 이 단체가 실시했던 경마는 근대경마의 출발점이 된다. 물론 그 이전에 승마구락부(乘馬俱樂部) 회원이 주축이 되어 경마대회를 했던 기록이 있지만, 이는 동호회적 성격의 친목단체 모임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마대회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합된 조직이었다. 그러므로 최초의 경마법인이 공식적으로 인가되어 운영조직의 면모가 갖춰진 상태에서 제도화된 경마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조선경마구락부>의 설립은 근대경마의 효시를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근대경마는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실질적인 지배세력으로 등장하여 식민지정착을 실시했던 일제 초기에 시작되었으며, 경마를 주도했던 운영조직체의 구성원 역시 식민지 조선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일본인들이었다. 결국 한국경마는 일제 식민지체제 속에서 생겨난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점은 한국경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¹⁾

현재 한국의 경마는 정부의 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의 '한국마사회(韓國馬事會)'는 국내 유일의 경마운영조직체이며, 마사회 이외에는 말(馬) 또는 가축(家畜)을 이용한 경주를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²⁾ 이러한 규정성은 경마운영에 대한 통제와 규제라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반면에 경마의 합법화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는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는 허용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경마에 대한 이러한 규제와 허용의 정책적 양면성은 국내경마의 형성기

1) '조선경마구락부'가 첫 경마를 실시한 것은 1922년 5월 20일로, 현재 '한국마사회'에서는 이 날을 '경마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법인에 의해 최초로 경마가 실시되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 '한국마사회법'은 정부조직법에 의거 1962년에 법률 제1012호로 제정되었는데, 정부가 감독권을 가지며 정부 산하의 비영리특수법인인 한국마사회에 의해서 관련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가 독점적 지배권을 지닌다(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법] 제36조- '사업의 범위' 및 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라 할 수 있는 일제 식민지체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즉 경마의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체가 정부의 한 산하기관으로서 합법적인 제도화의 길을 걸었던 역사적 계기는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였던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통치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국내경마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경마에 대한 통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마운영조직체의 독점이라는 특성도 형성되었으며, 해방후 반세기가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식민지정책에서 파생된 국가에 의한 경마운영권의 독점적 지배라는 통제적 성격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경마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규정해 본다면, 우리의 경마는 일제의 식민지배과정에서 생산·재생산되었으며, 해방 후에도 그것의 변형적인 연속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오늘날의 경마 현상이 여타의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든지 또는 시간적으로 선행했던 사회들과 따로 떨어진 것처럼 취급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식민지체제를 연구하면서도 식민지통치의 핵심인 일본의 제국주의적 의도와 이해관계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정치적 실체와 본질에 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즉 최근까지 지속된 논쟁에 비해 이 점은 너무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오랫동안 식민지 연구는 조선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조선을 식민지화하여 이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재구성하려는 일제의 식민통치 그 자체에 관해서는 상당히 제한된 지식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는 총체적 관점에서 식민지 체제를 연구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들이 조선에서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했으며, 그 결과 조선은 어떻게 재구조화되었는가를 분석이 요구된다.³⁾

그러나 이와 관련된 사회과학 분야 또는 역사학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일제 식민지체제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계를 비롯하여 사회학과 정치학,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동안 상당히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의 새로운 연구들에서도 경마의 문제를 주제로 다룬 글은 없는 형편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학

3) 김동노, 1988, 「식민지시대의 근대적 수탈과 수탈을 통한 근대화」 『창작과비평』 99호 (1998년 봄호) 112-132 .

적 또는 여타의 관점에서 경마정책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할 때, 과연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한국경마에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와 경마의 어떤 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해결의 출발점으로서 국내 근대경마의 역사는 일제 식민체제에서 비롯된 만큼 한국경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경마가 도입되고 형성되었던 시기의 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식민체제의 문제와 함께 당시의 경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일제에 의해 이루어졌던 경마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정책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이 근대 한국경마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의 바탕 아래 접근한다고 해도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의 문제가 남아 있다. 즉 경마와 같이 식민지 피지배의 과정에서 틀이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연구대상들이 지니는 성격을 어떤 시각에서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된 경향을 지니고 있는데, 일제에 의한 수탈의 대상이었던 만큼 식민지성을 심화시킨 원인이 되었다는 점과 본격적인 근대화에 일면 기여했다는 양면적 성격의 평가가 대치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연구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가치판단의 문제와도 결부되지만, 지금까지의 식민지체제에 대한 연구의 중요한 범주가 되었다는 점에서 일제하의 식민지 경마정책의 연구에도 그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대적인 형태의 경마가 식민지시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식민지체제하에서 이미 식민지적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근대의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근대라는 개념과 척도가 지니는 성격상 다분히 서구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사회의 성격과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⁴⁾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려 하는 경마와 관련해

4) ‘근대성’ 또는 ‘근대화’에 개념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다면적 성격상 정의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 신용하의 「‘식민지근대화론’ 재정립 시도에 대한 비판」(『창작과비평』 98호 1997년 겨울호)에서는 “일제 ‘식민지정책’에 의해 과연 ‘근대화’가 이루어졌는가를 엄격히 학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근대화’ 개념의 골격만이라도 사회과학적으로 논의하여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기본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즉, 정치적으로는 독립한 국가가 전제군주제를 입헌대의국가로의 체제변화, 경제적으로는 중세적 경제조

서는 식민지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한국 내에서의 근대적인 형태의 경마와 경마정책이 일제강점기 식민지체제에서 비롯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만큼, 그 형성과정과 내용 면에서 근대성과 식민지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으며 양자가 동태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제도화되었고 재생산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제가 주도했던 경마정책의 변화과정에서 그것이 ‘식민지성(植民地性)’과 ‘근대성(近代性)’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으며, 경마정책이 지닌 식민지정책으로서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제하의 경마와 경마정책에 내포되어 있는 식민지적 근대성의 문제가 해방 이후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구조화되어 재생산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연구는 일제하에서 이루어졌던 식민지 경마정책의 이중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그것이 현대 한국경마의 정책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주목한다.



직과 생산방식으로부터 산업자본주의 공업화 달성, 사회적으로는 전근대 신분제 사회에서 시민권을 가진 국민들의 근대시민사회로의 변화, 문화적으로는 특권귀족층 중심의 귀족문화로부터 일반평민과 국민 중심의 근대 민족문화로의 변혁적 발전을 성취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검토

1. 제국주의와 식민지정책

식민지정책의 문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식민지 정책을 실시했던 지배국가의 독재적 혹은 중앙집권적 권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제국주의라는 개념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제국주의의 형식을 본다면 민족간의 관계로 설명되는 개념 이기는 하지만 민족이 항상 단일한 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그 구성원, 시민, 단체, 주식회사 등도 국제관계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민족의 의사결정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제국주의를 이해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국주의는 어떠한 종류의 국제관계 또는 민족관계를 형성하는가? 그것은 바로 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실제적인 영향력의 행사를 포함한 국가간의 고유한 불평등성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의 핵심은 지배라고 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대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실상의 지배와 통제의 모든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1910년 한 일합방을 통해 조선을 식민지 통치했던 일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였다.⁵⁾

식민지사회에 대한 제국주의의 규정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식민지 통치기구의 제반정책을 통하여 위로부터 행해진다는 데 식민지정책이 갖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의 자율적인 내재적 발전계기를 억압하면서 그들의 이해관심에 따라 식민지 사회구조를 재편하였다. 더욱이 총독부 권력은 일본자본주의 발전단계에 따른 일본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는 일본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적 외연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식민지의 내재적 발전과는 무관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상부구조의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면서 식

5) 제국주의국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론에 대해서는 강성학의 『제국주의의 해부-지배와 종속의 정치경제학』(서울:법문사,1993)을 참고해 볼만하다.

민지사회의 하부구조를 재편성하였다(공제욱外, 1989:166).

그런데 일본제국주의의 노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그들의 군국주의(軍國主義)적 성격으로, 일제의 군국주의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제국주의 노선에 군국주의적 성격을 고무시킬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국제관계 속에서 일본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일찍이 노일전쟁 이후인 1906년 육군의 최장로(最長老)인 산현원사(山縣元帥)가 제출한 <帝國國防方針案>을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를 계기로 국책(國策)의 근본에 대하여 군부(軍部)가 결정적인 발언권을 갖는 정치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일본의 최고국책이 중국침략으로 굳어짐에 따라 육군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군국주의일본으로 변신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대정시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군국주의 기틀을 확립하였으며 나아가서 이러한 군국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제국주의적 침략을 강화하였다. 그 구체적인 현상으로 중국 침략의 전초기지로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총독정치가 1910년에 강행되기에 이른 것이다.⁶⁾

1910년대에는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혁명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었다. 1910년대의 변화는 대정(大正) 일본이 처한 국제정치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팽창주의(膨脹主義)에 절호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동아시아 구질서의 세력균형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였던 청조(淸朝)가 무너지고, 서구의 제국주의적 열강들이 자멸(自滅)적인 대전(大戰)의 와중에 휘말리게 됨으로써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신흥 미국과 일본의 각축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장달중, 1986: 37).

그런데 이 시기에 일어났던 제1차세계대전은 일본이 처음으로 맞이하였던 만성적인 불경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명치시대(明治時代) 말기의 전쟁도발과 식민지화정책 그리고 군비확장 등을 정당화시켰으며 전쟁 불과 대륙진출의 발판을 만들어 줌으로써 명치시대와는 다른 일본경제의 발전을 뿌리내리게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쟁경기로 얻어진 일본경제의 특수성은 점차 그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식민지배가 시작되었던 대정시대(大正時代),⁷⁾ 그들의 경제

6) 이종훈, 1986, 「大正日本の經濟」 『亞細亞研究』 제29권 제2호 61-62쪽.

7) 일제 침략기는 크게 대정시대(大正時代)와 소화시대(昭和時代)로 나눌 수 있다. 대정(大

적 성격은 곧 일본자본주의 형성의 특성인 후진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바로 다른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재벌(財閥)과 국영(國營)이 중심이 된 관료적(官僚的) 독점자본주의(獨占資本主義)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관료적 독점자본주의는 일본근대화의 세계전략이 대륙진출이었던 만큼 군사적 식민주의와 여기서 파생한 신흥재벌중심으로 변질되어 갔다.

이와 같이 일본자본주의는 국영(國營)과 대륙침략에 의하여 위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구미의 전통적인 산업자본주의와는 반대로 재정규모의 확대라고 하는 고비용의 정부에 의하여 촉진되었다. 일본적인 고비용 정부는 청일전쟁(淸日戰爭)후의 전후경영(戰後經營)과 노일전쟁(露日戰爭)후의 대륙경영을 위한 거액의 군사비 지출에 의하여 야기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일본자본주의의 군국주의적 성격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일본재정의 군사적 성격은 일본근대화의 기본전략인 부국강병(富國強兵)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이며, 이는 바로 일본자본주의의 군사적 색채를 농후하게 하였다. 국민의 생활수요 보다는 국가의 수요에 의하여, 경공업이나 기계공업보다는 군수공업이나 화학공업이 이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근대화는 국가재정의 팽창(膨脹)에 의하여 군사공업으로서의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이 발전함으로써 이룩되었고, 산업의 이중구조와 불균형적 성장을 야기하여 그 부담을 식민지에 전가시키는 군사적 제국주의의 성격을 내포하였다고 할 수 있다(이종훈, 1986: 79-81).

아울러 식민지시대 초기부터 군국적 제국주의를 택한 일본은 이후 소화시대(昭和時代)에 접어들면서는 그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소화경제(昭和經濟)의 특수성 또한 소화시대에 우연히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는 일본근대화의 출발점인 명치시대(明治時代)의 초기부터 서구선진국의 산업혁명에 의한 자생적인 자본주의와는 달리 인위적인 제도개혁에 의해 시작된 일본자본주의의 특성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즉 일본의 명치유신에 의해 개국되었을 당시 서구열강들은 풍부한 경제력과 막강한 무력을 배경으로 아시아, 아프리카에 진출하여 무역은 물론 식민지를 개척하는 권력정치와 와중에 있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열강에 대항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부국강병(富國強兵) 이외의 다른 방

正)은 1912년부터 1925년에 이르는 시기이며, 소화(昭和)는 1925년부터 시작되어 1988년까지의 시기이다.

도가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부국은 단순히 일반적인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강병(強兵)’을 위한 것이었다. 즉 철도, 통신시설, 근대공업도 모두가 강병을 위해서라는 사고방식이 명치정부에 강하게 나타났던 점을 부정할 수 없다.⁸⁾ 이와 같이 명치유신 이래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일본의 경제는 강병(強兵)을 위한 것이었으며 강병을 통해서 부국(富國)을 이룬다는 기본전략 아래 모든 경제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후 전개된 청일전쟁(淸日戰爭)은 일본의 서구화하려는 의지의 표시이고 노일전쟁(露日戰爭)은 서구화 의지의 확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이들 두 전쟁을 통하여 서구열강(西歐列強)과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서구 열강들은 부국(富國)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병(強兵)을 추진하였으나 일본은 부국이 충분히 되지 못한 상태에서 강병을 서둘렀기 때문에 군국주의(軍國主義)의 대두와 인위적인 제도개혁에 의한 정책추진이 불가피하였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점이 일본자본주의의 특성인 군국주의와 독점자본주의(獨占資本主義)가 짝튼 온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본은 청일전쟁(淸日戰爭) 이후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까지 불과 50여년 사이에 10회 이상 병력을 해외에 파견하였는데, 일본은 이와 같은 전쟁을 통하여 그들의 산업자본주의를 확립하고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구의 자본주의가 산업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단계를 거쳐서 이룩된 순수(純粹)자본주의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던데 비해서 일본의 자본주의는 강병(強兵)에 의한 부국(富國)을 이룩한다는 전략 하에서 전쟁에 의해 산업화를 추진하는 변형된 산업자본주의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소화경제도 이러한 변형된 산업자본주의의 한가지 형태인 독점(獨占)자본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처럼 일제가 제국주의를 확산하면서 군사적 성격을 강력하게 고무시킨 이유를 종합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후진국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중국이 제국주의 열강의 분할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만일 중국을 일본이 확보할 수 없게 되면 제국주의적 발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본 자체의 생존이 위협 당할 위험이 있었다. 둘째, 원래부터 국내 시장의 확대에 의해서라기 보다도 국민의 낮은 생활수준을 기초로 한 저임금을 무

8) 이종훈, 1989, 「昭和日本の 經濟」 『亞細亞研究』 제81호, 아세아문제연구소, 282쪽.

기로 세계시장에서의 몫을 확대함으로써 발전하여 온 일본자본주의의 특성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경제구조하에서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진 일본자본주의의 모순을 대외위기의 확대에 의해 국민의 시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는 쉽게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이종훈, 1989). 이러한 위기의식이 결과적으로 군국주의적 제국주의의 확산을 야기했으며 그와 더불어 식민지 내에서의 각종 정책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주창했던 '고도국방국가(高度國防國家)의 건설'이라는 국가 정책지향 속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군사적 특성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 아울러 이러한 특성은 식민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각종 식민지정책으로 나타난다. 즉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종합하면 식민지 국가의 민족말살정책과 사회경제적 수탈을 통해 제국주의를 확대한다는 노선인 것이다. 결국 이런 맥락에서 식민지통치에서 발생한 경마정책은 군국적 제국주의의 확산을 위한 수탈과 지배를 위한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경마의 개념과 경마정책

비록 국내에서의 경마가 식민지체제의 산물로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지만, 서구에서 출발한 근대경마는 생각보다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즉 경마의 기원은 인간이 최초로 말(馬)을 사육하고 길들였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달리는 말의 경주 그 자체로 시작되었으나, 이것에 보다 좋은 말을 생산하기 위한 인간의 욕구가 가미되어 근대적 의미의 경마를 시행하는 단계로까지 변화하였던 것이다.

고대(古代)의 경주는 문헌상으로는 B.C. 800년경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 말의 경기가 서술된 것이 최초이나, 공식적인 기록은 B.C. 776년 제23회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 에서 네 필의 말이 끄는 마차경주가 있었고, 제 33회 때에 처음으로 사람이 말에 올라 탄 경마의 모습이 등장했다고 한다. 그 후 그리스에서 로마로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 오락경기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현재의 '경

마(Horse Racing)'라는 명칭을 사용한 공식경마는 1174년 영국의 헨리 2세 때 개최된 경주에서 비롯된다.⁹⁾

이후 성장을 계속한 경마는 1660년에는 1마일(1600m)을 1분에 주파한 아랍계 우수 종마(種馬)가 생산되면서, 현재 전세계의 경마계를 석권하고 있는 '더러브렛(therbreth)종(種)'의 원조인 경주마들이 등장하여 경마의 스피드를 높였다. 즉 현대의 경마는 이 '더러브렛'의 탄생에서 발전의 기초가 되며,¹⁰⁾ 영국은 근대경마 형성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영국에서 생성된 근대경마는 전투력 향상 측면에서 시행되어온 고대경주와는 또 다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인간이 말에게서 요구하는 것은 역용(役用)인 경우 '지칠 줄 모르는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빠른 속력(speed)'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말의 능력은 얼마나 빠른가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보다 빠른 말을 개량하고 증식하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보편적 원칙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말의 능력(speed)을 검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경마의 탄생은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당시의 경마 형태는 누가 소유한 말이 우수한가를 가리는 우열다툼을 위한 경주였으며, 당시로서는 말의 재산적 가치가 매우 높아 말 소유자는 대부분 왕실이나 귀족 계층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초창기 경마는 이들만의 도락(道樂)으로 성행되었는데, 경마계(競馬界)에서 경마를 가리켜 '왕가의 스포츠(Sports of Kings)'라고 지칭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다(한국마사회, 1990: 11).

그러나 초기경마에는 베팅이 없었다. 출전하는 말의 소유자가 곧 관람자였으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말이 출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관전(觀戰)의 흥미가 유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마가 점차 정착·확산되면서 출전하는 말과 직·간접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제 3의 관람자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아울러 이들의 흥미

9) 김문영, 1994, 『알기 쉬운 경마여행』, 울도, 77-78쪽.

10) 이들은 '달리 아라비안', '고돌핀 아라비안', '바이얼린 터크' 등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현대 경주마의 3대 시조로 불리어지고 있다. 즉 현대경마에 출주하는 경주마들은 대부분 '더러브렛'으로 이 종(種)은 모두가 3대 시조로부터 생산되어진 혈통이며, 그 후손들인 것이다. 따라서 경마를 '혈통의 경기'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국제적인 경주에서는 이 혈통이 증명되고 등록되어야만 공식적인 경주마로서 인정된다(한국마사회, 1994, 『말의 혈통 및 등록에 관한 국내외규정』 3-6쪽).

를 유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현금을 거는 베팅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베팅시스템은 인간의 욕구와 맞아떨어지면서 경마의 확산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19세기 말 프랑스의 피에르 올레(Pierre Oller)가 오늘날과 같은 베팅형태인 '패리뮤추얼(PariMutuel)방식'¹¹⁾을 창안해냄으로써, 운영조직체의 제도화와 승마 투표의 체계화를 가능케 했고 비로소 대중을 위한 경마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마운영의 근거가 되는 한국마사회법에서는 '기수(騎手)가 기승(騎乘)한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권(乘馬投票權)을 발매하고 적중자에게 환급금(還給金)을 교부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¹²⁾ 즉 정해진 조건하에서 말에 기수가 기승하고 일정한 거리를 뛰어 승부를 겨루는 경주이다. 참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베팅에 참가하여 적중이 될 때는 적중금액에 안분(安分)된 배당금을 받고, 적중시키지 못했을 때는 베팅 금액 전부를 잃는 놀이'인 것이다.

따라서 경마는 말을 이용하여 승부를 가리는 경주라는 점에서는 스포츠라고 볼 수 있지만, 승부에 대한 베팅과 적중시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사행적(射倖的) 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스포츠라는 측면에서는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등과 같은 관람스포츠로, 놀이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한 예견 또는 지배할 수 없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현상적(懸賞的) 사행계약(射倖契約)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경마에 대한 개념은 카지노나 경륜(競輪), 투전(投錢)과 같은 도박적 성향의 놀이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이러한 시각

11) 현대경마의 보편적인 베팅 특성인 이 Pari-mutuel Betting체계의 특징은 첫째, 경마 운영조직체의 이익금이 배당률의 고저(高低)나 특정마의 우승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점과, 둘째로 예상배당률이 미리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각 베팅 방식별로 걸린 금액에 의하여 베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변동되며, 베팅이 마감되면 각각의 최종 배당률이 확정되어 지불할 배당률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 체계를 창안한 프랑스의 피에르 올레는 사설마권업자로 1872년 우승마나 배당률에 관계없이 어떤 경주에든 운영조직체가 손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발명한 방법으로 현대경마를 대중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한국마사회, 1995, 『승마투표 소개 및 발전방향』 21-23).

12) 한국마사회법, 제1장 총칙 제2조 1: '경마의 정의'

13) 1997년 한국마사회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경마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97 경마 고객 성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마장과 느낌이 비슷한 시설로는 '빠짱코/도박장'이 42.0%, '야구장과 같은 스포츠 관전'이 38.3%, '오락실과 같은 게임센터'가 30.4%의 비율의 응답을 보이고 있어 아직도 경마는 도박성의 이미지를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이 경마장을 찾는 이유와 응답자 자신이 경마장을 찾는 이유를 각각 질문한 결

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현금이 오가는 경마의 베팅 특성에서 기인되는 원인과 함께, 경마를 바라보는 사회 윤리적인 시각 때문일 것이다. 특히 유교적 도덕관념이 윤리의식의 기초가 되어왔던 한국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면서 본능적인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경마가 운영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보다도 이러한 성격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도박의 일반적인 속성은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에 있을 것이며, 이 우연성은 비합리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우연성이라는 범주는 근대적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될 수 있으면 배제되는 영역이었다. 근대적 생산 및 유통, 그리고 분배는 투명한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과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는 계속해서 우연성에 근거한 도박적 결과는 금지되며, 그것은 단지 신화적인 존재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요된다.¹⁴⁾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본주의가 성장할수록 자본주의적 대중은 이 우연성을 갈망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 대중의 경마에의 참여는 그 우연적이고도 비합리적인 신화(神話)를 금지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이기에, 참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마장은 다분히 욕망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기를 거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자극과 위험부담을 즐기려는 심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¹⁵⁾ 또한 게임의 승패가 전략과 기능에 크게 좌우되는 경우에, 도박은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기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일상적인 활동에 비해서도 도박이 갖는 또하나의 색다른 속성은 게임에서 이겼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 즉시 이루어지고 또 별다른 방해 없이 위험부담 행위에 연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¹⁶⁾

그러나 경마가 오늘날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와 같은 인간의 심

과, 두 경우 모두 '돈을 따려고'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일반인 55. 1%, 자신 33. 6%)는 점에서도 경마는 도박성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갤럽, 1997, 『'97 경마고객 성향조사보고서』 38-43쪽).

14) 이성욱, “‘합리적 우연’의 야릇한 미소”, 『중앙일보』, 1997년 1월 11일.

15) Knowles, 1976; Ginsberg, 1976; Lorenz, Politzer & Yaffee, 1990(김석준, 1996,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쪽에서 재인용).

16) Goffman, 1967(김석준의 워트 글 29쪽에서 재인용).

리적 특성뿐 만 아니라, 그것이 세계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의해 합법적으로 제도화(制度化)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경마와 같은 낚시행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제도화된 양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경마가 합법화된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조세정책상의 필요성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경마가 합법화되어 있는 모든 국가의 정부는 경마에 대한 조세정책을 통해서 경마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원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세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일제가 식민지에서의 경마정책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한 목적도 그들 제국주의의 군사적 특성의 신장을 위한 군마(軍馬)의 생산을 경마의 활성화에서 찾으려고 한 직접적인 목적과 함께, 바로 위와 같은 세수의 확보 등 부가적인 원인이 작용되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3. 연구의 범위와 과제

일제 침략기의 국내경마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정책과 연계되어 강력한 규제력을 발휘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경마정책은 경마 자체의 성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마운영을 주도했던 조직체의 운영방향과 경마에의 참여자, 그리고 경마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인식에도 그 파급효과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당시의 경마정책에 대한 연구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식민지정책과 경마정책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당시 경마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식민지정책으로써 경마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함께 일본 국내의 경마정책과의 관련성 등도 이해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의 경마정책이 일본과 한국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당시의 식민지 경마정책의 특성을 보다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마의 물적 자원이자 토대가 되었던 말(馬)에 대한 문제는 경마와 직결되어 있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일제의 군국주의적 성격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일제에 의해 제도화가 이루어졌던 경마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범주 속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경마 자체의 현상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경마 운영을 주도했던 경마운영조직체의 특성, 그리고 경마참여자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 등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문은 결국 당국의 경마정책에 의해서 그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경마정책의 내용과 그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당시의 경마정책은 일반적인 정책과는 그 상황을 달리한다. 우리민족이 내부적 요구와 필요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주체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탄생된 것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형성의 가장 큰 요인이 국내의 상황이 아닌 외부적 상황과 필요성에 의해 규정되었고, 정책의 실행은 식민지 내부에서 시행됐다는 이중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식민지체제의 연구에 있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식민지성(植民地性)’과 ‘근대성(近代性)’의 문제가 경마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식민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개념화시켜 본다면, ‘식민지성’과 ‘근대성’이란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어느 편에 더 초점을 두면서 둘 사이의 관계를 보느냐에 따라 일제 식민지시기 성격에 대한 이해를 달리했으며, 아울러 식민지성과 근대성이 모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함께 보자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립되는 관점을 단순화시켜서 본다면, 크게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나눌 수 있다. 앞의 것은 기존 역사학계의 지배적 관점인 내재적 발전론의 입장으로, 식민지 시대를 ‘침략과 수탈’에 대한 ‘저항’의 역사로 파악한다. 일부 개발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체계적인 수탈을 위한 개발이고, 파편적이거나 ‘근대화’가 추진된 부분은 우리 민족이 투쟁하여 이룬 부분적 성과였다는 것이다. 반면에 뒤의 입장은 수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민지 기간 동안 성장과 개발의 경험도 했다고 본다. 따라서 식민지 시기를 ‘침략(수탈)과 개발’의 양면이 동시에 공존하는 사회로 봐야 하는데, 특히 개발의 측면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발전을 그 이전 시기와 연결시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¹⁷⁾

그런데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주로 식민지체제의 거시적 성격에 집중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이나 제도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드물다. 또한 두 개념을 다분히 극대화시켜 양극화된 양상으로 대립되어 있으며, 논쟁이 진전됨에 따라 점차 갈등구조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사실 일제하 식민지라는 구체적인 사회현실 속에서 ‘식민지성’과 ‘근대성’은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개념적으로는 ‘식민지성’과 ‘근대성’이 분명히 구분되지만 이것은 식민지성이고 저것은 근대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그 두 가지 성격은 서로 맞물려 있고, 식민지적 근대화 속에서 식민지성과 근대성은 동시에 관철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민지 사회현실은 두 성격만으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 점이 바로 ‘식민지적 근대성’이 갖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이런 점에서 식민지 경마정책의 문제를 통하여 당시 경마정책의 특성을 이해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식민지적 근대성’의 개념에 입각하여 해방 이후의 경마정책의 성격 형성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내경마의 출발점은 일제 식민지 시기였지만, 정부수립 이후 사회의 전반

17) 김영근, 1999 「일제하 일상생활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이 논문과 함께 김동노의 「식민지시대의 근대적 수탈과 수탈을 통한 근대화」(『창작과비평』 1998년 봄호)에서는 식민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소개하고 있다. 즉, 주종환, 1994 「증진자본주의의 ‘근대’ 개념과 신식민지사관」 『역사비평』 겨울호 ; 정태현, 1996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화 모순과 그 실체」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역사비평사 ; 안병직, 1996 「식민지 시대연구」 『시사저널』 7월4일자 ; 이준식, 1996 「식민지근대화론의 비판적 검토」 『한국역사연구회 회보』 26 ; 조석곤, 1997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창작과비평』 여름호 ; 정태현, 1997 「수탈론의 속류화 속에 사라진 식민지」 『창작과비평』 가을호 ; 신용하, 1997 「‘식민지근대화론’ 재정립 시도에 대한 비판」 『창작과비평』 겨울호 ; 안병직, 1997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작과비평』 겨울호 ; 유재건, 1997 「식민지·근대와 세계사적 시야의 모색」 『창작과비평』 겨울호 ; 이홍락, 1997 「내재적 발전론 비판에 대한 반비판」 『역사비평』 겨울호 ; 정병욱, 1998 「역사의 주체를 묻는다 :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을 둘러싸고」 『역사비평』 여름호 ; 조석곤, 1998 「식민지 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 재검토」 『동향과전망』 여름호 ; 정연태, 1999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의 비판과 신근대사론의 모색」 『창작과비평』 봄호 등이다).

18) 김영근의 원 글

적인 변화와 함께 경마와 경마정책 또한 모습을 달리하며 식민지성을 내재한 채 경마의 주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식민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분법적 논의와는 달리 식민지체제에서 일어났던 경마와 경마정책은 수탈과 개발, 식민지성과 근대성의 문제가 동시적이며 중첩되어 있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경마정책이라는 구체적인 수준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의 범위에서 식민지경마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일제하 식민지체제 속에서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루어졌던 경마정책의 문제를 다루려 한다. 아울러 그것이 식민지정책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변화되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것의 파급효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식민지 경마정책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그것이 지닌 '식민지적 근대성'의 특징을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전체적 시각에서 식민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경마와 경마정책의 문제가 어떻게 식민지적 근대성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경마를 통한 식민지적 근대화의 경험이 한국경마의 근대성 형성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당시의 경마와 경마정책의 근대성 문제를 통해서 해방 이후 주체적인 정책형성의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속에서 식민지적 근대성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의 역사가 식민통치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분야에서 본질적으로 왜곡되었던 사실에 주목하여, 이러한 역사와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경마정책에서 기인된 경마의 역사적 특성과 제도화된 성격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특성이 현재까지 재생산되고 있는 정책적 원리로써 한국경마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다 실제적인 개념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식민지 경마정책의 전개과정

1. 일제 초기 (합방~1920년대)

우리 나라에서 말(馬)을 이용한 근대경마의 시초는 1898년 5월 28일 관립(官立) 외국어학교 연합운동회에서 육상경기의 한 종목으로 실시된 나귀경주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나귀경주를 경마라고 하기는 미흡한 점이 많으나, 당시 외국어학교의 교사들은 모두가 외국에서 초빙해 온 서양인이거나 선교사 또는 신부들이어서 육상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 나귀경주도 외국인 교사들이 외국의 경마를 모방한 것으로, 그 형태상 학생들에 의한 축소판 조랑말 경주였다고 할 수 있다.¹⁹⁾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졌던 학생들의 나귀경주는 그 이후 190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학교운동회는 그 후에도 훈련원에서 계속되었으나, 나귀경주를 실시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데, 나귀를 운동장에 끌어들이는 것이 번거롭고 위험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학생들의 나귀경주가 있는 지 약 10년 후인 1907년과 1909년 한강 백사장과 훈련원에서 실시된 기병경주(騎兵競走)는 국내에서 성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최초의 경주형태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제전경마(祭典競馬)’²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로 일본군대의 기병(騎兵)들이 즐겨 벌이던 경주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마는 구한말부터 학생들과 기병들에 의해 개화기(開化期) 풍물(風物)의 하나로서 등장했으나, 1910년 한일합방을 맞아 경마의 주역은 주로 일본인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1909년의 근위기병대(近衛騎兵隊) 경마 이후 한일합방 초기에는 경마를 한 기록을 찾을 수 없는데, 일본기병들도 전국 도처에

19) 사실 외국에서도 학생들에 의한 유사경마(類似競馬)가 그 나라 경마의 시초가 되었거나 조랑말로 경마를 시작한 곳도 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인 1897년 태국에서는 라마5세의 유럽 시찰 귀국 축하행사로 학생들이 방콕 시내 광장에서 속보경마를 한 것이 태국경마의 시초가 됐으며, 홍콩의 경마는 1845년 영국인이 포니(Pony)로 시작했다(한국마사회, 1984: 41-42).

20) 제전경마(祭典競馬)란 축제나 종교행사에서 ‘여흥(餘興)’이라는 명목으로 실시되었던 경주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서 발생한 우리 의병(義兵)들과의 충돌 등의 문제와 대내외적인 정세의 영향 등으로 기병경주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던 중 1914년 4월 3일 ‘조선공론사(朝鮮公論社)’²¹⁾ 주최 ‘조선경마대회(朝鮮競馬大會)’가 용산의 구연병장에서 열렸다.²²⁾ 민간인이 주동했던 경마로서는 이것이 최초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무료로 공개된 이 대회에는 각국 영사(領事) 및 고위관리들과, 이국적인 풍물(風物)을 구경하려고 모인 남녀노소 관람객이 10만 명을 헤아렸다고 <조선공론>²³⁾은 기록하고 있어 대성황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이 대회 역시 승마투표권(勝馬投票權) 즉 마권이나 경품권이 없었던 축제행사의 하나로 형태적으로는 근대경마이지만, 내용과 형식은 상품으로서 구매력을 지닌 경마는 아니었다.

민간인 주도로 경마가 활발히 추진된 것은 1919년 봄 삼일운동 직후였다. 이 해 5월 18일 ‘경성승마구락부(京城乘馬俱樂部)회원’²⁴⁾들은 가을에 경성에서 경마대회를 개최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경주마와 기수를 일본에서 초빙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하려던 이 경마대회는 결국 유산되고 말았다. 대회가 임박했던 9월 하순이 되자 조선총독부는 대회의 중지를 요구했는데,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삼일운동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즉 총독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인이 주축이 된 행사이기는 하지만 대규모의 군중이 동원되는 이러한 행사를 쉽게 허가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서울의 경성승마구락부회원들에 의해 본격적인 경마가 실시된 것은 당초 계획했던 대회가 유산된 지 2년만인 1921년 5월 7일과 8일 용산신연병장에서 개최된 ‘전선(全鮮)경마대회’²⁵⁾이었다. 입장권은 1등에서 4등권까지 네 가지 종류가 있었으

21) ‘朝鮮公論社’는 1913년 4월에 창간, 본사를 일본 동경에 두고 편집국은 서울에 있었던 월간잡지로서 창간1주년 기념행사로 경마대회를 주최했다(한국마사회, 1984: 45-46).

22) 현건혁, 『일간스포츠』 1976년 8월 19일(『일간스포츠』의 경마관련 기사는 1976년 8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0여회에 걸쳐 <한국競馬半世紀>라는 제하로 기획 연재되었다. 비록 스포츠일간지의 특성상 흥밋거리 위주로 보도되었지만, 기사 자료의 대부분은 한국마사회에서 제공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원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23) 『朝鮮公論』 1914년 5월간 제2권 제5호(한국마사회, 1984: 45에서 재인용).

24) 회원들은 주로 총독부의 관리이거나 조선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의 지휘관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한국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일간스포츠』 1976년 8월19일; 한국마사회, 1984: 47).

25) 당시 경마는 조선군사령부와 총독부(總督府) 경무국(警務局) 후원으로 열렸는데, 우승 기수에게는 일본도(日本刀)가 부상으로 주어지는 등 경마의 시초부터 군국주의적 색채를 띠

며, 승마투표(乘馬投票)는 ‘여흥(餘興)’이란 명목으로 주최측이 3회를 지정하여 실시했다. 하루 12회의 경주가 진행되었던 이 대회 역시 일본인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규모의 경마대회로서 근대경마의 형태를 서서히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⁶⁾

경성승마구락부가 주최했던 제2회 경마대회는 그 해 가을인 1921년 9월 23일과 10월 1-2일에 걸쳐 3일간 여의도에서 개최되었다. 용산신연병장은 밀려드는 인파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입장객들의 통제를 맡았던 조선군사령부의 요청으로 ‘여의도’²⁷⁾로 장소를 옮겼던 것이다.

서울의 경마가 활성화되고 있을 무렵, 지방에서도 소규모의 경마대회가 비교적 자유롭게 시행되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로 화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국내에서 지방의 경마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0년대 초였다. 당시 국내에는 경성의 조선경마구락부가 봄과 가을에 각각 6일간씩 연간 12일 열리는 경마대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 대회만으로는 조직체의 운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조선경마구락부는 지방에서 경마개최를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그들이 굳이 지방경마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서울과는 달리 지방에서는 각 도(道)의 장소 사용허가만 받으면 경마대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지방경마는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나라 최초의 지방경마 개최지는 군산(群山)이었다. 이곳은 일찍부터 일본인들이 상당수 거주했기 때문에 다른 지방보다 쉽게 경마가 들어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23년 군산 앞바다 해변의 백사장에서 열린 경마대회에선 갖가지 진풍경이 빚어졌다. 백사장에 말의 발이 빠지면 이를 구출하기 위해 기수가 말에서 뛰어 내려 관리인과 함께 발을 빼내어 다시 달리는가 하면 말의 속력을 내기 위해 관리인이 레이스에 뛰어들어 말의 엉덩이를 긴 채찍으로 치며 따라가는 광경들이 속출했다. 때로는 1인 1장으로 제한되어있는 마권이 한사람에게 여러 장씩 주어지기도 했으며,

었다(『일간스포츠』 1976년 8월 18일).

26) 한국마사회, 1984:47쪽

27) 당시 여의도는 노량진 쪽은 군용지로, 현재의 국회의사당 앞쪽은 일본인 아라이가 경영하는 목장이었다. 사토(沙土)에 목초가 무성하였던 여의도는 이조 때에도 소와 양을 기른 목초지였는데 아라이 목장이 자리잡은 것은 1917년경 이었다. 이 목장은 1906년 지금의 만리동에 우유목장을 개설하였다가 여의도로 옮겼는데, 1920년 러시아지방에서 수입해 온 마필 40두를 구입하면서부터 생산목장(生産牧場)도 겸하게 되었다고 한다(『일간스포츠』 1976년 8월 19일).

기수가 묵고 있는 여관을 찾아가 뒷돈을 거래하며 우승을 약속하는 담합이 있기도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비가 벌어져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경주마가 강탈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경주거리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경주마의 경우 지방에 따라서 조랑말 또는 짐수레를 끄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²⁸⁾

군산에서 처음 시작된 지방경마는 그 후, 이리(裡里), 전주(全州), 광주(光州), 대전(大田), 대구(大邱), 부산(釜山)을 거쳐 개성(開城), 사리원(沙里院), 평양(平壤), 신의주(新義州)로 이동하면서 대회를 열었는데, 1924년으로 접어들면서 '계절경마(季節競馬)'²⁹⁾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울, 평양, 부산, 대구, 원산의 5개의 시(市)에서 경마가 시작되어 점차 중소도시에까지 확산되고 경마를 주관하는 운영조직체가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제도화된 통제를 하기 앞서 1920년대까지 조선총독부의 경마정책은 발생과정에 맡겨 두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특히 총독부에서는 경마법인(競馬法人)의 설립인가는 강력하게 규제하였으나, 경마의 개최는 지방청의 허가로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문에 법인설립을 추진하는 경마운영단체만 20여개를 헤아리고 경마를 한번이라도 개최했던 곳은 25군데가 넘었다고 한다.³⁰⁾

그러나 경마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각 지방경마장을 순회하며 경주운영을 전담했던 조선경마구락부의 능력만으로는 전국을 관리하고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에 조선경마구락부는 각 지방의 승마회 회원과 유지(有志)들로 구성된 지방경마구락부의 발족을 종용하게 된다.

1924년 7월 4일에 평양유지들에 의해 발족된 평남(平南)레이스구락부는 지방 최초의 운영조직이었는데, 이 구락부는 평양을 비롯, 신의주, 진남포, 사리원까지를

28) 초창기 조선경마의 부정적인 행태는 이후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한국경마의 구조적인 성격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는 일본인들이 운영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당시까지도 식민지조선에는 제도적 통제가 없었으므로, 일본인들은 식민지라는 사정과 지배라는 기반을 이용하여 자국내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서 쉬운 방법으로 경마를 운영했다. 특히 그들은 자국 내에서는 금지된 행위를 함으로써 일종의 해방감과 욕구충족이라는 자기만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9) 계절경마란 4계절의 기상도를 따라 장소를 옮겨가며 경마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른봄에 부산에서 시작한 뒤 대구, 대전으로 올라와 4월말과 5월초에는 경성에서 실시하며, 다시 군산에서 시작해 이리, 전주, 광주를 거치며 한여름인 7월에는 신의주를 시발점으로 해서 평양(平壤), 사리원(沙里院), 진남포(鎭南浦), 해주(海州), 개성(開城)으로 내려와 9월말과 10월초에는 경성에서 가을경마를 실시했던 것이다.

30) 한국마사회, 1984: 75쪽 ; 『일간스포츠』 1976년 8월 28일.

범위로 하는 이른바 평안도 경마를 관장하는 기구였다. 이 평안도지방에 경마구락부가 설립되자 각 지방에서는 경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고, 종래에 ‘말놀이’ 또는 ‘말놀이’로 불리던 것이 ‘競馬’로 정식 통용되기 시작했다.³¹⁾

한편 한강 중지도에서 이미 근대적 형태를 갖춘 서울의 경마는 1925년 신설동에 고정경마장을 갖게 되었다. 신설동경마장은 조선경마구락부가 운영했던 한강의 중지도 경마장이 1925년의 대홍수로 유실되자 이곳 신설동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신설동경마장은 1926년 9월 24일 개장했는데, 당시 이곳에서는 일반경주와 함께, 2350m와 2500m의 장애물경주가 실시됐다. 마권은 백사장 경마까지만 하더라도 1원 이었던 것을 이곳에서부터는 2원으로 인상했으며, 입장료는 30전으로 하루평균 5천명 정도가 입장했다고 한다.³²⁾

신설동경마장이 개장되던 해인 1926년 5월4일 지방경마구락부로는 두 번째로 ‘대구경마구락부’가 발족됐다. 대구시내 달성공원에서 열린 창립기념경마의 장내 시설물 대부분은 급조된 것이었지만, 관객들은 종래 임시경마를 했을 때보다도 10배를 넘었다고 한다. 대구경마구락부 신설과 함께 경마에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경마 붐은 안동(安東), 포항(浦項), 김천(金泉)까지 그 영향을 끼쳤고 경주(慶州)에서도 간이경마장을 만들어 경마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³³⁾

대구경마구락부가 탄생된 지 불과 20여일 만에 6.10만세사건이 일어나 식민지 조선에서는 지배세력에 대한 저항의식이 점차 가열되면서 흥분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정황에서도 지방경마의 열기는 식지 않아 그 이듬해인 1927년 5월 4일 신의주에 ‘국경(國境)경마구락부’가 탄생된 데 이어, 같은 해 7월 13일에는 ‘부산(釜山)경마구락부’가 발족되었다. 또한 다음 해인 1928년 5월 22일에는 지방경마의 진원지인 군산에 ‘군산경마구락부’가 발족됐다.³⁴⁾

따라서 전국에는 6개 경마구락부가 형성되는데, 이들은 각 지방을 구역별로 분할, 관장하게 되었다. 중앙의 조선경마구락부는 경성, 수원, 인천 등 경기도 일원

31) 『일간스포츠』 1976년 8월 28일.

32) 신설동경마장은 8만여평의 부지에 1,600m의 경주로와 경주마 350필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18동의 마방(馬房)이 있었다. 건설 당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민가가 있는 민유지는 도로구획정리란 명목으로 강제로 철거시켜 부지를 확보했다고 한다(『일간스포츠』 1976년 8월 19일).

33) 한국마사회, 1884: 63-72쪽

34) 한국마사회, 1984: 54-55 ; 『일간스포츠』 1976년 8월 28일.

과 강원도 춘천까지 말기로 하고, 평남레이스구락부는 평안남·북도 지역을, 대구 경마구락부는 경북지방, 부산경마구락부는 경남 진해, 마산, 통영, 김해를, 군산 경마구락부는 전라남·북도를 관장하게 되며, 신의주의 '국경경마구락부'는 신의주를 기점으로 하여 만주지방에까지 확대되었다.

<표 3-1> 전국 경마 개최현황(1922-1927년)

개최일시	개최지	장 소	일수	주 최·부대행사
1922. 5. 20	서울	訓練院	2	朝鮮競馬俱樂部
9. 30	서울	漢江 白沙場	2	"
1923. 4. 1	서울	"	3	"
4. 29	全州	德 津	3	西鮮競馬大會
6. 9	元山	驛前 廣場	2	元山競馬俱樂部. 北鮮競馬大會
8. 31	平壤	練兵場	3	西鮮競馬俱樂部. 西鮮競馬大會
10. 13	서울	漢江 白沙場	3	朝鮮競馬俱樂部. 京城秋季競馬大會
1924. 4. 3	雄基	松坪江邊	3	乘馬俱樂部
4. 5	서울	漢江 白沙場	3	朝鮮競馬俱樂部. 京城春季大會
5. 13	東萊	溫泉場 廣場	3	東萊競馬俱樂部. 東萊競馬大會
5. 16	釜山	釜山鎮埋築地	3	南鮮競馬大會
9. 20	서울	漢江 白沙場	4	京城秋季大會
10. 19	釜山	釜山眞埋築地	3	"
1925. 4. 2	서울	漢江 白沙場	4	京城春季大會
4. 3	新義州	驛前 廣場	3	乘馬俱樂部
4. 11	平壤	船橋里	4	平南레이스俱樂部. 平壤春季大會
5. 10	元山	練兵場	3	元山乘馬俱樂部. 北鮮競馬大會
5. 14	大邱	練兵場	4	大邱競馬俱樂部
6. 12	大田	大田橋 아래	4	大田競馬俱樂部
6. 28	會寧	醉月樓 아래	3	北鮮競馬大會
9. 16	元山	驛前 廣場	5	元山尙武會後援會主催. 北鮮競馬大會
9. 20	서울	漢江 白沙場	4	京城秋季大會
10. 15	釜山	釜山鎮埋築地	4	釜山競馬俱樂部
10. 23	元山	驛前 廣場	4	全國釀造品評會開催紀念競馬大會
1926. 6. 25	羅南	利谷洞 廣場	4	羅南乘馬俱樂部
9. 11	新義州	驛前 廣場	4	國境競馬俱樂部
9. 23	서울	漢江 白沙場	4	京城秋季大會
10. 9	仁川	花洞 埋築地	5	朝鮮每日新聞社主催第3回競馬大會
12.	釜山	釜山鎮 埋築地	4	釜山日報社主催
1927. 4. 3	서울	漢江 白沙場	4	京城春季大會
4. 16	仁川	花洞 埋築地	4	仁川競馬會主催
5. 6	부산	釜山鎮 埋築地	4	釜山乘馬教育會主催
5. 19	群山	不二埋築地	5	群山競馬俱樂部
9. 21	서울	漢江 白沙場	4	京城秋季大會
10. 8	群山	京場湍競馬場	5	群山競馬俱樂部

자료 : 기록된 자료들은 東亞日報, 每日新報, 朝鮮의 畜産, 朝鮮獸醫學會誌 등에 기록된 자료들을 종합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경마를 빠짐없이 모두 정리된 것은 아니다 (韓國馬事會, 1984, 『韓國競馬六十年史』 72-73쪽에서 재인용).

이렇듯 지방경마의 실시로 경마인구는 날로 확대되어 갔지만, 그러나 무질서한 경마행위의 남발로 부정경마가 판을 치게 되는 혼란한 상황도 찾아볼 수 있다. 즉 당시 전국의 경마시행장소는 30여개나 되었지만, 이들 가운데 경마구락부의 준칙(準則)을 준용하지 않고 마권을 발매하는 등 경마에 대한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된다.³⁵⁾

당시 조선에서의 경마가 점차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면서 초보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는 달리 일본은 그런 대로 오랜 경마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즉 일본경마는 19세기 후반기에 주로 영국인들에 의해 전파되었으며, 영제국(英帝國)의 동진정책(東進政策)이 시작된 이후 영국인들의 발길이 일찍부터 잦았던 동남아 각국³⁶⁾도 우리보다도 훨씬 먼저 경마가 시작되었다.

일본에 최초의 서구식(西歐式) 경마가 선을 보인 것은 1861년 봄으로 당시 요코하마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주축이 되어 그들의 사교오락(社交娛樂)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경마에 이용되었던 말은 중국산과 일본산이었으며 기수는 외국인으로 구성되었다. 그 후 1865년에는 미국인에 의해서 레이스클럽이 조직되어 경마가 실시되었으나, 이때까지도 일본인에게는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마권을 발매하여도 간섭조차 할 수 없는 치외법권지대였다.³⁷⁾

그 후 1878년에 비로소 일본인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처음으로 서구식 근대경마에 일본인이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경마는 이후 30여년동안 마사정책(馬事政策)과는 관계없이 순수 오락으로 지방마다 소규모의 경마를 즐기게 된다.

그러나 청·일(淸日)전쟁과 노·일(露日)전쟁을 겪는 동안 드러난 일본말들의 열세(劣勢)를 극복하기 위해 갖가지의 마필개량(馬匹改良)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당시의 일본말들은 러시아의 코사크 말에 비하면 스피드나 지구력 등에서 비

35) 뒤에 논의가 되지만 국내에서의 근대경마가 시작되었던 초창기의 이러한 무질서한 상황은 점차 고질적인 행태가 되었으며, 이러한 모습은 부분적으로 한국경마의 성격에도 영향을 준 요인이 되었다.

36)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는 1780년에 영국군장교들에 의하여 경마가 시작되어 1830년대에는 벌써 20개의 경마장을 소유한 아시아 제1의 경마국이 되어 있었다. 인도와 인접해 있는 파키스탄도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에 경마가 시작되었으며, 미얀마는 1828년에, 홍콩은 1845년에 영국인들에 의해서 포니(Pony)로 경마를 시작하였다. 또 스리랑카는 1850년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1866년, 이어서 1867년에는 필리핀에서 마닐라 자키클럽이 결성되어 한국보다는 모두가 50년 이상 일찍 경마를 운영해 왔다(한국마사회, 1984: 58).

37) 미국인들에 의해 운영되었던 네기와(根岸)경마에 대해 당시 일본인들의 호기심과 부러움은 대단히 큰 것으로 전해진다(한국마사회, 1989, 『日本中央競馬會의 모든 것』, 5쪽).

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형편이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마필개량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1905년 동경에 마권(馬券)을 발매(發賣)하는 경마장을 설치한데 이어 대판을 비롯한 8개의 지방경마장을 신설하여 ‘마사진흥(馬事振興)’이라는 명목의 기금확보를 위해 전력했는데, 결과적으로 마권제도(馬券制度)는 경마인구의 저변확대에도 큰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된다(일간스포츠, 1976. 8. 26).

일본도 처음에는 민법34조에 근거한 사단법인을 설립하였을 뿐 경마에 관련된 법과 규정이 없었다. 그러다가 1906년 12월에 비로소 경마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설립되고, 감독에 관한 강령(綱領)이 공포되어 경마운영의 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 강령(綱領)에는, “연간 신마(新馬)를 경주에 참가시켜야 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마산장려(馬産獎勵)에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마를 군국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³⁸⁾ 이어서 1908년 11월 전문 23조로 된 경마규칙(競馬規則)이 공포되면서 일본에 경마가 들어온 지 40여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경마에 관한 법규를 갖게 되었다.³⁹⁾ 이 경마규칙은 후에 일본경마법(日本競馬法)의 기초가 되었으며, 한반도에서의 경마운영에 대한 지침으로 작용되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마정(馬政)’⁴⁰⁾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일본의 마사(馬事)에 관한 활발한 연구는 메이지시대⁴¹⁾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메이지 37년(1904) 4월 7일⁴²⁾에는 말 개량에 관해서 지급(至急) 근본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는 취지를 발표하는데, 메이지 39년(1906)에는 마정국(馬政局)과 마정위원회(馬政委員會)의 관제(官制)가 공포되어 더욱 더 본격적

38) 한국마사회, 1984: 60.

39) 일본 경마규칙은 1908년 11월 16일 강령 제1호로 발표되었는데, 민법에 따른 경마회의 설립요건 강화와 경마일수의 제한, 연간 국내산마의 의무 출전두수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일찍이 1906년에 공포된 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마사회, 1984: 20쪽).

40) ‘마정(馬政)’이란 말(馬)에 관한 행정으로, 군사·산업상의 양방면에서 말의 생산·육성·사용과 기타 여러 분야의 요구에 대해 실제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시설이나 규정을 설정하고 통제하여 장려(獎勵)하는 것을 말한다(日本競馬會, 1942, 「馬政」 『騎手教本』 1쪽: 이 교재의 목적은 경주에서 말에 기승하는 기수들을 위한 이론적인 교재로써, 경마와 경마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드러난다).

41) 메이지 즉 明治時代는 시기적으로 서기 1868년부터 1912년까지의 기간임.

42) 오늘날 일본 마사계(馬事界)에서 매년 4월 7일 실시하는 ‘愛馬의 날’은 여기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일간스포츠』 1976년 9월 16일).

인 말 개량 증식에 착수하게 되었고, 마정 제1차 계획이 수립된다.

그들의 마정 제1차 계획은 메이지 39년(1906)부터 소화10년까지의 30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일본의 말은 체형과 능력 면에서 한 단계 나은 상태로 개량되었고, 과거의 왜소한 체격인 재래종(在來種)은 대부분 그 자취를 감추는 등 예상 밖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 軍馬를 오늘날 존재하게 한 것은 역대 天皇의 고심·경영에 의한 것으로 馬事進興에 관한 조칙을 받은 적도 종종 있었다. 制度도 神功皇后 시대에 이미 飼部(うまかいべ)를 설치하여, 天武天皇13년 文武官에 軍馬의 사육을 장려하고, 文武天皇 4년, 諸國에 목장을 정하여 大寶令에서 이를 관리하고, 특히 明治天皇 때에는 馬政이 상당히 완비되어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대동아 전쟁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明治天皇의 덕분이다. 특히 일청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우리 군마의 부족함에 마음을 써, 메이지 37년(1904) 4월 7일, 우리 나라 마정개혁에 관한 條를 내리고, 개량 30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것이 완료를 본 다음해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진실로 하늘이 도와준 것이며, 천황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⁴³⁾

일제는 이와 같이 일찍부터 마정(馬政)에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에서도 경마보다는 마정(馬政)을 통해 제국주의의 군사적 목적에 부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특히 일제는 합방 이후 조선의 기존 말 품종들이 너무 왜소(矮小)하여 군용(軍用)은 물론, 승용(乘用)이나 잡역마(雜役馬)로도 거의 쓸모가 없다고 판단, 근본적으로 품종을 개량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서양마(西洋馬)를 수입해서 사육할 경우 기후풍토에 적응키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었고, 또한 왜소한 말을 기초 종으로 삼아도 개량의 성과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몽고마와 일본산의 개량마를 교배시켜 생산되는 잡종을 기초 종으로 하여 한국 풍토에 적응시켜 보기도 한다.⁴⁴⁾

제도적인 면에서 당시 국내에는 경마에 대한 규칙과 규정은 없었지만, 그들은 자국(自國)의 제도와 요령을 적용하면서도 법률 자체는 새로 만들지 않았다. 따라

43) 井瀨清助(陸軍大佐), 1943, 『馬より見たる 内鮮一體』 『日本馬事會雜誌』 36-37쪽

44) 이 품종의 이름을 ‘신조선마(新朝鮮馬)’라고 하는데, 이 신조선마는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쳐 경마에도 독립종목으로 출전하지만 생산량이 적어 그들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는 못했다(한국마사회, 1984: 78).

서 명백한 형사사건이 아니면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조직체와 참여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도 그것이 형법위반이 아니면 개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서는 마정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1920년대까지의 경마는 마정(馬政)과는 직접적인 관련성 없이 오락적인 속성이 강했으며 이에 대한 제도화된 통제도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마 실시 초창기에 군(軍)·관(官)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군과 관의 관리들로 구성되었던 승마구락부 회원들이 경마운영을 주도하였다는 점과 경마가 귀족들의 사고오락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 하에, 피지배민족에 대한 지배세력의 자기과시욕과 상류의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경마가 시범적인 틀을 벗어나서 서서히 대중화되던 시기의 상황을 통치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큰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삼일운동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일제는 삼일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미명하에 구조적인 지배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는데, 조선의 경마가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초를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은 주목이 되는 부분이다. 이는 조선인들이 좀 더 경마에 관심을 갖고 동화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면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부분적이라도 식민지하에서의 정치적인 성향과 민족의식을 둔화시켜 보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日帝)의 대륙침략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으로 뻗어 가면서 군마의 필요성이 증대되자, 국내에서의 마정도 강화되어 마정과 경마를 연계하는 경마정책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 국내에서의 경마상황도 큰 변혁을 겪게 된다.

2. 법·제도화 시기(1930년대)

서울의 경마가 신설동경마장에 정착하면서 경마구락부는 일제가 의도하는 대로 마사사상(馬事思想)의 보급에 앞장서고, 말과 관련된 각종 행사의 주최자가 되는 등 마사정책(馬事政策)과의 밀도를 높여갔다. 이와 함께 1928년 10월 전국의 6개

사단법인 경마구락부가 '대례기념특별경마(大禮記念特別競馬)'를 신설동경마장에서 공동 주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조선경마구락부협회'가 구성되어 전국경마법인의 결속과 단합도 이루어지게 된다. 서울의 조선경마구락부가 주축이 되어 구성된 이 협회는 당시만 하더라도 경마와 관련된 법규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마법인들 간의 유기적인 연락과 통제, 그리고 무질서한 비법인 경마에 대한 견제와 제동의 역할을 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⁴⁵⁾

총독부의 입장에서도 무질서하게 난립해 가는 '경마운영단체'⁴⁶⁾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경마의 무질서보다는 그들 제국주의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마운영단체들에 대한 정비작업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작업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3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조선경마령(朝鮮競馬令)'⁴⁷⁾이 시행되면서부터였는데, 총독부당국은 연초(年初)에 조선경마령 실시에 관한 정무통감 통첩(通牒)을 내려 '제전경마(祭典競馬)'를 이외의 마권을 발행하거나, 금전이나 경품권을 거래하는 경마는 민법 제 34조에 의한 사단법인 이외의 어떠한 단체도 개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동시에 그에 따르는 행정지시로 종래에 지방에서 부정기적으로 경마를 운영해 온 모든 경마단체를 해산시켰다. 이와 함께 경마구락부 정관준칙(定款準則)을 새로 정하여 기존의 법인 경마구락부도 새 정관에 따라 재구성하도록 했으며, 경마령에 의한 경마장시설을 갖춰 재인가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한반도의 경마는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가 인가된 지 11년만에 경마관련 법규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표 3-2> 조선경마령(朝鮮競馬令) 주요내용⁴⁸⁾

제 1조 마필의 改良增殖 및 馬事思想의 보급을 圖謀함을 목적으로 하는 朝鮮民事令에 따른 민법 제34조의 법인으로서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本令에 의하여 경마를 시행할 수 있다.

제 7조 입장료, 마권의 券面金額 및 발매방법, 還給金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조선총

45) 한국마사회, 1984: 86

46) 비법인경마구락부를 지칭함

47) 조선경마령은 1932년 10월 조선총독부 제령(制令) 제3호로 공포되고, 이어서 12월에는 부령(部令) 제129호로 조선경마령 시행법칙이 공포되면서 1933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간스포츠』 1976년 9월 5일).

48) 朝鮮總督府, 1932, [朝鮮競馬令](1932년 10월 7일 公布, 制令 제3호).

- 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 8조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馬券賣得金の 100분의 5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법인의 예산은 조선총독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년도 종료후3월이 내에 조선총독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 법인의 理事 및 監事の 취임은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 조선총독은 법인의 정관 기타 규칙의 개정을 명하거나 또는 총회의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4조 조선총독은 경마의 정지, 마권의 발매정지 또는 제한, 役員의 해임을 처분할 수 있다.
- 제15조 경마령에 따른 규칙의 위반에 대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다스린다.

이 시행령에는 그밖에도 경마운영과 관련된 실무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경마령은 애초부터 식민지 조선의 실정에 맞게 설계된 것이 아닌 1923년에 공포된 일본경마법을 조선의 상황에 맞춰 일부 수정하여 개정 공포한 것이다. 따라서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공포된 경마령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해 12월 29일에 공포된 조선경마령 시행규칙은 조선경마령에서 밝힌 강제적 성격보다는 다소 유동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빠른 시기 내에 그들의 목적, 즉 군사적 필요성에 따른 말 개량·증식사업을 도모하려는 목적과 함께 경마를 통해 세금 수입의 확보한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표 3-3> 조선경마령 시행규칙 주요내용⁴⁹⁾

- 제 3조 馬場은 길이 1,600m 이상, 폭 30m 이상이어야 한다.
- 제 7조 3세 이하의 馬 및 馬匹 改良 増殖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去勢馬)은 경주에 사용할 수 없다.
- 제 8조 朝鮮産馬 편성경주는 일반경주보다 경주상금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
- 제24조 경마회는 마권의 受拂 및 發賣金の 출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 부 칙 제3조에 규정한 馬場의 길이와 넓이에는 당분간 총독의 인가를 받아 제3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49) 朝鮮總督府, 1932, [朝鮮競馬令 施行規則](1932년 12월 29일 公布, 府令 제129호).

이에 따라 조선·평남·대구·부산·신의주·군산 등 6개 사단법인 경마구락부도 종래의 회장, 이사, 서기장 등 기구를 새 정관에 맞게 이사·감사제로 고치고 진용도 대폭 교체하거나 보강하여 1933년 4월 1일부로 재인가를 받게 된다. 재인가에 앞서 총독부당국은 길이 1,600미터(1마일), 폭 30미터 이상의 경주로(競走路)를 갖추게 하는데, 경성·대구·부산은 1933년 3월말까지, 기타 경마장은 5월말까지 시설을 완비할 것을 지시한다. 또한 구락부회원은 엄선(嚴選)해서 선발할 것과 구성인원을 30-40명 선을 한도로 할 것, 그리고 종래의 임원은 교체를 원칙으로 했다.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기준미달인 경마장은 모두 시설을 확장·보완하여 재인가를 받았는데, 이로써 북쪽지역의 3개 구락부가 인가되기까지의 4년간은 6개 법인가구락부에 의해서만 개최되는 6구락부 전성시대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경마령에 의한 경마구락부의 재인가 작업이 끝나고 4월초에 신설동경마장에서 운영된 봄 경마가 폐막되자, 경마계(競馬界) 내부에서는 전국의 각 구락부의 의견과 방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구(機構)의 설립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는 봄 시즌을 겪어 본 결과 구락부 조직 자체는 이사회가 구성되어 이전에 비해 훨씬 강력한 조직체제가 되기는 했지만, 경마운영상의 기술적인 문제나 승마투표권의 발행에 따른 회계상의 문제점 등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견해차가 생겨났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⁵⁰⁾

한편 총독부당국도 앞으로 실시될 마정계획(馬政計劃)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성격의 강력한 경마통제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사단법인 ‘조선경마협회(朝鮮競馬協會)’이다. 조선경마협회가 종전의 구락부협회와 그 성격을 달리하는 가장 큰 특징은 구락부협회가 각 구락부 회장들이 주동이 된 임의의 친목단체였지만, 조선경마협회는 전국의 경마구락부를 통제할 수 있는 관제법인체(官制法人體)라는 점이다.

협회의 구성은 회장 1명, 이사는 7명 이내, 감사는 3명 이내로 했는데, 임원들의 취임은 조선총독의 재가(裁可)를 얻어야 했다. 또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른 회원(각 지방경마구락부)은 총독의 재가를 얻어 탈락시키는 등 강력

50) 물론 그 이전인 1928년 가을 신설동경마장의 개장을 계기로 6개 법인가구락부가 대체 경마(大禮競馬)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곧이어 조선경마구락부협회를 구성했지만, 그러나 이 같은 임의적이고 친목의 성격을 띤 단체로서는 이미 통제가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조직체에 대한 통제정책이기도 하지만, 경마를 통해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마필자원의 수급체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 했던 총독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마시행령을 기점으로 조선경마협회 산하의 6개 경마구락부는 엄격한 내규의 실천뿐만 아니라 해마다 조선총독부에 예산의 인가 및 결산보고를 하여야 했으며, 관람료 및 마권수익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토록 했다(일간스포츠, 1976.9.8).

한편 만주사변으로 정세가 급변해지자 조선총독부는 식민지에서의 제1기 마산계획(馬産計劃)을 서둘러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의 생산계획은 “우선 말을 생산해 낼 생산지(生産地)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조성하고 민간에서의 말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장기적인 생산계획의 기초로 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⁵¹⁾

그러나 1932년부터 12년 계획으로 실시하려 했던 이 ‘마산계획(馬産計劃)’⁵²⁾은 조선경마령(朝鮮競馬令)의 실행을 앞당기고 공인경마(公認競馬)를 주도하는 계기만을 가져왔을 뿐, 재정적인 압박 등으로 인해 그들이 의도했던 마산계획 자체는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다.⁵³⁾ 이러한 상황이 되자 조선총독부는 1935년 다른 형태로써 조선마정(朝鮮馬政) 제1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해에 총독부가 새롭게 마정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본국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당시 일본은 1906년에 실시된 제1차 마정30년계획이 1935년에 끝나고 1936년부터 제2차 30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이와 연계된 정책을 조선에도 적용시켜 그들의 마정계획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일본의 2차 마정계획은 30년 간에 승용마 20만두 등 총 150만두의 마필자원을 조성하는 것이었다.⁵⁴⁾

그런데 이 계획에서는 일제의 군국주의적 특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51) 湯村辰次郎(農林局長)의 1937년 축산관계자 회의에서의 指示事項(朝鮮農會, 昭和20年, “馬政計劃 實施에 關한 件”, 『朝鮮畜産關係法規』 776-777쪽).

52) 제1기 마산계획은 1932년부터 우선 12년간에 걸쳐, 체고 145cm 내외의 소형 개량마 3만두를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3만두를 산출한 근거는 당시 조선군과 조선총독부 사이에 1933년부터 1938년까지 6년에 걸쳐 군용마 3만두를 매상한다는데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한국마사회, 1984: 94-95).

53) 이 계획이 일제가 의도했던 말 생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는 식민지의 현실적인 여건을 무시한 채 강행되었기 때문이다. 즉 말의 생산의 토대가 되는 종마가 현저하게 부족했으며, 그나마 도입된 종마도 한반도의 풍토에 적응력이 떨어졌다. 국내에서의 경마 운영조직체의 성격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는 이후 조직체의 특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4) 麓蛙野人, 1938, “進會の講評は當らず”, 『馬の世界』 제18권 5호, 馬之世界社, 173쪽.

있다. 즉 이 계획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군마(軍馬)로서의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말의 자질향상에 주력하려는 의도가 표면화되었다. 일본 국내에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원인은 그들의 군마들의 자질이 형편이 없다는 사실이 실전(實戰)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1937년에 일어났던 중일전쟁(中日戰爭)에는 많은 수의 말들이 전선(戰線)에 보내졌는데, 여기서 일본의 군마들은 과거 전쟁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힘든 작전에 이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험을 통해 일본은 그들의 말이 아직도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으며, 아울러 식민지인 조선·대만·사할린 및 만주 등을 하나로 하는 제국주의적 마정(馬政)의 국책도 요구되었다. 결국 이러한 필요성이 계기가 되어 1938년에는 일본과 조선, 그리고 만주 등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마정 국책의 확립과 함께 일본 국내의 마정계획(馬政計劃)이 결정되었고, 193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⁵⁵⁾ 당시 군마의 증산과 개량에 대한 그들의 의욕과 집요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당시 ‘군마보충부 본부장의 글’⁵⁶⁾에서도 알 수 있다.

과거 日本의 馬政計劃은 러일전쟁 후, 메이지천황의 생각을 받들어 세운 30년 계획을 民官이 함께 노력하여 대단한 개량과 진보를 이루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일본제국의 지위 또한 비약을 이루어 세계 전쟁의 지도적 입장에 서게 되었다. 馬政은 이제 국내에서의 단순한 말에 관한 행정이나, 대동아 건설에 임하는 高度國防國家로서의 말에 관한 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수와 질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다.

이제 일본 말은 국내에서 웅크리고 있을 시기가 아니다. 넓게는 아시아 대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었다. 말이 대동아 건설을 위한 성스런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잘 기르고 강하게 키워 훌륭한 체격과 능력을 가지게 하여야 하며, 일억총진군의 오늘날, 모든 말들에게 軍馬로서 봉사할 수 있는 영예를 지워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일본 국내의 이러한 의욕적인 상황에 고무되어 있었던 조선총독부와 조선의 경마관계자, 그리고 경마운영을 주도하던 조직체들은 일본 국내에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조선에서의 말 생산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들이 이러한 입장을

55) 日本競馬會, 1942, 「馬政」 『騎手教本』 1-6쪽.

56) 齊藤義次(軍馬補充部 本部張 陸軍少將), 1942, “大東亞戰爭と馬”, 『日本馬事會雜誌』 제1권 제7호 11월호, 日本馬事會, 3-4쪽.

취한 것은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사할린을 각각 분리하여 독자적인 예산으로 마정계획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조선에서는 마산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할 수 없이 총독부 축산당국은 1936년 3월 군·관·민 3자로 협의회를 구성해 조선마정 제1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계획의 목표는 1936년부터 18년 계획으로 개량마 4만두를 증식 등 10만두의 마필자원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⁵⁷⁾

그러나 이 계획 역시 예산부족 등의 원인으로 1936년에는 착수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계획은 총독이 미나미로 바뀌고 일본육군성과 조선군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독촉을 받은 끝에 1937년에 실시하게 된다. 1937년은 일본군의 노구교(蘆溝矯)사건 유발로 중일전쟁(中日戰爭)이 일어난 해였다. 따라서 조선마정 제1기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서 중국대륙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개시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중일전쟁이 조선에서의 마정(馬政) 실시에 채찍질을 가한 셈이고, 이에 따라 이후 조선에서의 경마도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⁵⁸⁾

‘조선마정 제1차 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계획기간을 1937년부터 18년(뒤에 15년으로 단축)으로 하고 ② 최단기간에 개량마 4만두를 증식시키며 ③ 소형마와 일반마에 중점을 두고 소수의 승용마를 생산하며 ④ 강원북도를 제1마정구로 강원남도를 제2마정구로 책정하여 중점 지도하고, 필요에 따라 북부강원도와 제주도에도 장려하고 ⑤ 400두의 국유종모마를 보유·관리한다는 것이었다. 계획의 실현 방안으로는, ① 경마의 지도조장(指導助長) ② 마필거래의 활발한 알선 ③ 마사단체의 활성화 ④ 전국적인 말 이용장려 ⑤ 마적(馬籍)의 설정 ⑥ 공진회(共進會)와 경기회(競技會)의 개최 ⑦ 승마, 마사사상(馬事思想)의 보급 등 전례 없이 광범위한 추진계획이 망라된 17개안의 요강(要綱)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경마의 지도육성방안으로는, ① 경주마는 점차 조선산 마로 대체한다. ② 일본산으로 구입하는 말들은 적당한 시기에 암말로만 제한한다. ③ 마산지역(馬產地域)에 간이경마장을 설치한다. ④ 적절한 시기에 경마단체를 통일한다는 것이었다(한국마사회, 1984: 108)

여기서 말하는 경마를 활성화하고 말의 생산을 지도, 육성한다는 것은 경마령

57) 矢島杉造, “朝鮮馬政 第1期計劃 實施에 關한 件”(1937년 5월 14일 農林局長 矢島杉造 주재 道農業技術官會義 妥合事項), 『朝鮮畜産關係法規』, 1945, 朝鮮農會.

58) 개량마 4만두 증식은 일본육군성의 수요판단에 의한 것으로 당시 한국 이외에 대만은 30년간에 11만두, 사할린은 15년간에 3만두를 조성하여 이를 군용화(軍用化) 하겠다는 것이 일본군의 기본적인 목표였던 것이다(한국마사회, 1984: 107-108쪽).

제1조에 규정한 경마운영의 목적처럼 마필의 개량과 마사사상의 보급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보다도 더욱 절실한 마정계획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즉 자원(財源)의 대부분을 경마를 통한 국고수입에서 충당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러나 표면적인 목적에는 군마자원의 확보 이외에 농경, 운수 등 산업상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을 내걸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식민지 경마정책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명분과 실리라는 이중적인 목적이 정책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 3-4> 소화 17-18년 경마매출 및 입장인원

구락부 명칭	입 장 인 원(명)		매 출 액(円)	
	昭和17年(1942)	昭和18年(1943)	昭和17年(1942)	昭和18年(1943)
경성구락부	105,085	126,373	8,246,580	12,170,600
부산구락부	18,907	28,279	1,595,760	2,929,600
대구구락부	12,527	21,073	1,025,640	1,708,480
평양구락부	18,020	25,089	1,710,540	2,757,120
함흥구락부	8,246	5,302	425,230	303,900
청진구락부	5,679	5,740	338,010	337,740
계	168,464	212,290	13,341,760	20,207,530

자료: 이 내용은 소화 18년 11월에 발간된 <朝鮮獸醫學會報>에 실린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朝鮮總督府 農商局 農務果의 자료이다. 일제에 의해 운영조직이 통합된 1942년 이후의 내용이지만, 당시 각 지방의 운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朝鮮獸醫學會報>는 朝鮮獸醫學會에서 발행되는 학회지로 조선수의학회는 당시 조선총독부 농림국 축산과의 산하기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아울러 마정구(馬政區)를 국경지대로 책정한 것은, 강원도 지방이 예로부터 몽고·만주계의 중형마(中格馬)가 많은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료자원이 풍부하고 기후풍토가 말들을 생산하고 육성하는데 알맞은 적지(適地)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다분히 군사적 필요성에 따른 전략적 목적이 고려된 것이었다. 즉 대륙 침략에 필요한 군마(軍馬)를 일본 본토에서 수송할 경우 거대한 선박이 필요하나 그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조선의 국경지대에 군마 생산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선경마구락부는 중일전쟁 직후인 1937년 8월 개량마 2두를 특별히 구입하여 조선군 제 20사단에 군마(軍馬)로 헌납, 재빨리 민간의 군마헌납운동을 선도하고 나섰다. 이 일을 계기로 경마협회와 전국경마구락부는 경마를 시행하는 한편 각종 마사행사의 주관 등 전시체제 상황에서 뒤치다꺼리에 바쁜 관변단체(官邊團體)가 되었으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인시대(公認時代)로 접어든 경마는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운영조직도 더욱 확대되어 조선마정 제1기 계획의 실시와 더불어 1937년 3월 함흥, 청진, 웅기의 3개 사단법인 경마구락부가 추가로 인가되었다. 이 이북의 3구락부의 동시인가는 마정지구(馬政地區)에 간이경마장을 신설한다는 마정설계에 따른 것이었다. 북쪽의 3개 구락부의 경마는 거리, 경주마의 수, 일정 등을 감안해 기존 서남지방의 6개 구락부와는 분리하여 북쪽지방 끼리만 춘추경마를 개최했는데, 마산지역(馬產地域)이라는 특별성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달리 암말의 증식에 중점을 두었다. 이 때문에 수입해 오는 신마(新馬)도 암말(牝馬)을 위주로 하였으며 경마가 끝나면 대부분 증식용 빈마로서 사양농가에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를 통칭해서 당시 사람들은 ‘북선경마(北鮮競馬)’⁵⁹⁾라고 불렀던 것이다.

북선경마는 부산, 경성, 신의주 등에서 실시하던 당시의 계절경마와는 별도로 함흥, 청진, 웅기의 3개 경마구락부가 한 조가 되어 흑한기 4개월⁶⁰⁾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3개 지역을 순회하며 경마대회를 실시했다. 즉 함흥에서는 5월과 10월에, 청진은 6월과 9월, 웅기는 7월과 8월에 각각 열렸던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은 마필 수급에도 항상 우선권이 주어졌다. 예컨대 일본에서 백 마리의 경주마가 도입될 경우 우선 30마리가 이곳으로 배정되고 나머지를 전국의 경마구락부에 분배했던 것이다.⁶¹⁾ 이로써 한반도에는 모두 9개 법인경마구락부에 의해 9개 도시에서 경마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는 국내에 경마장이 가장 많았던 때이며, 외형적인 면에서 전성기를 이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59) 북쪽 지방의 경마에서 또 한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함흥 경마구락부의 이사장(김명학)과 상무이사(장운하)가 모두 유례없이 한국인이었다는 점이다. 일반 정회원의 가입까지도 극히 문호가 좁혀져 있던 경마구락부에 한국인 이사장과 상무이사를 처음부터 선임한 것은 농가의 마필 증식을 주 대상으로 삼은 마정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꾀하는 한 방편이기도 하였지만, 미나미 총독의 부임이래 내선일체니 국체명징을 부르짖으며 한민족의 협력을 강요하던 당시의 사회상을 나타내는 일면이라는 측면도 있다(한국마사회, 1984:113쪽).

60) 12월부터 3월에 이르는 4개월의 기간

61) 『일간스포츠』 1976년 9월 12일.

그 후 조선경마협회는 조선총독부의 엄격한 감독 하에 운영되면서 조선마사회가 설립될 때까지 이 땅의 경마를 주도했는데, 전국의 지방경마구락부를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마필의 개량증식과 마사진흥이라는 설립목적의 달성보다는 군비의 충당과 군마보급에 더욱 열을 올렸던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⁶²⁾

위와 같이 1933년 봄부터 조선의 모든 경마는 조선경마령과 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엄격히 규제⁶³⁾되었다. 그에 따라 경마 운영상 여러 부문에서 그 이전의 초기적 형태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며, 당국의 통제하에 식민지 경마정책은 더욱 더 제도화된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1933년 이후 적용된 경마법규에 따라 달라지게 된 부문별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경마운영 내용⁶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경마의 실시 절차

경마를 실시하려는 구락부(俱樂部)는 출마등록(出馬登錄) 마감 2개월 전까지 실시일시, 경주계획표, 집행위원(執務委員)을 결정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실시일시의 결정은 당시 구락부간에 가장 큰 쟁점이 되었는데, 시기의 선택 여하에 따라 경마의 실적 즉 수익금의 총액을 좌우하는 중요 사안이었으므로 서로 좋은 날을 확보하려 애를 썼다. 또한 경주의 번호, 종류, 거리, 상금, 출주마의 자격 등을 표시하는 경마계획표는 경마시행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감독청에서 미리 시달된 요령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다. 이 계획표는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경주의 흥미를 좌우하고 마권 발매금액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② 출마등록(出馬登錄)

일본 본토 경마의 출마등록은 각 경마를 개최할 때에 등록을 받는 레이스 등록제와 전기간에 한번 등록하는 포괄(包括)등록제가 있었으나, 조선에서는 포괄등록제가 적용되었다. 이는 당시 부족한 경주마 자원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각 구락부는 지정한 날까지 마명(馬名), 마종(馬種), 성(姓),

62) 『일간스포츠』 1976년 9월 5일.

63) 이 밖에 적용된 규정을 보면, [경마시행규정(전문 118조, 부칙)], [승마투표권의 발매 및 환급금지규정(전문 19조, 부칙)], [마명등록규정(전문 11조, 부칙)] 등이다(부록참조).

64) 한국마사회, 1984: 119-127 ; 『일간스포츠』 1976년 9월 8일.

마령(馬齡), 체고(體高), 흉위(胸圍), 관위(管圍), 특징, 산지(產地), 혈통(血統), 마주(馬主)의 주소성명, 기득(既得)상금액, 부담중량 등을 기재하여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기존 6개 구락부의 경주마두수는 1935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다소 증가되기는 했으나 350두를 넘어서지 못했으며, 그나마 등록이 된 경주마의 약 90%가 항상 실제로 경주에 출전하는 말들이었다.

③ 경주의 순서

경주에 출전할 경주마는 경주 하루 전에 '출마투표(出馬投票)'에 의해서 경주의 순서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출마투표 결과 어느 한 경주에 출주마가 3두 이하일 때는 재투표를 실시했다. 또한 일단 출마등록이 마감되면 미리 구락부에서 등록서류 기재내용과 대조하면서 경주마에 대한 검사(馬體檢査)를 실시하는데, 그 시에는 어느 구락부에서든지 한번 검사를 하게 되면 다른 구락부경주에 출주할 때는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경주 전에 말을 검사하는 전검량(前檢量)⁶⁵⁾과정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규정중량의 5Kg까지 초과중량이 허용되었다. 아울러 출전할 말의 최종적인 확정은 '출주발표(出走發表)'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출주발표의 내용에는 마번(馬番), 기수명, 말이 부담해야 할 중량(重量) 등이 포함되었으며, 게시와 동시에 마권 발행이 시작되었다.

④ 경주마의 부담중량(負擔重量)

경주마의 부담중량과 경주거리는 말의 나이와 성별(性別), 그리고 벌어들인 상금액수에 따라 결정하게 했는데, 부담중량은 4세마에 한해서는 봄과 가을에 1Kg씩의 차이를 두었으며 어느 경주에서나 우승횟수에는 구애되지 않았다. 또한 기수의 몸무게를 포함하여 최저 46Kg, 최고 77Kg까지 허용됐으며 평지(平地), 장애물(障礙物), 속보(速步)경주 모두 암말은 2Kg씩 그 부담을 덜어 주었다. 이와 더불어 신마로서 출전하는 말들도 감량특혜가 있었는데, 암말과 신마(新馬)에게 주었던 이러한 특혜는 말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당

65) 경주에 출전하는 말이 부담해야 하는 중량, 즉 기수체중, 기승장비 등의 부담중량을 경주 전에 계량 확인하는 과정으로, 부담중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부족한 중량만큼의 추가중량(일반적으로 납판 사용)을 휴대하고 출전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부담중량을 초과하여 기승 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량담당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韓國馬事會企劃室編, 1989, 『競馬用語集』, 韓國馬事會, 145쪽).

연히 일제가 추구했던 마산정책(馬産政策)과 연계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⑤ 경주의 종류

경주는 규정상 구보(驅步)·속보(速步)·장애물(障礙物)경주의 3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러나 1932년까지 시행되던 속보경주는 경마령 시행과 동시에 일시 보류가 되었다가 1937년 봄부터 '계가속보(繫駕速步)경주'⁶⁶⁾로 부활되었다. 그러다 1939년에 다시 속보경주가 중지되고 구보경주와 장애물경주만을 운영했는데, 말의 품종에 따라서 경주의 종류도 다르게 운영되었다.

그런데 마종별 경주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조선산마(朝鮮産馬)경주였으며, 그 중에도 '신조선마(新朝鮮馬)' 경주는 항상 시빗거리가 되었다. 원래 신조선마는 일제 초기에 마필개량사업의 하나로 조선의 재래종 왜소마(矮小馬)의 개량방안으로 몽고산 암말에 일본산 아랍계 수말을 교배시켜 생산된 것을 조선마(朝鮮馬)의 기초종(基礎種)으로 삼으려던 품종이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에서도 조선산마(朝鮮産馬)에 대한 경주상금을 높게 책정하여 그들의 마정(馬政)에 협조하기를 종용하였으나, 경마 때마다 신조선마의 등록두수는 7-8두를 넘지 않았으며 실지 경주에서는 3-4두가 출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때문에 관객들의 입장에서 흥미도 없을 뿐 아니라 시비가 뒤따랐는데, 1937년 봄 함흥에서는 신조선마에 대해 특별히 경주수당(競走手當)을 내걸자 마차용 신조선마들을 대거로 동원하는 사태도 있었다(한국마사회, 1984: 123).

⑥ 승마투표권(마권)의 발매

이 승마투표(Betting)는 참여자의 입장에서 경마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데, 승마투표제도가 국내에서 공인(公認)된 때는 1923년 봄부터였다. 이 제도가 공인되면서 조선경마구락부는 그 해 한강상설경마장에서 운영한 춘추경마부터 각 경주마다 마권을 발행했으며 이때부터 적중자에게 현금을 '환급(還給)' 하게 된다.

66) Harness race, 계가속보경주란 두개의 바퀴가 달린 계가(Sulky)를 채운 말들이 벌이는 경주로 경마의 평지경주와 다른 점은 주행시의 보속이 다른데, 평지경주가 습보(Fullgallop: 가장 빠름)이나 계가속보경주는 속보(Trot: 평보 보다는 빠르고 구보보다는 느림)이다. 또한 부담중량이 없기 때문에 경주마의 등에 기승하지 않는데, 보통 조교사들이 Driver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한국마사회기획실편, 1989, 『경마용어집』, 20, 108, 113 쪽).

그 이전에는 지정된 경주에만 투표를 하여 적중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경마를 운영했는데, 이러한 상품권 교부제도도 일본 본토의 경마운영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당시 일본 내에서는 마권의 발행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금지되어 있었다.⁶⁷⁾ 따라서 경마장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편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이를 자연스럽게 모방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조선에 도입된 초창기에 이런 방식의 승마투표는 서울의 조선경마구락부 뿐만 아니라 법인체가 구성되지 않은 전국 지방도시의 모든 경마에서도 ‘여흥(餘興)’이란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일본 국내에서는 1923년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해 오던 경마법이 통과되고 승마투표권 발행제도가 법제화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이 법이 당장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마권제도는 자연히 인정하는 양상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서울의 조선경마구락부 뿐 아니라 지방의 경마운영조직체에도 자체적으로는 큰 활력소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가 갈수록 경마를 개최하는 곳이 많아져 갔는데, 운영조직의 수익금이 상품권을 운영할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았기 때문이었다.



3. 관(官) 주도 운영기 (1940년대)

태평양전쟁이 점차 가열되기 시작하자 군 내부에서는 식민지에서의 군마생산이 계획에 미치지 않자, 총독부의 마정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쌓여 갔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군(軍)의 불만과 마정(馬政)체제를 전시(戰時)체제로 전환시킬 필요성도 있었고, 민간의 마사업무(馬事業務)를 총괄하고 군(軍)과 관(官)이 직접 앞장 서기 어려운 각종의 말 관련사업을 대행시키는 강력한 전시기구(戰時機構)의 요구

67) 승마투표제도와 관련해서 당시 일본 국내에서의 상황을 보면, 1906년부터 마권발행을 묵시적으로 허용해 오다가 마권 발행제도가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자 1908년 10월부터 이를 전면 금지시켰다. 비판의 핵심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시킨다는 것이었으며, 경마를 영리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많다는 점,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경마장의 질서가 문란해져 사회적으로 각종 불의를 일으킨다는 것 등이다 (한국마사회, 1984: 66쪽.)

가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이 마사회(馬事會)를 발족시킨 첫째 이유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총독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던 9개의 경마장을 직접 관할 함은 물론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여 경마를 그들의 의도대로 일사불란하게 마산(馬産)사업과 직결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경마협회보다 더욱 강력한 통제기구를 필요로 했는데, 전쟁 수행에 충분한 군마보급을 위해 조선반도의 마산장려운동(馬産獎勵運動)을 정부차원으로 바꾸고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단체인 조선경마협회(朝鮮競馬協會)를 해체하고 조선마사회(朝鮮馬事會)를 새로이 탄생시켰던 것이다. 조선경마협회 역시 단일 운영조직이기는 하지만 각 구락부가 존재해 있는 상태에서 구락부의 조정 능력과 마정에 대한 협조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일종의 협의회 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므로 조선마사회와는 통제력과 감독권 등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사실 경마운영 조직체의 통일은 1937년 마정계획 실시 당초부터의 방침이기도 했지만, 이 무렵 일본의 경마계(競馬界)는 이미 단일운영조직인 일본경마회(日本競馬會)로 통일되어 있을 때였다. 일본은 1936년 제2차 마정계획(馬政計劃)을 실시할 때 경마법의 개정을 논의하면서 전국적인 경마통제기구 설치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마권 소득금의 국고납부율을 6%에서 8%로 인상하는데 그치고 기구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1937년말 정부관료들이 경마의 국영론(國營論)을 주장하고 민간유력자들이 이에 가세함으로써 사태가 급진전하였다. 결국 일본 전국의 11개 경마구락부는 자진 해산하고 특별 공법인(公法人)인 일본경마회가 발족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런 선례가 ‘마사회(馬事會)’ 발족의 계기가 되었다.⁶⁸⁾

민간마사단체의 단일화를 피하던 총독부는 태평양전쟁의 발발을 계기 삼아 미리 준비해 두었던 ‘조선마사회령(朝鮮馬事會令) 공포에 관한 건’⁶⁹⁾을 일본 각의(閣議)에 상정시켰다. 당시 한국의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본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은 이어 시행된 조선징병제 등을 위해 조선을 내무성

68) 일본경마회, 1942, 11-19쪽 ; 한국마사회, 1984: 127-128쪽.

69) ‘조선마사회령 공포에 관한 건’은 1942년 2월 10일 일본 각의(閣議)를 거쳐서 12일 천황의 결재가 끝나면서 14일에 제령(制令) 제1호로 공포되었다. 이어서 17일 조선마사회령 시행규칙(부령 제40호) 조선마사회경마규칙(부령 제41호)이 공포되고 령(令)과 규칙이 모두 20일에 시행되었다.

조선마사회가 설립되면서 마사(馬事)에 대한 장려는, 그 해의 조선총독부의 중요시책 중의 하나로 적극 추진되면서 조선마사회 사업을 지원하도록 각종 행정지시를 통하여 전국의 관서(官署)에 시달되었다. 당시의 최고정책협의기구이던 국민총력 조선연맹(총재: 총독)은 1942년 4월 그 해의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요강(要綱)에서 마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4월 20일에 소집된 전국 도지사 회의에서도 총독은 지시사항에서 “대륙전진기지인 한반도의 사명상 유능한 말 자원의 확보는 존각을 다투는 일이므로 조선마사회를 설립, 본부의 지도장려시책과 표리일체(表裏一體)가 되어 마정(馬政)의 일익이 되게 하였으니 관민일치 마정(馬政) 진전(進展)에 최선을 다 하라”⁷⁰⁾고 지시하기도 한다.

전시법규(戰時法規)의 하나였던 조선마사회령의 공포와 조선마사회의 발족으로 종래의 조선경마회 및 경마시행규칙 등이 모두 폐지되었다. 동시에 조선경마협회와 9개 경마구락부는 사실상 해산되고 경마는 단일 운영조직인 조선마사회에 의해 조선마사회령과 시행규칙, 경마규칙 등 새 법규에 따라 시행되는 체제를 맞이하게 된다.

이로써 조선경마구락부는 1922년 4월 발족한 이래 만 20년만에, 조선경마협회는 1933년 7월에 발족하여 만 9년만에, 북쪽의 경마구락부는 만 5년만에 해산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국내의 경마는 단일 운영조직에 의한 국영(國營)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1933년부터 1941년까지 만 8년간 계속된 공인시대와는 경마체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경주용 말의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마권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국고납부액의 비중을 높이려는 통제정책의 기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주에 출전하는 모든 경주마는 체고(體高)와 혈통(血統)을 제한하여 군용적 격마(軍用適格馬) 기준에 맞추었다. 체고는 등록시 호마(胡馬)는 체고 1.64m 이내, 신마(新馬)는 1.58m를 초과하면 출주자격이 없었다. 특히 혈통제한은 신마에만 적용시켜 아랍혈통은 25% 이상, 더러브렛혈통은 75%이하로 규정하였다. 이중 조선산마(朝鮮産馬)는 더러브렛혈통 50%이하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더러브렛계 스포츠용 마필을 점차로 도태시키고 군마용(軍馬用)으로 적합한 아랍계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배당금제도는 종래와 같이 10배까지의 제한배당이었으나, 마권세령의 실시로 공제액이 증가되면서 이전에 비해 배당률은 훨씬 감소되었다.⁷¹⁾

70) 한국마사회, 1984: 131쪽에서 재인용.

한편 일제는 태평양전쟁이 점차 가열되고 군마(軍馬)의 희생도 늘어나 마자원이 갈수록 고갈되어가자 그들은 군마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온갖 행위를 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자원의 파악과 징발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말들에게도 사람들의 호적(戶籍)처럼 마적(馬籍)을 갖게 한 것인데, 이 '마적령(馬籍令)'은 1942년 3월 7일 공식적으로 선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조선마적령 역시 당시 일본 국내에서 운영하는 마적(馬籍) 중 일부 조항만을 삭제하고 그대로 적용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군(軍)의 소유마나 정부 소유의 말을 제외하고 조선의 모든 말에 적용된 규칙이었다. 따라서 모든 말들은 이 마적(馬籍)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적 사항이었다. 식민지체제이기는 했지만 민간의 말 소유자는 마적을 가지면서부터 자기의 말도 마음대로 처분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군(軍)에서 지시하는 대로 검사를 받아야 했으며 유사시 명령이 내려지면 군이 지정한 보상액으로 강제적인 공출(供出)에 응해야만 했기 때문에 많은 시행상의 문제가 따르게 된다(한국마사회, 1984:137).



71) 즉 1941년까지 국고납부금과 경마구락부 소득금을 합하여 20%가 공제되고 80%가 배당되던 것이 1942년 봄부터 마권발매에 대한 일반적인 공제는 24%(국고납부금 5%, 마권세 4%, 마사회 소득금 15%)가 되고 적중마권에 대한 공제율은 위의 24%를 공제한 금액에서 구매마권의 권면금액을 뺀 금액에 다시 10%를 공제하여 결과적으로 공제율은 34%가 되었다 (한국마사회, 1984: 134-137 ; 『일간스포츠』 1976년 9월18일).

IV. 식민지 경마정책의 목적

1. 군사적 필요성

러일전쟁에서의 승리한 일본의 육군과 해군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중국에 대해 독립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었다(장달중, 1986: 33). 특히 일본의 육군은 일찍부터 군사력 증강을 위해 충분한 군마(軍馬)의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23년 일본육군은 마정(馬政)을 농상성(農商省)으로 이관한 후에도 육군성(陸軍省)에 마정계(馬政係)를 두고 군마의 수급을 담당하지만, 육군의 야망(野望)을 뒤따르지 못하는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군(軍)의 불만은 날로 커져가고 있었다.

한반도의 식민지 통치기구였던 총독부의 마정(馬政)에 대해서도 군(軍)의 불만은 마찬가지였다. 육군은 1922년부터 옹기에 군마보충지부(群馬補充支部)를 설치하고, 일본에서 들여오는 군마(軍馬) 이외에 한반도에서 생산된 말(韓馬)도 구매하였으나 개량종인 이른바 신조선마(新朝鮮馬)⁷²⁾의 생산실적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마정에 대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일본육군은 총독부 마정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

총독부(總督府) 당국은 소나 돼지에 대한 장려는 지나치게 열성적이다. 특히 한우(韓牛) 수출에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필마(匹馬)에 대해서는 이를 도외시하고 상대조차 하지 않는다. 극언한다면 마필의 마자(馬字)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마산(馬産)은 방임되어 전혀 발전이 없으며 공사유(公私有) 2-3개 목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연간 5-10두에 불과하다.⁷³⁾

72) '신조선마'는 1916년에 시험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고, 1931년부터 신설동경마장에서는 독립종목으로 경주에 출전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각종 시험을 거쳐 승용이나 만마(輓馬) 또는 잡역마로는 손색이 없음이 인정되었으나 당시까지도 생산량이 적었다. 시험생산이 시작된 후 15년이 지난 1931년까지도 신조선마는 554두에 불과한 실정이었으며, 더욱이 총독부는 기구와 사업의 축소작업이 시작되자 신조선마 생산시험도 사실상 중단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한국마사회, 1984: 78; 『일간스포츠』 1976년 9월 2일).

73) 朝鮮軍20師團司令部 大尉, 1931, "朝鮮馬産의 一考察", 『朝鮮의 畜産』, 10편1호 1월

이와 더불어 군(軍)은 경마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보이고 있었다. 경마구락부(競馬俱樂部)에서 쓰이는 경주용 말들도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 온 것들이 많았는데, 조선에서의 경마는 결과적으로 일본 국내의 마산(馬産)에 이바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한다. 아울러 조선산마(朝鮮産馬)의 경주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경마를 국영화(國營化)하고 마권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경마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말 자원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는데, 경마가 그들의 군국주의적 필요성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는 당시 일본에서 경마운영을 주관했던 '일본경마회(日本競馬會)'의 교육지침서⁷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마 프로그램은 오늘날 국내 馬政 계획에 기초하여 우선 경주 시행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의존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馬政 방침에 모순되지 않도록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경마는 건실한 말 생산을 진흥하고, 우수한 경주마 생산을 확보하고, 種馬 선택의 기능을 완전하게 달성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말 생산의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이상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한다고 해도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일제가 이렇게 경마에 마정(馬政)을 연계하는 등 군(軍)이 마산(馬産)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당시만 하더라도 전시(戰時)에서 말은 군의 주요 기동력이 되었던 때문이었다. 즉 역사적으로 볼 때, 기병(騎兵)이 군의 주력을 이루던 과거는 물론 당시의 제2차 세계대전 초까지도 말(馬)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었다. 보·포·공병이나 군수부문(軍需部門)에까지 군마(軍馬)의 보유량은 군비(軍費)의 보유량에 필적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육로의 기반시설이 낮고 공수력(空輸力)이 없었던 당시의 전투에서 말이 차지하는 전력(戰力)은 막강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말의 보유율(保有率)도 당시에 이룰수록 높아지게 되는데, 1866년에는 병(兵) 6명에 말 1두 비율이던 것이 1905년의 러일전에서는 5명에 1두,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3.3명에 1두 꼴로 출전(出戰)하였다. 1차대전때에도 군용마가 부족한 나라는 고전(苦戰)을 면치 못하는데, 영국은 미국에서 130만두를, 프랑스는 스페인과 러시아에서 80만두를 구입해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에서도 당시 전쟁에서 말

호(한국마사회, 1984: 90쪽에서 재인용).

74) 日本競馬會, 『騎手教本』, 1942, 29-31쪽.

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⁷⁵⁾ 따라서 대륙정복의 야욕을 갖고있던 호전적인 일제로서는 침략전의 확대와 더불어 막대한 군용마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더욱이 당시 일본 본토의 마필수는 150만두가 채 안되었고 조선은 약 55,000두에 불과하였으므로 유사시를 대비하려 했던 군(軍)은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군부의 움직임은 일제의 군국주의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일본 육군성(陸軍省)의 마정과장(馬政課長)도 이러한 점을 역설하고 있는데, “대동아 전쟁 공영권(共營權)의 맹주(盟主)로서 남방(南方)의 모든 지역을 평정하고 일 제국의 세계관에 토대를 둔 황도(皇道)의 세계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각국을 일환(一還)으로 뛰어난 무력(武力)을 준비해야 하며, 장기전 수행상 군마를 포함한 군사력의 생산력을 질적 그리고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⁷⁶⁾라고 강조하면서 군마의 생산의욕을 고양시키고 있다.

공영권 내의 무력(武力)의 확대에 비례해서 적절한 군마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마산(馬産)도 마정책(馬政國策)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동아시아의 맹주(盟主)인 마산(馬産) 선진국으로서 동야공영권의 마산입지계획(馬産立地計劃)을 가급적 빨리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대동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건국이래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사명을 영원히 관철하기 위해 마사(馬事)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다”는 엄투정신(嚴鬪精神)을 더욱 고양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⁷⁷⁾

당시 경마의 운영을 말 자원의 효과적인 증식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일본의 사정을 보면, 종래 ‘경종마(輕種馬)’⁷⁸⁾는 필요할 때마다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고도국방국가(高度國防國家)의 체면상 군마(軍馬)의 독립적인 생산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또한 종마(種馬)는 일본의 기후 풍토 및 사료 등에 익숙한 것이 아니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국내산이어야 했다.

아울러 그들은 생산을 증대하는 방법과 가장 우수한 말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

75) 村上龍太郎(馬政局長官), “戰時體制下の馬政”, 『馬の世界』, 1938, 15-16쪽.

76) 梅津廣吉(陸軍省 馬政課長 陸軍大佐), “大陸戰と馬匹問題”, 『日本馬事會雜誌』, 제2권 7호 7월호, 日本馬事會, 1943, 5쪽.

77) 원 글: 5-6쪽.

78) 일반 경주마보다 체구가 작은 품종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씨말

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오로지 경마에 의존하는 수밖에는 전혀 방법이 없었다. 즉, 경마에 의존하여 능력이 좋은 말을 선택하여 경마에 활용함으로써 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검증(檢證)하고, 생산자들에게는 생산의 목표를 부여하는 상금을 줌으로써, 경종마(輕種馬)의 생산 기초를 다지려 했는데, 이것이 바로 당시 그들이 추구했던 경마의 사명이었다. 따라서 “경마는 군사용 말의 능력을 검증하고, 말의 생산의 목표를 명시하고, 말 생산의 근거를 확립하고, 말의 도태와 능력향상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⁷⁹⁾

결국 초기의 이식기를 지나서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경마에서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러한 군사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국내경마는 일본 제국주의의 확대를 위한 도구적 성격으로써 식민지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경마의 물적 토대인 경주마의 요소가 왜곡된 상태로 성장했는데, 이는 국내경마의 특성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2. 세수(稅收)의 확보



193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에서는 총독부(總督府)의 소위 ‘농공병진정책(農工丙辰政策)’에 의하여 공업이 급속히 팽창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공업의 팽창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군수공업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결국 대륙병참기지(大陸兵站基地)로서의 산업구조를 재편성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일찍이 1910년대의 한국공업은 정미업(精米業)이나 양조업(釀造業)이 대표적인 공업이었고, 이는 극히 초보적인 식품가공업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한국에 진출한 일본자본도 역시 상인자본(商人資本)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주로 유통과정이나 식품가공업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로의 이행을 거의 완료하고 제국주의적인 자본수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경공업(輕工業)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79) 日本競馬會, 『騎手教本』, 1942, 11-19쪽.

1930년대 이후에는 일본이 대공황의 타격을 받아 위기에 직면하게 된 일본자본주의의 모순을 관리통화제(管理通貨制)와 침략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국내산업이 재편성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식민지정책의 변화도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이종훈, 1989: 312).

이와 더불어 군비확장을 통한 국방국가 건설의 움직임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1934년 10월 육군성(陸軍省) 신문반(新聞班)에 의한 <國防의 本義와 그 強化의 提唱>의 발표로 더욱 본격화되었는데, “전쟁은 창조(創造)의 아버지이며 문화의 어머니”라고 주창⁸⁰⁾하고 국방목적(國防目的)을 위하여 국가의 전(全) 활력을 종합통제(綜合統制)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육군성 신문반의 이 팸플릿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경제관념(經濟觀念)’을 배제하는 한편 국방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국방의 일환으로서 농산어촌(農山漁村)의 갱생을 시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장달중, 1989: 257).

그러나 일본은 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강병(強兵)을 서둘렀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확대라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점은 바로 그들이 무리하게 식민지통치를 강행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일제가 조선을 식민 통치했던 기간의 일본재정을 살펴보면, 강병을 위한 군사비지출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근대화 및 현대화 100년간에 있어서 일반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군사비지출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첫째 러일전쟁기간의 66.9%이며, 둘째 시베리아출병기간의 65.4%이며, 셋째 청일전쟁기간의 62.2%. 그리고 제2차세계대전기간의 61.8%의 순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1918년에서 1922년까지는 조선으로서는 일제초기에 해당되는데 당시는 전시체제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규모의 군사비가 지출되었다. 이는 그들이 무리하게 제국주의의 확대정책을 실행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제의 군국주의적 성격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일본은 1932년부터 자국내의 경마에 마권 발행을 허용하여 세수를 통한 군사적 재원의 확보에 주력하게 되는데,⁸¹⁾ 군사비 지출에

80) 원산무의 『昭和史』 116-117쪽 (장달중의 “제국주의 전쟁과 외교정책”에서 재인용).

81) “경마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마투표제도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이 제도가 인정된 주요한 이유는, 경주를 진지하고 공정하게 하고 경마의 열기를 높이기 위함과 동시에 경마 자체의 존립에 필요한 경비(經費)를 취득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그 이윤으로는 말 생산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日本競馬會, [騎手教本], 1942, 19-21쪽)

따른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는 한 방법으로 경마가 이용되었던 것이다.

<표 4-1> 일본의 군사비와 조세부담

년 도 ↓	일반회계세출+임시군사비지출(A)	군사비세출+임시군사비지출(B)	GNE(C)	구 성 비		
				B/A	A/C	B/C
단위→	百萬円	百萬円	百萬円	%	%	%
1898 - 1902	264.6	109.6	2,389	41.4	11.1	4.6
1903 - 1907	927.8	620.7	3,171	66.9	29.3	19.5
1908 - 1912	831.4	196.2	4,142	33.6	14.1	4.7
1913 - 1917	583.5	413.7	5,896	49.8	14.1	7.0
1918 - 1922	2,067.9	1,352.1	14,729	65.4	14.0	9.2
1923 - 1927	1,894.7	756.4	15,807	39.9	12.0	4.8
1928 - 1932	1,707.2	519.2	14,886	30.4	11.5	3.5
1933 - 1937	2,977.3	1,686.7	18,552	56.7	16.0	9.1
1938 - 1942	19,345.0	11,957	31,392	61.8	61.6	38.1
1943 - 1945	39,758.0	20,906	69,415	52.6	57.3	30.1
단위→	億円	億円	億円			
1946 - 1947	161	-	8,920	18.0	-	-
1948 - 1952	6,837	462	43,400	6.8	15.8	1.1
1953 - 1957	10,666	1,471	90,800	13.8	11.8	1.2
1958 - 1962	18,380	17,393	166,200	9.4	11.1	1.0
1963 - 1967	39,301	3,117	343,600	7.9	11.4	0.7
1968 - 1972	85,072	6,036	729,800	7.1	11.7	0.8
1972 - 1975	18,389	11,741	1,337,900	6.3	13.7	0.9

자료: 일본대장성, 『대장성백년사 별권』 137쪽, 163쪽, 일본은행, 『경제통계연보』, 1976년 (이종훈, 1986년, "대정일본의 경제"에서 재인용).

일제의 재정적 부담을 식민지에서 시행했던 경마정책의 전개과정에 대입해서 살펴보면 그들이 조선의 경마에서 얻으려 했던 목적이 보다 분명해진다. 즉 식민지에 조선경마령이 실시됐던 1933년을 기점으로 일반회계지출에서 군사비지출의 규모가 56.7%로 높게 나타나며, 또한 조선마사회를 설립시켰던 1942년을 전후하여 그 부담률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취했던 경마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일제의 재정상 군사비지출규모가 증대되면서 식민지 착취가 더욱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식민지정책 중에서도 경마정책은 군마(軍馬)의 수급이라는 군사적 목적이 가장 크지만, 그러나 군부(軍部)의 불만과 함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에서 편성하는 예산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사변 및 이 다음에 올 사변에 대한 준비상 시에 쓸 소화 13년도의 몇십억 원의 예산 중 말(馬)에 대한 응급 경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 나라를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군마에 대한 정부의 예산은 단순히 지침을 가리키는 경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상의 경비에 대해서는 도부현비(道府縣費)와 민간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아무래도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이 아닐까?

우리 나라가 노일전쟁때 모(某)나라로부터 말을 구입한 금액은 615만엔 이지만, 프랑스가 제3국에서 말을 구입한 금액은 6억엔 이상이다. 아마도 제국의회도 말에 대한 이와 같은 빈약한 예산의 비용으로는 금후 1년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에 반대 의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당국의 입장에서 자신 있는 예산으로 이를 간과하고 있지만, 말에 종사하는 국민으로서는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다.⁸²⁾

이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군비충당에 혈안이 되어 있던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볼 때, 경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마권세 수입은 상당히 매력적인 대상이었다. 따라서 경마 도입기의 유동적 태도에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실시한 것도 이러한 원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은 마산계획(馬産計劃) 추진을 위한 주된 재원(財源)을 마권세(馬券稅)의 수입으로 충당하려 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즉 1932년 총독부 당국은 연간 마권매출액을 3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이중 5%인 15만원을 국고수입으로 책정하여 말 생산계획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⁸³⁾ 이를 위해 마권매출 수익금 일부를 국고수입으로 정하는데 대해서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고, 경마운영에 따르는 세부사항을 법제화하여 당국이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경마를 말 생산과도 직결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국내 최초의 경마법규인 ‘조선경마령(朝鮮競馬令)’의 시초인 것이다.

공인경마 초년도인 1933년을 기준 년도로 하여 1939년까지 7년간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승마투표권 발매액은 7년간에 569%, 연평균 35%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국고 수납금도 당초 예상을 훨씬 초과하여 당국의 마정재원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⁸⁴⁾ 이를 도표로 구성해 보면 <표 4-2>와 같다.

82) 坂田新, 『馬の世界』 제18권 제3호 3월호, 1938, 15쪽(坂田新은 이 잡지사의 편집 및 발행인으로 이 내용은 권두언(卷頭言)적 성격의 글임)

83) 한국마사회, 1984:115

84) 이런 전반적인 성장세 속에서도 두드러지게 성장을 보인 것은 서울의 경마로서 총매출

<표 4-2> 마권매출액 및 세금지출 현황(1933-1939)

구 분	마권매출액(원)	공제금(원)	국고수납금(원)	전년대비증가(%)
1933	1,708,521	341,704	85,426	-
1934	2,276,619	455,324	113,831	33.3
1935	2,833,669	566,734	141,683	24.5
1936	3,698,010	739,602	184,900	30.5
1937	4,163,177	832,635	208,159	12.6
1938	5,597,470	1,119,494	279,874	34.5
1939	9,722,445	1,944,489	486,122	73.7
계	29,999,911	5,999,982	1,499,995	34.85

자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법인 구락부는 법규에 따라 마권발매액의 20%를 공제하였다. 이중 마권발매액의 5%는 국고에 납부금, 5-8%는 마주, 조교사, 기수 등에게 지불하는 경주상금으로 지출했으며, 나머지 7-10%의 공제금으로 구락부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경성을 제외한 지방경마구락부는 매출액규모가 적어 항상 재정난에 시달려야 했다. (한국마사회, 1984: 116-117; 『일간스포츠』 1976년 9월18일).



이후 1942년 3월 1일 조선 마사회가 발족하던 날, 조선마권세령(42.2.28 훈령제 2항)이 동시에 공포되어 국내경마에서는 공식적인 마권세(馬券稅)가 최초로 부과되었다. 그 결과 1941년까지의 경마구락부시대는 국고납부금 100분의 5만이 유일하게 경마시행에서 공제(控除)되는 세금이었으나, 마권세 제도가 실시되면서 마권구매자들의 환급금은 훨씬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 마권세율은 승마투표권 즉 마권 발매액의 100분의 4와 환급금(還給金)에서 법정공제액(국고납부금 100분의 5, 마사회수득금 100분의 15, 발매세 100분의 4)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10이었다. 따라서 마권구매시 예외 없이 공제되는 금액은 국고납부금을 포함한 마사회수득금 100분의 20과 발매세 100분의 4로 총 100분의 24는 마권의 적중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되었다. 환급금에서는 고액, 저액배당의 구분 없이 100분의 10이 공제되어 적중마권에 대한 과세율은 34%나 되

의 절반 이상을 항상 경성이 차지했다. 1937년 봄의 정기(8일간)와 임시경마(6일간)의 결과를 보면 기존의 6개 구락부가 2,423,822원, 신설된 3개의 구락부가 532,500원 이었는데, 그 중 서울이 1,640,010원으로 6개 구락부의 67.4%, 9개 구락부 전체의 55.3%를 차지한다(한국마사회, 1984: 115-6).

는 고율(高率)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그들은 이에 대한 반발과 마권세의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마권세령에 명문화된 금지조항을 넣었다. 즉 마사회가 부정한 방법으로 마권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했을 때는, 모의나 발각을 막론하고 세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했고, 세금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엄격한 규정을 두었다.⁸⁵⁾

이와 같이 일제는 경마운영조직을 단일화한 이후 마권세에 대한 법적 규제력과 그 범위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시켰는데, 그 결과 경마 자체에 대한 관심과 비중보다는 마권 발매에 대한 관리·감독의 통제적 기능이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마는 경주마에 대해서는 군국주의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초 군사력 증강과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합법적인 제도화의 길을 걸었던 국내 경마의 가장 큰 특징은 경마운영조직체에 대한 총독부 당국의 통제력 강화였다. 그런데 운영조직에 대한 통제 위주의 식민지경마정책의 기초는 해방 이후에도 국내경마의 정책적 특징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합법화된 경마의 이중적인 특성과도 결부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마가 합법화되어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빈약한 국가 재정의 확충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⁸⁶⁾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내의 근대경마는 일제 조선총독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식민지체제에서 이미 합법적인 제도화과정을 거칠 수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국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식민지체제에서의 조선총독부나 해방 이후의 우리 나라 정부 모두 경마를 통해 빈약한 국가재정의 확

85) 朝鮮總督府, 1942, <朝鮮馬券稅令> 第9條 (1942. 2. 28 公布·制令 第2號).

86)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하에 이룩된 경제발전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외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이 재정위기를 몰고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어쨌거나 경제적 부의 축적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욕구 또한 꾸준히 높아졌다. 이에 국가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시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해야만 했다. 문제는 재정의 확대를 세수의 증대를 통해 보충해야 하지만 각종 명목의 새로운 세금부과나 세율의 인상은 조세 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을 그만큼 높여 놓는다는 데 있다. 여기에 종래 정치적 정당성이 취약했던 한국의 국가 권력, 곧 정부는 그런 조세저항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번질 우려를 무시할 수 없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도박의 합법화는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고서도 손쉽게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석준, 『도박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26).

충하려 했던 점은 다를 바 없다.⁸⁷⁾

3. 지배이데올로기의 강화

제국주의에게 식민지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인간적 요소를 제외한 물질적 차원으로, 보통 말하는 원료공급지(原料供給地)이자 시장으로서의 식민지가 그것이다. 물론 일부 산업의 경우 식민지는 생산기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인간적 차원으로, 인간은 잉여가치(剩餘價値)를 낳는 유일한 원천으로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인간은 지배에 대해 의식적인 저항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즉 자연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지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영토는 점령할 수 있어도 인간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는데, 단순한 강압력만으로는 식민지를 지배할 수 없으며, 군사력은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한 원천이지만 유일한 원천은 아니기 때문이다.⁸⁸⁾

따라서 일제에 있어 식민지 조선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우선 군사적 차원에 있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그 목적과 지배체계의 면에서 군국주의에 기초하고 있었으므로, 군사지배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무단정치도 문화정치도 결국 동일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해서 수단도 동일한 것은 아니다. 무력으로 대항하기가 어려운 피지배민족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주적 정신으로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을 더욱 더 명백하게 드러냄으로써 저항을 강화하기 때문에 단순한 군사적 강압력만으로는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이 약화되기 쉽다. 따라서 무

87) 이는 국가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당성이 취약한 정부 또는 정권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형적 성장이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통해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그 결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직·간접세의 비율은 더욱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무리한 외적 성장보다는 세수(稅收)가 적으면 적은대로 재정적인 면에서 보다 건실하게 설계해 가는 정책 지향성이 오히려 폭넓은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방법이 아닐까?

88) 홍성태, 1997, "식민지체제와 일상의 군사화", 김진균. 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356-357쪽.

력에 의한 정복과 지배가 가능하게 되었던 일제는, 이를 영속하기 위하여 통치와 지배를 위한 각종 동화정책을 만들어 내고 이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지배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시작한다.⁸⁹⁾

1936년, 조선의 제7대 총독으로 남차랑(男次郎)이 부임하는데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는 반일(反日)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해서 그는 우선 두 가지 당면정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는 식민지에서 반일운동을 근절시키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조선의 병참기지화를 위해서 북방으로부터 식민지 조선을 방호(防護)하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반일세력(反日勢力)을 무마(撫摩)시키기 위해서는 경찰력강화 등의 강압수단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일본의 선량한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즉 동화정책이야말로 탄압 이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부임하자마자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며 황국신민화정책(皇國新民化政策)에 열을 올리게 되는데, 이를 포함한 그의 정책은 이른바 ‘조선통치(朝鮮統治)의 5대 지침(指針)’⁹⁰⁾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지침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종의 지배 이데올로기적 구실을 하게 되는데, 일제의 황국식민화정책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기제는 식민지 피지배사회의 전통과 풍속, 가치 등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피지배민족에게는 자연히 더 큰 저항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지배와 피지배의 사회 속에서 지배이데올로기는 사회의 모순관계를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행사함으로써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하며, 반면에 저항 이데올로기는 지배의 불합리와 부당성에 대한 모순을 폭로하고

89) 홍성태의 원 글 357쪽.

90) 조선통치의 5대지침의 내용을 보면, ① 국체명징(國體明徵): 제국 9천만 동포가 거국일치(舉國一致) 상하일심(上下一心)으로 천황의 도(道)를 선양(宣揚)하자면 우선 국체(國體)관념이 명징(明徵)되어야 한다. 이는 곧 조선통치의 근본이라, 신사참배(神社參拜)·황거요배(皇居遙拜)·국기(國旗)·국가(國歌)의 존중과 일본어의 보급 등으로 실(實)을 거두어야 한다. ② 선만일여(鮮滿一如): 최근의 일·만(日·滿)관계에 조선이 차지하는 지위는 크니, 일만일체(日滿一體), 선만일여(鮮滿一如)의 대방침에 따라서 조선은 만주개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③ 교학진작(敎學振作): 국민정신의 함양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는 일본제국의 신민(新民)’이라는 신념과 긍지를 갖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④ 농공병진(農工竝進): 세계정세로 볼 때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긴요한 문제이니, 조선의 지리적 자원적 사명에 따라 생산력 증강에 힘써라. ⑤ 서정쇄신(序政刷新): 행정을 국가의 수요(需要)에 대응하도록 쇄신하여야 한다(임종국, 1979, 「일제말 친일군상의 실태」 『解放前後史의 認識』, 한길사 172-173쪽에서 재인용).

지배를 극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갈등과 투쟁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모순⁹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속의 지배와 피지배라는 문제를 떠나서는 이데올로기의 본래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⁹²⁾ 따라서 일제 식민지정착을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면, 우선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론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입장은 일제의 식민지정착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된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이점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일제는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3·1운동 이후 1920년대에는 문화정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내의 일부 민족부르조아지를 회유하였으나, 일제의 파쇼적 성격이 강화되었던 1930년대 이후에는 전시체제를 강화시켰고 이에 따라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황국신민화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정해구, 1992: 73).

그들은 황국신민화정책의 일환으로 군국주의 물질 토대의 일부분을 이루었던 말에 대해서도 숭배(崇拜)를 강요함으로써 그들의 지배이데올로기를 한층 더 강화하는 기제로 이용하는데, 조선 내에 있는 마필보유부대(馬匹保有部隊)마다 반드시 마흔비(馬魂碑)를 세우게 하여 죽은 말의 영혼을 위로하게 하는가하면 심지어는 말을 사람과 동일시하여 전쟁에서 공을 세운 말의 머리 깃에는 훈장을 달아주는 등 갖가지 진풍경을 볼 수 있었다(일간스포츠, 1976. 9. 4).

말에 대한 이러한 강요된 숭배사상은 병영(兵營)뿐만 아니라 경마에 있어서도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1920년대 조선경마가 경성을 비롯, 전국에 걸쳐 번성해 갈 때 각 경마장 입구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마두관세음비(馬頭觀世音碑)'⁹³⁾를 세우고 참배(參拜)하도록 했다. 당시 경마장에서는 봄과 가을에 두 차례

91) 이데올로기가 사회의 모순과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전제 위에서 이데올로기를 규명하고자 했던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이데올로기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기에 마르크스는 외부세계의 객관적 모순을 주체의 의식 내부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독일 관념론을 비판한다. 그 비판을 통하여 마르크스는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나아가 마르크스에 의하면, 지배계급은 그 사회의 물질적 힘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정신적 힘까지도 지배하며, 따라서 자신의 사상을 그 사회의 보편적 사상으로 제시한다(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박재희 역, 『독일 이데올로기 I』 청년사, 1988: 82-4; 정해구, 1992: 67에서 재인용).

92) 그러므로 이 지배계급의 사상이 사회의 모순관계를 은폐시킬 때 이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며 피지배계급의 '허위 의식'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초기 마르크스는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며 지배계급의 사상은 자신의 사상을 보편적 사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은폐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함을 지적하고 있다(정해구, 1992: 67-8).

씩 각 계절경마가 시작되기 전날 또는 시작되는 날 아침 모든 경마구락부의 임직원과 조교사, 기수, 기마수 및 그 가족들이 마두관세음비(馬頭觀世音碑) 앞에 모여 마두신(馬頭神)에 대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낼 때는 지나가던 입장객들도 일단 발길을 멈추고 합장(合掌)을 해야만 했다(일간스포츠, 1976.9.4).

일제말기에 접어들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전쟁을 치르는데 있어서 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마필증산이라는 물적 토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애마사상(愛馬思想)을 부각시킨다. 군(軍)에서는 마혼비(馬魂碑)를 세우고 기념제를 지내도록 했으며 일반인들은 ‘애마(愛馬)의 날’을 따로 정해서 이날이면 전국민이 다 같이 전쟁에서의 말의 공(功)을 기리며 말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지니도록 했다. 일본마사회(日本馬事會)는 해마다 10월 24일이면 동경 우에노(上野)공원에서 군마제(軍馬祭)를 열고 전장(戰場)에서 사라져간 마혼(馬魂)들을 위로했다. 이밖에 교육부에서도 이 같은 애마사상(愛馬思想)을 보급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말을 주제로 작품발표회, 전시회 등 각종 문예활동을 펴기도 했다.⁹⁴⁾

국내에서도 일제말기는 말의 수난시기이기도 했지만 이 시기처럼 말이 귀하게 여겨졌던 때도 일찍이 역사에 드물다. 이미 일제에 의해 국내에서도 성행했던 애마일(愛馬日)과 군마제(軍馬祭)를 비롯해서 말과 관련된 각종 행사는 태평양전쟁으로 더욱 극성스러워졌고, 조선마사회(朝鮮馬事會)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를 주관하고 후원하는데 바빴다. 이 애마일과 군마제는 1938년 일본에서 제정된 것인데, 국내에도 그대로 이식(移植)되어 요란한 행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애마일은 1940년이 되면서 애마주간으로 범위를 넓혀 마필자원보호운동이라는 명목 하에 각종 행사를 펼쳤다. 총독부가 후원했던 애마주간행사에는 전국의 각급 학교 학생들이 총동원되었다. 서울의 경우 ① 1,400여두의 군마(軍馬)와 민간인 소유의

93) 이 비석(碑石)은 당시 말과 함께 생활했던 조교사(助教師), 기수(騎手), 기마수(騎馬手)들이 소원성취와 길운을 비는 일종의 신앙의 대상인 동시에 사고로 죽은 말의 명복을 비는 마장(馬場)내의 수호신으로 통했다는 점에서 지배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군국주의의 한 토대가 되었던 말의 보호에도 한 몫을 했다(『일간스포츠』 1976년 9월 4일).

94) 일본은 이 같은 방침을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1938년부터 4월 7일을 ‘애마의 날’로, 10월 24일은 군마제(軍馬祭)를 올리는 날로 정했다. 특히 군마제는 조선경마협회(朝鮮競馬協會)가 주최가 되고 조선총독부, 경성사단, 조선군사령부, 국민총력조선연맹 공동후원으로 열리는 군마제에선 군·관·민의 고위층들이 참석해 병사와 군마(軍馬)의 무운(武運)을 빌었다. 이 행사에는 조선총독, 조선군사령관, 경성사단장, 경기도지사, 국민총력조선연맹사무총장, 재향군인분회 조선연합회장, 각 마사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의 집단 행사였다(『일간스포츠』 1976년 9월 16일).

말이 참여하는 애마행진 ② 군마에 관한 각종 전시회 ③ 거리마다 여학생들이 당근과 물을 준비해 놓고 말에게 먹이는 애마봉사 ④ 군마미담(軍馬美談) 순회강연 ⑤ 플래카드와 선전탑, 포스터에 의한 애마선전 ⑥ 중학생들의 기마실습 등 서울 장안이 요란하였다. 이럴 때면 경마도 한 몫 끼어 전시회에는 마권발행에 따른 수익금(收得金)의 용도와 각국의 유명경주마 등이 도표와 사진으로 전시되고 극장에서는 애마선전영화에 경마일정이 자막으로 찍혀 나왔다. 또 말에 관한 미담(美談) 거리가 있으면 신문과 잡지에 대서특필케 하고 학생들의 작문제목으로도 삼게 하였다.⁹⁵⁾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중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던 경마는 그런 대로 오락의 한 부분으로 서서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말의 질주에서 느끼게 되는 재미와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도박적 특성이 가미되었다는 점 등으로 사람들의 참여 가능성을 높였는데 경마일수의 증가와 비례하여 입장인원과 마권매출액도 당초의 예상을 훨씬 넘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경마를 통한 제국주의의 구조적 지배라는 어두운 면이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즉 한일합방 이전에 이미 일본 내에서는 마권의 발행이 금지되었던 경험이 있었다. 그것은 마권제도가 끼치는 부작용, 즉 국민들의 사행심 조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결과적으로는 경마장의 질서가 문란해져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적인 여론 때문이었다. 자국 내에서 그러한 부작용의 경험이 있었고, 또 당시 조선에서도 경마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식민지사회에서 발생한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은 참으로 부실해 보인다. 결국 식민지의 피지배민족에게는 하나의 놀이였지만, 거기서 파생된 문제점들은 오래도록 식민지경마를 지배하는 특성의 한 부분으로 유지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마를 우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이용했던 일제는 결과적으로 지배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도구로써 그들이 의도했던 또 하나의 목적을 달성해가고 있었다

95) 한국마사회, 1984: 138쪽

V. 식민지 경마정책의 영향

1. 운영조직의 국가 독점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에서 경마가 제도화된 시초는 지난 1922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경마구락부에 의해서이다. 이 경마구락부는 1942년에 설립된 특별법인 조선마사회의 전신으로 1922년부터 1941년까지 20년간 경마를 주도해 왔다. 조선마사회는 원래 9개의 경마구락부와 1933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조선경마협회를 통합한 조직이었는데, 당시의 경마협회는 구락부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경마 운영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 조정과 공통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조직된 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경마운영의 주도권은 실질적으로 구락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42년부터는 일제의 군국주의적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산하기관적 성격의 특별법인인 조선마사회를 설립하는데, 이 조직은 해방이 될 때까지 조선에서 경마운영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당시 조선에서의 경마운영조직의 조직화 및 제도화 과정은 일 제국주의 국내의 변화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군국주의적 특성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초 일본의 경마법에서는 11개의 경마운영조직이 각각의 사단법인을 통해 경마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11개의 경마조직은 각각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마정(馬政) 방침에 적합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곤란했고, 군사용 말의 생산과 종마(種馬)의 선택 등 그들이 의도했던 경마의 군사적 사명을 달성하는 데도 힘들었다. 또한, 조교사(調教師)나 기수 등 경마관련 종사자에 대한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1936년에 경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각 경마 조직을 해산시키고, 단일 공법인(公法人)인 '일본경마회(日本競馬會)'를 설립, 일본경마회만이 경마를 실시토록 하였다.⁹⁶⁾ 운영조직이 단

96) “다수의 시행 단체의 존재는 자칫 흥행적으로 흘러서 馬改良이라고 하는 의무를 일탈하는 경향을 초래하게 되고, 昭和11년에 경마법 대개정이 행해져 난립해있는 競馬施行團體를 통일했으며, 이후 다시 日本競馬會의인 特殊法人으로 설립되어졌다”(馬政局, 1944, “競馬

일화된 이후 일본의 경마는 말의 개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일본의 마정(馬政) 방침에 기초하고 마정계획에 따라 시행해야 했다. 특히 경마가 그들이 추구했던 말의 생산과 진흥에도 기여하는 면이 크다는 것이 국책상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경마운영조직을 강력하고 특별한 기관으로 하여 당국의 통제를 받게 하였다. 경마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특성은 식민지 조선에도 그대로 이식되고 있었다.⁹⁷⁾

<표 5-1> 운영시기별 경마운영조직체의 법인성격

시 기	운영 조직	법인 성격
1922 - 1932	경마구락부	사단법인
1933 - 1941	조선경마협회	
1942 - 1945	조선마사회	특별법인
1945 - 현재	한국마사회	

자료: 자료의 내용중 조선경마협회의 운영시기가 다른 구락부와 중복되는 이유는 협회의 성격상 새로운 법인체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구락부를 결집하는 협의회 적인 성격의 법인체이기 때문이다.

1942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 수행에 충분한 군마보급을 위해 조선반도의 마산장려운동을 정부차원으로 바꾸고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선경마협회를 해체하고 조선마사회를 새로이 탄생시켰다. 결국 조선마사회의 설립은 경마 그 자체를 위한 목적이었다기 보다는 그들의 군국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이를 위해 모든 업무는 조선총독부의 직접적인 독려와 농림국장의 지시에 따르도록 했다. 조선총독부는 이 같은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조선마사회의 임원(任員), 직원 및 평의원까지 군인출신들로 대체하며 경마운영을 일사불란하게 주도하며 해방이 되는 순간까지 식민지에서의 경마정

開催停止에 關하여”, 『日本馬事會雜誌』 제3권 제1호 1월호, 日本馬事會, 38쪽).

97) 당시의 일본경마회 직원은 농림대신(農林大臣)이 임명했으며, 중요한 업무상의 일은 물론, 개최집무위원(開催執務委員) 및 전임직원(傳任職員)도 모두 인가(認可)를 받게 되었다(日本競馬會, 『騎手教本』, 1942, 11-19쪽).

책을 수행하고 있었다(일간스포츠, 1976. 9.18).

따라서 해방을 맞이했던 1945년, 일제의 군국주의적 필요성에 따라 조선경마시행령이라는 전시법규체제로 운영되었던 조선마사회는 관변단체의 성격이 청산되어야 했으며,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의 길이 모색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반파시즘 진영이 승리하자, 세계체제는 재편되기 시작한다. 미국은 2차대전을 치르면서 자본주의 진영의 맹주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전쟁이 끝난 뒤에 경제위기를 맞는다. 안으로는 전쟁경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독점자본의 생산기반이 흔들렸고, 밖으로는 구식민지체제가 무너지고 민족해방운동이 고양되었으며, 동구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나 사회주의의 진영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미국 독점자본은 상품시장을 잃어버릴 위기에 부딪혔다.

이에 미국은 줄어든 세계시장을 되찾고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을 자본주의 질서 속으로 편입시키려 했으며, 반공과 반혁명을 통해 세계자본주의를 재편하는 길로 나아갔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제2차세계대전을 계기로 한 소련의 팽창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더 중요했으며, 식민지 종속에서 해방된 민족들이 안고 있는 구체적인 요구보다는 1930년대의 불황에서 그들이 겪었던 뼈저린 경험으로부터 전후 세계경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하는 그들의 경제적 이해가 우선이었다.⁹⁸⁾

이러한 틀 속에서 미국의 군정참여자들은 단기적인 정치안정만을 추구하게 되는데, 경마를 둘러싼 내·외부적 여건 또한 당시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다를 바 없었다. 해방이 되어 한 때 민간으로 이양되어 근대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 내부적으로 운영조직체의 주도권을 장악할 주체형성의 부족으로 무산되며 관할권은 강제로 군정으로 옮겨지게 된다. 또한 그 후 미군정청은 정부수립후 남한 정부에 이양함으로써 마사회는 정부의 산하기관적인 성격이 구조화되기에 이른다. 결국 일제시대 식민지의 유산으로 한편으로는 청산되었어야 할 관주도의 일방적 관할·감독권과 경마운영의 국가독점체제는 합리적으로 재편되지 못한 채, 외부적 제약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상황논리가 결정하는 구조 속에서 재생산이 된다.

해방 전후 운영조직체의 근거가 되는 법규로는 경마관계 법규가 제정되기 전인

98) 박현채, 1981, “자립경제 실현을 위한 모색”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개 289쪽

1932년까지는 민법 34조에 의한 사단법인 설립과 그 정관, 1933년에서 1941년까지는 조선경마령과 경마구락부정관 및 경마협회정관, 그리고 1942년부터 1961년까지는 조선마사회령과 마사회정관, 1962년 이후는 한국마사회법과 한국마사회정관을 기본적인 조직의 법규로 운용되고 있다.

<표 5-2> 경마법인의 운영근거법규

법인 명칭	기 간	운영근거법규
경마구락부	1922 - 1932	일본민법. 구락부정관
	1933 - 1941	조선경마령. 신규정관
조선경마협회	1933 - 1941	협회 정관
조선마사회	1942 - 1945	조선경마령, 마사회정관
한국마사회	1945 - 1961	
	1962 -	한국마사회법. 마사회정관

자료: 한국마사회, 1984, 『韓國競馬六十年史』 504쪽; 한국마사회, 1993, 『韓國馬事會半世紀史』 60쪽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식민지 조선에서 운용되었던 최초의 경마관련법은 일본의 민법이었으며, 1961년까지도 국내경마는 일제가 만든 조선마사회령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었다. 경마의 운영조직은 해방 전의 조선마사회와 해방 후의 한국마사회로 구분할 수 된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 10여년까지도 조선마사회령을 근거로 경마가 운영되었으므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연속선상에 있었으며, 한국마사회법의 공포 이후에도 마사회의 정관은 부분적인 개정만 있었을 뿐이다.

현재 국내경마는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특수법인인 한국마사회가 경마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중앙정부의 감독 하에 놓여 있으며, 정부의 지침과 방침을 기본으로 그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즉 문화관광부의 관할권에 있는 한국마사회가 국내에서는 유일한 경마 운영의 주체⁹⁹⁾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경마운영단체의 특성은 우리와는 다소 대조적이다. 경마

99) 즉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정부의 감독 하에 있는 국내 유일의 운영단체이며,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해서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를 창시한 영국을 비롯해 영연방 국가들은 대부분 ‘자키클럽’이 운영권을 갖는다. 즉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경마를 운영하고 있다.¹⁰⁰⁾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는 경마장 주인은 민간인이지만 경마시행의 감독권은 주 정부의 농림부에 있으며, 연방정부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주 정부는 경주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수와 조교사의 면허를 주고 심판 운영권을 지니며, 경주계획을 수립하는 역할도 한다. 아울러 경마 운영조직의 주체인 민간인들은 다른 경마장과 연계하여 크로스베팅을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주마에 대한 혈통등록은 켄터키주에 본부를 둔 ‘자키클럽’이 맡는다. 미국의 경마운영 구조는 철저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또 각 부문이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다. 그러면서도 자율과 경쟁원리가 철저하게 적용되는데, 미국적 이데올로기와 가치가 경마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한국에 경마를 이식했던 일본은 현재 우리와는 달리 경마의 운영 감독권이 이원화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농림부 산하의 중앙경마회(JRA)를 두어 경마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현의 농림과에서 경마시행을 관장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중앙경마회가 실시하는 경마장이 전국에 9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마장은 30개에 이른다. 그러나 경마의 규모 면에서 따져보면 입장인원과 매출액에서 지방경마는 중앙경마의 약 30%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¹⁰¹⁾

이처럼 경마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경마운영권을 살펴보면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식민지 지배를 실시했던 일본도 단일 운영조직의 틀에서 벗어나 각각의 운영조직체들이 자율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조직체 수의 과소가 경마의 현대화나 성장의 척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경우 국가의 독점적 지배의 형태가 식민지정책의 산물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100) 오늘날 경마는 세계적으로 80여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나라별로 그 형태나 특성도 다양하다. 이를 굳이 유형화한다면 영국식 경마와 미국식 경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근대경마의 전통과 원칙의 계승 여부에 있을 것이다. 즉 영국식 경마가 왕가와 귀족의 사교, 여흥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는 베타성이 강한 클럽제·회원제 경마를 의미하는 반면 미국식 경마는 권위와 전통보다 오락성을 강조하는 일반 시민계층 주도의 대중경마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마사회, 1992, 『韓國競馬 發展方向』 17쪽).

101) 김문영, “경마시행 국가 독점체제의 문제점 진단”, 『馬事春秋』 1997년 12월호:42-44

2. 국내 경마정책의 전근대적(前近代的) 성격

초기의 조선경마는 마필의 개량증식과 마사진흥이라는 일제가 의도했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도박적인 형태로 변해 갔으며, 경마운영을 담당했던 일본인들은 군비충당과 군마보급에 일익을 다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갖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즉 경마에 있어서 개량·증식된 말보다는 구하기에 손쉬운 재래종 말들을 활용했으며, 경마장의 시설과 경마의 시행방법도 편법적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마권의 무제한 발매 등으로 오히려 경마의 부작용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했다.

북선경마(北鮮競馬)의 경우에도 전국에서 가장 뒤늦게 보급되어 짧은 시일 내에 마산장려계획(馬産獎勵計劃)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긴박성 때문에 경주 중에 지켜야 할 규칙도 허술하게 다루어지곤 했다. 예를 들어 경주 도중 추월은 반드시 4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하며 말과 말의 충돌은 물론 앞서 가는 말에 대한 채찍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이를 어기는 일이 많았고 그대로 묵인해주곤 했다. 특히 기수와 관람객과의 단합과 부정이 오가도 모른 채 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일간스포츠, 1976. 9.12).

이런 상황이 되자 조선총독부는 명목상으로는 무질서한 경마행위를 법으로 다스린다는 목적으로 조선경마령을 제정하고,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자 일사불란한 지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 경마운영조직도 단일화시키게 된다. 문제는 그러한 경마정책의 목적이 경마행위의 부정적 흐름에 대한 원상회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팽창을 위한 군국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원래 경마법에 의한 경마의 목적은 소화13년 제정된 마정계획중에 “경마의 목적은 말의 개량에 필요한 종마의 능력을 검정하고 종마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아울러 馬事智識의 보급에 이바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것은 말 개량을 위해 불가결한 輕種種馬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馬事思想의 보급기관으로, 결코 영화, 연극처럼 오락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¹⁰²⁾

여기서 주목 할 점은 이렇게 군마증산과 군비조달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상태

102) 마정국, 1944, “경마개최정지에 관해서”, 『일본마사회잡지』 2-3쪽

에서 파생된 경마와 경마정책의 문제가 한국경마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경마에 참여하는 식민지의 피지배민족에 대해 한 편으로는 빠져들게 하면서, 부정경마 현상에 대해서는 일종의 방관자적 입장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식민지 내부에서의 경마행위는 말 생산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세수의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운영조직체에 대한 통제 위주의 경마정책이 형성됨으로써 식민지에서의 경마를 왜곡된 형태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점은 그들의 제국주의 시절 경마를 위한 ‘경주편성의 원리’¹⁰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인자본주의가 결합된 식민지 내부에서의 경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일본 국내경마의 형성과정과 성장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경마는 형성단계에서부터 근대적 성격이 결여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일본경마의 성장과정을 보면 근대경마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영국경마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경마용 경주마, 즉 더러브렛의 생산이 선행한 후에 근대경마의 발달을 보았다. 이에 반대로 일본에서는 먼저 경마의 형태를 자국 내에 이식함으로써 경마를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먼저 갖추었다. 경마가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한 선진국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사회적 제반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기에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어도 그에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경마의 형식을 수입하고 군사적 필요성 등 다른 목적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수한 보호정책을 필요로 했으며 이와 같은 보호정책의 필연성은 경마의 후진성과 일체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경마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베팅을 위한 부문만이 비대하게 발전하여 기형적인 경마산업의 모습을 형성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경마의 왜곡된 역사성과 당국의 정책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의 경마는 이 땅에서 형성되던 시초부터 바르게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제 식민지시기에 그들에 의해 도입된 경마는 일제의 원활한 식민통치를 위한 수단으로써 우민화정책과 전쟁용 군마의 생산,

103) 일본경마회의 경주편성의 원리는 경주를 크게 특수경주와 일반경주로 나누고, 특수경주는 주로 중마 선택을 목적으로, 일반경주는 생산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방침 하에 경마가 운영되었다. 따라서 경마는 오락적 기능보다 마정의 기능에 가깝다(日本競馬會, 1942 『騎手教本』 29-31쪽).

그리고 세수의 확보라는 제국주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장려된 것이므로 경주용 말을 생산하기 위한 토양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마제도와 정책에 대한 전근대성의 요인을 역사적 단초(端初)에서 찾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일제 식민지통치 아래서 구조적으로 형성된 경마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행태를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과거의 왜곡된 관행이 습관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남긴 관료적인 구조와 제도를 철저히 개편하여 한국적 형태의 구조와 기능을 조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마정책은 국가의 조세정책상 필요성에 따라 과거 지향적 특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방후 국내의 경마정책은 효과적인 조세 확보를 위해 경마운영조직체에 대한 통제정책에 집중되어 있고 경마참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무시되어 버린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지향은 결국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경마정책의 방향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 경마는 참여자의 참여 특성에 따라서도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경마는 현금이 오고가는 베팅의 특성상 단순한 오락의 차원을 넘어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간의 욕망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마가 투기의 대상이 될 때 부정경마와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되는데, 부정경마의 형태와 방식도 이미 식민지경마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즉 국내경마는 식민지경마에서 파생되고 왜곡된 현상들이 긴 세월동안 '제도화'되었고 그 문제점도 재생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3.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구조화(構造化)

삼일독립운동을 계기로 일본의 식민지정책은 종래의 강경일변도의 무단정치(武斷政治)에서 유화정책(宥和政策)으로 전환되었다. 강경일변도의 식민지정책(植民地政策)은 오히려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을 더 강화시켜 삼일운동(三一運動)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반일감정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으며, 경마에 대해서도 저

항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을 보였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고 (1920),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이 나날이 강화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총독부청사에 대한 폭탄 투척사건(1921), 종로서폭파사건(1923) 등 항일 저항세력의 활동이 생(生)과 사(死)의 갈림길을 넘나들었던 시기였다.

이런 정세 하에서 총독부 당국은 조선인의 일부 계층이나마 경마와 승마에 몰두해 주기를 바랐다. 따라서 경마는 선무공작(宣撫工作)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었으며, 이것이 초기에 경마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그리고 마정(馬政)과도 별 관계가 없는 오락과 체육행사로 전국에서 개최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경마가 동서양 어디에서나 점령지역에 대한 선무활동(宣撫活動)에 이용된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식민지 초기 한국에서의 경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조선인 특히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반감은 경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주로 일본인들로 구성된 경마운영단체를 침략의 전위기관(前衛機關)의 하나로 바라보면서 저항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경마는 쉽게 동화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경마가 일본 고유의 풍물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도 승마나 경마가 일제의 군(軍)과 관(官)의 지원을 받고 있는 데서 더욱 경계와 저항을 느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에서 경마가 서서히 성장하고 있을 무렵, 서울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승마구락부나 경마구락부에 접근하는 사람은 대부분 친일파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었다. 신문이나 잡지도 “일인(日人)들의 단체인 경마구락부”라고 설명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경마장 관람대에는 항상 조선총독부의 고관(高官), 조선군의 지휘관이나 일본인 유지(有志)들이 희희낙락(喜喜樂樂)하는 모습도 더욱 저항심을 갖고 바라보게 했던 원인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22년 서울에는 경성승마구락부에 맞서 순수 조선인들의 승마모임인 한성승마구락부가 발족하였으나 제정난으로 얼마 가지 못하고 와해되어 버렸다.

일반 서민들도 경마나 승마에 대하여 그다지 친밀감을 가질 수가 없었다. 특히 합방이후 오랫동안 헌병경찰제도(憲兵警察制度)가 실시되면서 전국에는 도처에 일본헌병대가 주둔하고 삼일운동 때도 그랬듯이 대소사건(大小事件)에 출동하는 것이 무장기마헌병(武裝騎馬憲兵)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굽소리는 조선의 서민들에게는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¹⁰⁴⁾

104) 한국마사회, 1984: 77쪽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었는지 초기 한강시대의 경마에는 조선인 관람자가 적었다. 주최측은 입장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입장권의 가격을 더욱 세분하여 한 때는 20전자리까지도 있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서울의 경마가 신설동경마장에 고정되면서부터 조선인 참여자는 부쩍 늘어갔으나 지식인들의 저항감은 여전히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일제에 의해 도입된 경마는 참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분히 이중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근대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경마의 베팅 특성에서 오는 기대감과 함께 달리는 말의 스피드감에서 오는 쾌감을 잊지 못해 다시 찾게 되는 경마장이었지만, 반면에 조선총독부의 주도하에 주로 일본인들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도박적 특성을 지닌 ‘놀이’에 빠져 들고 있다는 자의식 등으로 인해 불편한 심기를 지니게 된다. 경마에 대한 이 같은 이중성은 일면 식민지성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성에 대한 경험이었다. 식민지경마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을 우리는 이른바 ‘식민지적 근대성’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체제에서 우리가 겪은 경마는 한 마디로 우리 내부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었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강요된 현상이었다. 아울러 경마운영조직체 역시 일본인들 주도로 운영되었고, 그 후 조선총독부의 군사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관변단체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때문에 대중적 지지기반을 구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 저항의식은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구조화 된 것이다. 이는 내면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사람들 의식의 흐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아직까지도 경마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는 부정적 인식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¹⁰⁵⁾은 정부 당국의 정책부재와 제도의 미비 그리고 해방의 축제 분위기에 편승한 무규범적 상황에서 비롯된 면이 크지만, 식민지경마에서 제도화된 습관과 경험도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05) 해방 직후 정국의 혼란 속에서 경마장내에서는 부정적 결탁이 만연됐고 경찰이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폭력이 난무했으며, 마주는 폭력배와 결탁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생명마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언제나 경마장 한쪽에는 폭력배들이 상주하며 서로 헤게모니쟁탈전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경마의 이러한 흐름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일간스포츠』 1976년 10월 3일).

VI. 맺음말

일제 식민지체제에서의 경마정책은 군국적 필요성과 사회의 분위기에 따른 정치적 고려에서 결정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정책의 내부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요인의 역할은 표현되지 못했거나 파악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의 경마정책이 관련 분야에 끼친 영향력은 컸으며, 한국경마의 성격 형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 결과 사회적인 파급효과도 상당 부분이 있어 왔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제 시기의 경마와 경마정책은 우리에게 근대화의 개념으로는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든다.

즉 일제의 군사지배체제하에 이루어진 근대화란 사회구조의 근대적 변화를 애초에 봉쇄하는 자기 부정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우리의 현대사가 증명하듯이 군사지배체제는 근대적 시민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자 부정이다. 식민지 지배는 그 자체가 자결권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근대화의 이념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근대성을 부정하는 군사지배체제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근대화/근대성에 대한 이중의 부정이다.¹⁰⁶⁾

더욱이 식민지 군사지배에서 제도화가 이루어진 경마는 자체가 지니고 있는 수익적 속성 때문에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고 사회적 성격이 변한다 하더라도 역사를 통해 그 통제적 특성과 제도화가 지속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경마를 효과적인 세수(稅收)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 권력의 정책 특성은 국내에 경마가 도입되었던 시기의 조선총독부나, 해방 후 반세기가 지난 현재의 '국민의 정부'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더불어 경마와 같은 도박적 특성을 지닌 '놀이'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반응 특성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경마는 과거부터 정책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제도화될 수 있었고 재생산되는 원리로써 현실 사회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경마는 식민지정책에서 비롯된 제도와 이를 기초로 재생산된 과정에서 발생된 갈등에 직면해서 언제라도 파동에 휩쓸릴 수 있는 표류(漂流)적인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식민지체제에서 왜곡된 물적 토대

106) 홍성태, 1997, "식민지체제와 일상의 군사화", 김진균, 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규율권력』, 문학과학사, 382-384쪽

의 취약성 때문에 현대의 산업사회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며, 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관적인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대와 세계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과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설계해 가는 구체적인 의지를 경마를 관할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서 가지는 일일 것이다. 해마다 막대한 세수(稅收)를 잉태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로서가 아니라, 연간 천만 명에 이르는 경마 참여인구를 위한 정책의 방향과 목적이 이제는 좀 더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¹⁰⁷⁾

결국 새로운 ‘역사인식’¹⁰⁸⁾에 입각한 당국의 정책적 고민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 한국경마는 그 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일제의 잔재가 누적되고 심화된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식민지적 근대성’의 전형적인 틀로 제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정부가 깊어져야 할 ‘식민지적 근대화의 유산’이 될 것이다.

아쉬운 점은 본 논문의 범위상 해방 이후 격동의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정부와 마사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숱한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한 점이다. 즉 해방후 귀속적산에 대한 논쟁과 진행과정, 관할권과 감독권을 놓고 펼치는 갈등의 심화, 특히 농림부와 국방부의 신경전, 농림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마사회의 경영진이 교체되었던 현실은 해방후 한국경마의 성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압박은 운영조직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경마와 경마정책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더욱 중요한 부분이며, 앞으로 보다 현실적인 의미의 연구가 기대된다.

107) 예컨대 일제 식민지시기에 그들의 군국적 목적으로 형성된 고율(高率)의 마권세를 비롯한 경마관련 부과세의 세율을 일반적인 외국경마의 수준으로 조정한다면, 개인간의 거래 행위와 같은 부정경마는 줄어들게 될 것이며 세금 포탈의 한 방법이 되었던 부정경마의 일정분은 제도권으로 포함될 것이다. 자연히 매출의 증가는 세수의 감소분을 보전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경마의 이미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경마관련 부과세와 관련해서는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방향』(한국조세정책연구원, 1996, 일지사)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확인할 수 있다.

108) ‘역사성’이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인간이 감행하는 의식적 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은 의식하며 행동하고자 할 뿐 아니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특정 상황을 의식하고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창조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박영신, 1984: 12).

도움받은 글들

경마관련 자료

1. 저 서

- 김문영, 1994, 『알기 쉬운 경마여행』, 을도서적.
- 동서조사연구소, 1993, 『한국마사회 및 경마인식 등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한국마사회.
- 한국개발조사연구소, 1997, 『97 경마고객 성향조사보고서』, 한국마사회.
- 韓國企業研究院, 1988, 『馬券 稅制의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기획실, 1989, 『競馬用語集』,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 1984, 『韓國競馬 六十年史』.
- , 1990, 『2000년대를 향한 마사회 발전과제』.
- , 1991a, 『우리 競馬의 現實照明과 向後方案』.
- , 1991b, 『일본중앙경마의 모든것』.
- , 1993a, 『公正競馬 具現과 經營刷新을 爲한 當面課題 綜合』.
- , 1993b, 『韓國競馬 半世紀史』.
- , 1994, 『말의 혈통·등록에 관한 국내외규정』.
- , 1995a, 『일본중앙경마회 개요』.
- , 1995b, 『승마투표업무 이론과 실무』.
- , 1995c, 『승마투표 소개 및 발전방향』.
- , 1998, 『말의 관찰』.
- 韓國産業經濟研究院, 1993, 『2000년대를 향한 한국마사회 경마발전전략수립』.
- 韓國産業開發研究院, 1986, 『競馬産業의 段階別 發展計劃 樹立 및 馬事會機能·組織의 改編方案 研究』.
- 韓國産業研究院, 1991, 『馬事會 收益金の 社會還元을 위한 財團法人 設立方案』.
- 한국조세연구원, 1996, 『競馬産業 發展을 위한 租稅政策方向』, 一志社
- 日本競馬會, 1942, 『騎手教本』, 恒陽社, 東京.
- 日本中央競馬會, 1966, 『日本競馬史』.

2. 법령·법규·문서

- 朝鮮競馬俱樂部, [社團法人 朝鮮競馬俱樂部 定款].
朝鮮競馬協會, [社團法人 朝鮮競馬協會 定款].
朝鮮農會, 1937, 『朝鮮畜産關係法規』, 鮮光印刷株式會社. 京城
朝鮮馬事會, 1942, [朝鮮馬事會 競馬規則](昭和17年 2月17日 公布).
朝鮮馬事會, 1942, [朝鮮馬事會 定款](昭和年 3月1日 制定).
朝鮮總督府, 1932, [朝鮮競馬令](昭和年 10月 7日 公布 制令第3號, 1942年 2月 14日 廢止).
朝鮮總督府, 1932, [朝鮮競馬令 施行規則](昭和7年 12月 29日 公布 府令第129號).
朝鮮總督府, 1942, [朝鮮馬事會令](昭和17年 2月 14日 公布 制令第1號, 1962年 1月 20日 廢止).
朝鮮總督府, 1942, [朝鮮馬事會 競馬規則](昭和17年 2月 17日 公布).
朝鮮總督府, 1942, [朝鮮馬券稅令](昭和17年 2月 28日 公布 制令第2號, 1950年 2月 9日 廢止).
韓國馬事會, [韓國馬事會法] (법률 제1012호, 1962. 1. 20. 제정).
-----, [韓國馬事會法 施行令] (각령 제580호, 1962. 3. 27. 제정).
-----, [韓國馬事會法 施行規則] (文化體育部令 제 19호, 1995. 1.13 제정).
-----, [競馬施行規定] (韓國馬事會 規約, 1962. 8. 6. 제정).
-----, [乘馬投票 約款] (1994. 11. 1. 제정).

3. 논문·잡지·신문

- 21세기 문화사, 『馬事春秋』, 1997년 12월호
한국마사회, 『굽소리』, 1985년 1월호 ~ 1998년 3월호.
玄健赫, 1976, “한국경마반세기 1-32”, 『일간스포츠』 1976년 8월 18일~1976년 10월 20일.

- 岡田勝男, 1938, 「馬匹改良の要諦」『馬の世界』, 제18권 5호(昭和13年5月號), 馬之世界社.
- 近江小太郎, 1943, 「軍馬祭に方りて」『朝鮮獸醫學會報』 朝鮮獸醫學會.
農商局農務課, 1943, 「昭和18年對前年競馬成績比較」『朝鮮獸醫學會報』, 朝鮮獸醫學會.
- 大島又彦, 1943, 「愛馬心」『日本馬事會雜誌』 2권2호(昭和18年3月號)日本馬事會.
馬政局, 1944, 「競馬開催停止に關して」『日本馬事會雜誌』 제3권 제1호 (昭火19年1月號), 日本馬事會.
- 梅津廣吉, 1943, 「大陸戰と馬匹問題」『日本馬事會雜誌』 제2권 7호(昭和18年 7月號) 日本馬事會.
- 麓蛙野人, 1938, 「共進會の講評は當らず」『馬の世界』 제18권 5호 (昭和13年 5月號).
- 小谷一雄, 1944, 「軍用適格馬の概念に關する私見(下)」『日本馬事會雜誌』 제3권 1호 (昭和19年1月號) 日本馬事會.
- 井瀬清助, 1943, 「馬より見たる内鮮一體」『日本馬事會雜誌』 제2권 4호 (昭和18年 4월號) 日本馬事會.
- 帝國馬匹協會, 1938, 「内地馬政計劃案を讀みて」『馬の世界』 제18권 제10호 (昭和13年 10月號) 馬之世界社.
- 齊藤義次, 1942, 「大東亞戰爭よ馬」『日本馬事會雜誌』 제1권7호(昭和17年 11月號) 日本馬事會.
- 村上龍太郎, 1938, 「戰時體制下の馬政」『馬の世界』 제18권 제1호 (昭和13年 1月號) 馬之世界社.
- 坂田新, 1938 「戰時軍馬補充の 現在及將來」『馬の世界』 제18권 제3호 (昭和13年2月號) 馬之世界社.

일반 자료

1. 저서

- 姜東鎭, 1988, 『日本近代史』, 한길사.
- 姜萬吉, 1985, 『韓國近代史』, 창작과비평사.
- , 1987, 『일제하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사.
- 강재언, 1990, 『한국근대사』, 한울.
- 고영복, 1991, 『사회정책론』, 사회문화연구소.
- 공제욱外, 1991, 『사회계급론』, 한길사.
- 김석준, 1996,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金潤煥外, 1981, 『韓國經濟의 展開過程』, 들베개.
- 김인수, 1989, 『민족사의 재발견: 민족사의 주체적 인식을 위하여』, 힘.
- 김진균外, 1992, 『한국사회론』, 한울.
- 김진균·정근식, 1997, 『근대주체와 식민지규율권력』, 문화과학사.
- 김창순外, 1981, 『日帝下 植民地 時代의 民族運動』, 풀빛.
- 손정목, 1996,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연구』, 일지사.
- 宋建鎬外, 1988, 『解放前後史의 認識』, 한길사.
- 신용하, 1980, 『한국근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지성사.
- 李佑成·姜萬吉編, 1985, 『韓國의 歷史認識』, 創作과 批評社.
- 李離和外, 1984, 『民族·統一·解放의 論理』, 形成社.
- 日本研究室, 1976, 『韓日關係資料集』,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 鈴木敬夫, 民族文化研究所編, 1989, 『法을 통한 朝鮮植民地 支配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玄外成, 1993, 『비교사회정책연구』, 聖恩出版社.

2. 논문

- 김동노, 1998, 「식민지시대의 근대적 수탈과 수탈을 통한 근대화」 『창작과비평』 99호(1998년 봄호)
- 김영진, 1983, 「현대의 사회윤리」, 한국인문사회과학원, 『현상과 인식』 제7권1호 (1983년 봄호).
- 金容郁, 1983, 「改革思想과 政治體制」, 現代社會研究所편, 『現代社會』 (1983년 봄호).
- 南興祐, 1969, 「日帝의 韓國侵略에 있어서 法規範과 그 適用에 關한 研究」, 亞細亞問題研究所, 『亞細亞研究』 제12권 제1호.
- 박영신, 1985, 「사회학 연구의 사회학적 역사」 『현상과 인식』 제9권 1호 (1985년 봄호).
- 朴玄埰, 1981, 「自立經濟의 實現을 위한 摸索」 『韓國經濟의 展開過程』, 돌베개.
- 신용하, 1997, 「‘식민지근대화론’ 제정립 시도에 대한 비판」 『창작과비평』 98호 (1997년 겨울호)
- 안병직, 1981, 「식민지경제의 성격과 분단의 경제적 의의」 『韓國經濟의 展開過程』, 돌베개.
- 유재건, 1997, 「식민지·근대와 세계사적 시야의 모색」 『창작과비평』 98호(1997년 겨울호)
- 이종민, 1998, 「식민지하 근대감옥을 통한 통제 메커니즘 연구-일본의 형사처벌 체계와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훈, 1886, 「大正日本の 經濟」, 아세아문제연구소, 『亞細亞研究』 제29권 제2호.
- , 1989, 「昭和日本の 經濟」, 아세아문제연구소, 『亞細亞研究』 제32권 제1호.
- 이형철, 1989, 「昭和前期에 있어서 軍部の 政治支配」, 아세아문제연구소, 『亞細亞研究』 제32권 제1호.
- 장달중, 1989, 「帝國主義 戰爭과 外交政策: -昭和初期(1925~45)의 일본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제32권 제1호.

- _____, 1986, 「國內政治와 外交政策: -大正外交政策의 形成에 관한 研究-」, 아
세아문제연구소, 『亞細亞研究』 제29권 제2호.
- 全哲煥, 1983, 「4월혁명의 社會經濟的 背景」 『4월혁명론』, 한길사.
- 정해구, 1991,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변동」 『한국사회론』, 한울.
- 진덕규, 1978, 「일제초기 친일관료 엘리트의 형성과 성격분석」 『현상과 인식』
제2권 1호(봄호)



<부록>

= 일제하 경마관련 법규 및 규칙* =

朝鮮競馬令 (1932.10.7 公布·制令 第3號, 1942.2.14 廢止)

- 第 1條 馬匹의 改良增殖 및 馬事思想의 普及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하는 朝鮮民事令에 따른 民法 第34條의 法人으로서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은 法人은 本令에 依한 競馬를 施行할 수 있다.
- 第 2條 競馬의 開催는 年 2회를 超過할 수 없다. 但 朝鮮總督의 許可를 받았을 때 年 3回 開催할 수 있다.
競馬 開催期間은 每回 8日 以內로 한다.
- 第 3條 競馬 開催時는 入場者로부터 入場料를 徵收하여야 한다. 但 朝鮮總督의 許可를 받아 無料入場者로 定한 者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 第 4條 第1條의 法人은 入場者에 對하여 券面金額 2圓 以上 20圓 以下의 勝馬投票券을 券面金額으로 發賣할 수 있다.
勝馬投票券의 發賣는 競馬 1競走當 1枚에 限하며 單勝式勝馬投票券 및 複勝式勝馬投票券을 發賣할 境遇에는 競馬 1競走當 1人 各 1枚에 限한다.
勝馬投票券은 이를 讓渡할 수 없다.
- 第 5條 學生 生徒 또는 未成年者에 對하여는 勝馬投票券을 發賣할 수 없다.
當該 競馬를 開催하는 第1條의 法人의 役員 또는 當該 競馬에 關한 開催執務委員, 調教師, 騎手, 馬丁 其他 競馬事務從事者도 또한 前項과 같다.
- 第 6條 第1條의 法人은 勝馬投票 的中者에 對하여 朝鮮總督이 定하는 바에 따라 當該 競走의 勝馬投票券의 賣得金額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拂戻金を 交付하는 것으로 한다. 但 그 金額은 勝馬投票券의 券面金額의 10倍를 超過할 수 없다.
勝馬投票 的中者가 없을 境遇의 賣得金 또는 前項 但書 規定에 따른 超過金은 朝鮮總督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勝馬投票券의 購買者에게 拂戻하여야 한다.
第2項의 拂戻金의 請求는 1年間 이를 하지 아니 할 때는 時效에 依하여 消滅한다.
- 第 7條 入場料의 金額, 勝馬投票券의 券面金額 및 發賣方法과 前條의 拂戻金의 支給方法에 對하여는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第 8條 勝馬投票券을 發賣하였을 때는 朝鮮總督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賣得金額의 100分之 5 以內에 相當하는 金額을 政府에 納付하여야 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한 納付金은 國稅 滯納處分の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但 先取特權의 順位는 國稅 다음으로 한다.

*) 본 자료는 『한국경마60년사』에 실린 ‘폐지법규 및 정관’(한국마사회, 1984: 737-750쪽)을 참고하였다.

- 第 9條 競馬場의 開設 또는 維持, 競馬場의 出馬登錄 또는 出場, 競馬의 觀覽, 勝馬投票券의 發賣 또는 購買, 拂戾金 또는 勝馬賞金의 交付 受領 其他 競馬의 施行 또는 開催에 關하여는 地方稅를 賦課할 수 없다.
- 第10條 朝鮮總督은 第1條의 法人에 對하여 馬匹의 改良 增殖 및 馬事思想의 普及을 爲하여 必要한 施設을 命할 수 있다.
- 第11條 第1條의 法人은 豫算을 定하여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1條의 法人은 每事業年度 終了後 3月以內에 朝鮮總督에게 決算報告를 하여야 한다.
- 第12條 第1條의 法人의 理事 및 監事의 就任은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한다.
- 第13條 朝鮮總督은 公益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때는 第1條의 法人의 定款 其他 規則의 改正을 命하거나 또는 그 總會의 決議를 取消할 수 있다.
- 第14條 朝鮮總督은 第1條의 法人 또는 그 役員의 行爲가 法令이나 이에 依한 處分에 違反하였을 때 또는 公益을 害하는 것으로 認定되는 때는 다음 處分을 할 수 있다.
1. 競馬의 停止
 2. 勝馬投票券 發賣停止 또는 制限
 3. 役員의 解任
- 第15條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圓 以下의 罰金에 處하거나 그 刑을 並科한다.
1. 第1條의 法人이 아니면서 勝馬投票券을 發賣한 者
 2. 前條 第2號의 停止 또는 制限에 違反하여 勝馬投票券을 發賣한 者
 3. 第1條의 法人이 開催하는 競馬의 競走에 關하여 業으로서 多數人을 相對로 財物로 賭事行爲를 하는 者
- 第16條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千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 第1項,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制限에 違反하여 勝馬投票券을 發賣한 者
 2. 第5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5條 第2項에 揭示한 者로서 勝馬投票券을 購買한 者
 4. 第6條의 規定에 依한 制限에 違反하여 拂戾金を 交付한 者
 5. 第7條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받지 아니한 券面金額의 勝馬投票券을 發賣한 者
 6. 前條 各號에 規定한 行爲의 相對方
- 第17條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者는 2百圓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1. 第4條 第1項,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制限에 違反하여 勝馬投票券을 購買한 者
 2. 第5條 第1項에 揭示한 者로서 勝馬投票券을 購買한 者
 3. 勝馬投票券의 讓渡 및 讓受者
 4. 第6條의 規定에 依한 制限에 違反한 拂戾金의 交付를 받은 者

附 則

本令 施行期日은 朝鮮總督이 定한다. <1993. 1. 1 施行>

朝鮮競馬令 施行規則 (1932.12.29 公布·府令 第129號)

- 第 1條 本令에서 競馬會라 함은 朝鮮競馬令(以下 競馬令) 第1條의 規定에 依하여 競馬施行의 認可를 받은 法人을 말한다.
- 第 2條 競馬令 第1條의 規定에 依한 認可申請書에는 定款外에 다음 事項을 記載한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1. 競馬場의 位置
 2. 競馬場 및 그 附近 略圖
 3. 馬場, 馬見所, 下見所, 檢量所, 入場券發賣所, 勝馬投票券發賣所, 拂戾金 交付所, 馬舍 其他 工作物의 位置, 構造, 設備 및 圖面
 4. 競馬場 設備에 所要되는 費用의 見積額 및 그 支辨方法
 5. 競走의 種類
 6. 入場料의 金額
 7. 無料入場者의 範圍
 8. 入場者의 徽章에 關한 事項
 9. 勝馬投票法의 種類
 10. 勝馬投票券의 券面金額, 樣式 및 發賣에 關한 事項
 11. 第20條의 規定에 依하여 競馬會가 定하는 賣得率
 12. 競馬令 第6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拂戾金의 支給方法
- 前項 第9號의 勝馬投票法의 種類에는 單勝式勝馬投票法 및 複勝式勝馬投票 法의 區別을 記載하여야 한다.
- 第1項 第10號의 勝馬投票券의 發賣에 關한 事項에는 競馬令 第4條 第2項 및 第3項에 規定한 事項의 取締에 關한 方法을 詳記하여야 한다.
- 競馬令 第1號의 規定에 依한 認可가 있는 때에는 競馬令 第3條 但書 및 第 7條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받은 것으로 看做한다.
- 第1項 第1號 및 第3號 乃至 第12號의 事項을 變更하려 할 때는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朝鮮總督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第1項 第1號, 第3號 乃至 第12號에 揭 示한 事項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 第 3條 馬場은 長 1,600m 以上 幅 30m 以上이어야 한다.
- 第 4條 勝馬投票券發賣所 및 拂戾金交付所는 競馬場內에 이를 設置하며 競馬令 第 4條 第2項 및 第3項에 規定한 事項의 取締에 必要한 設備을 하여야 한다.
- 第 5條 競走의 種類는 驅步競走, 速步競走 및 障礙競走로 한다.
- 第 6條 競走의 距離는 驅步競走到에 있어서는 1,600m 以上, 速步競走到에 있어서는 3,200m 以上, 障礙競走到에 있어서는 2,000m 以上으로 한다. 但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았을 때는 例外로 한다.
- 第 7條 3歲 以下の 馬 및 馬匹 改良 增殖에 裨益없는 馬는 이를 競走到에 使用할 수 없다.
- 第 8條 競馬會는 朝鮮產馬만으로 編成하는 競走到에 對하여는 賞을 厚하게 하여야

한다.

第 9條 競馬會는 다음 揭示하는 事項에 對하여 競馬施行規程을 定하여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러 할 때도 또한 같다.

1. 番組編成에 關한 事項
2. 開催執務委員의 執務에 關한 事項
3. 競走馬에 關한 事項
4. 負擔重量에 關한 事項
5. 競走 및 審判에 關한 事項
6. 馬主 및 騎手에 關한 事項
7. 登錄料에 關한 事項
8. 場內 取締에 關한 事項

第10條 競馬를 開催하러 할 때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 認可申請書를 出馬 登錄마감 일의 2月前까지 朝鮮總督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開催日時
2. 番組의 要項
3. 開催執務委員

前項 第2號의 番組의 要項에는 各 競走의 番號, 種類, 名稱, 距離, 賞金額, 賞品の 種類 및 負擔重量의 條件을 記載하여야 한다.

競馬令 第2條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競馬를 開催하러 할 때는 그 事由를 記載한 許可申請書 및 第1項의 認可申請書를 出馬登錄 마감 期日の 1月前까지 朝鮮總督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11條 朝鮮總督이 前條 第1項의 認可時에 別途 意思表示가 없는 때에는 그 競馬에서 7歲 以下の 朝鮮産 新馬 30頭 以上の 出馬登錄馬數를 確保하여야 한다는 條件을 붙인 것으로 한다. 但 競馬令 第2條 但書의 規定에 依한 競馬 開催時에는 例外로 한다.

第12條 競馬會는 다음 揭示者에게 미리 朝鮮總督에게 届出한 各 徽章을 交付하여 競馬場內에서 항상 附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有料入場者
2. 無料入場者
3. 競馬令 第5條 第1項에 揭示한 者
4. 競馬令 第5條 第2項에 揭示한 者
5. 勝馬投票券發賣所 및 拂戻金交付所의 從事員

第13條 勝馬投票券의 發賣 및 拂戻金の 交付는 競馬會 自體에서 하여야 한다.

競馬會는 勝馬投票券의 發賣 및 拂戻金 交付業務에 從事하는 者의 姓名을 미리 朝鮮總督에게 届出하여야 한다.

第14條 勝馬投票券의 發賣는 當該 競走에 參加하는 競走馬가 確定된 後 이를 開始 하며 競走馬가 競走出發點을 出發하기 前 이를 마감하여야 한다.

第15條 勝馬投票券 發賣後 當該 競走에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 하였을 때는 그 投票를 無效로 하며 競馬會는 券面金額으로 勝馬投票券의 買戻에 應하여야 한다.

發賣한 勝馬投票券에 表示된 競走馬가 出場하지 아니 하였을 때 그 競走馬

에 對한 勝馬投票券에 對하여도 또한 같다.

1. 出場馬가 1頭 뿐일 때
2. 競走가 成立되지 아니 하였을 때
3. 競走到 勝馬가 없을 때

第16條 競馬會는 各 競走의 勝馬投票券 發賣를 마감하였을 때는 遲滯없이 各 馬에 對한 勝馬投票券의 總券面金額(勝式別)을 揭示하여야 한다.

第17條 單勝式勝馬投票法에 있어서는 第1着馬를 勝馬로 하며 複勝式勝馬投票法에 있어서는 第1着, 第2着 및 第3着馬(勝馬投票券 發賣開始時 競走參加馬 7頭 以下 5頭 以上일 때는 第1着 및 第2着馬, 4頭 以上일 때는 第1着馬)를 勝馬로 한다.

第1着, 第2着 및 第3着馬를 勝馬로 할 境遇에 第1着 또는 第2着馬가 2頭일 때는 次着順 以下馬는 1着順(2頭를 超過할 때는 超過하는 頭數 1頭마다 다시 1着順)씩 내린 着順으로 한다. 第1着 및 第2着馬를 勝馬로 할 경우 第1着馬가 2頭 以上일 때 또한 같다.

第18條 單勝式勝馬投票法 및 複勝式勝馬投票法을 竝用하는 競馬會는 勝馬投票券 發賣 開始 時는 競走參加馬가 4頭 以下이면 그 競走는 複勝式勝馬投票券을 發賣하지 못한다.

第19條 競馬令 第8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政府에 納付하여야 할 金額은 當該 季競馬에서의 勝馬投票券 賣得金額의 100분의 5로 한다. 但 競馬令 第2條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開催하는 競馬에 對하여는 그때마다 이를 定한다.

第20條 競馬會는 勝馬投票券의 賣得金額에 對하여 一定率의 金額을 賣得手數料로서 收入할 수 있다. 但 政府 納付金額과 賣得手數料의 合計는 賣得金額의 100분의 20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21條 勝馬確定時에는 當該 競走의 勝馬投票券의 賣得金(勝式別)에 對하여 附錄에 定한 算式에 따라 各 勝馬에 對한 勝馬投票券의 拂戻金 總額을 算出하여 이를 當該 勝馬에 對한 各 勝馬投票券의 券面金額에 按分한 것을 勝馬投票 的中者에게 勝馬投票券 引換으로 交付하여야 한다. 但 그 金額은 勝馬投票券의 券面金額의 10倍를 超過할 수 없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拂戻金を 算出할 때 勝馬投票 的中者가 없이 勝馬만 있을 境遇는 이를 勝馬가 아닌 것으로 看做한다.

第22條 競馬令 第6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拂戻하여야 할 賣得金 또는 超過金이 있을 境遇 賣得金은 그 金額에서 政府에 納付하여야 할 金額과 賣得手數料를 控除한 殘額을 勝馬投票券 購買者에게, 超過金은 勝馬 以外の 投票者에게 그 勝馬投票券의 券面金額에 따라 勝馬投票券과 引換 交付한다.

第23條 勝馬投票券의 拂戻金を 交付하는 境遇 交付上의 基礎金額인 5圓 以上일 때는 50錢 未滿, 5圓 未滿일 때는 10錢 未滿의 端數를 切捨하고 拂戻金を 交付할 수 있다. 但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拂戻金を 交付하는 경우에는 交付上의 基礎인 5圓 미만이라 하더라도 50錢 미만의 端數를 切捨하고 이를 交付할 수 있다.

第24條 競馬會는 勝馬投票券의 受拂 및 勝馬投票券의 發賣金의 出納을 明確히 하기 위하여 必要한 帳簿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第25條 競馬會는 競馬終了後 15日 이내에 다음 事項을 朝鮮總督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1. 出馬登錄馬數 및 入場馬數
2. 出場馬의 名稱, 新古別, 種類, 性, 毛色, 年齡, 體高, 胸圍, 管圍, 特徵, 產地, 血統 및 所有者
3. 各 競走의 受賞馬의 名稱, 着順, 競走距離, 速度, 負擔重量, 騎手 및 生産者
4. 第12條 第1號 乃至 第3號 揭示者別 및 그 等級別 入場者 人員數와 入場料金額
5. 各 競走의 勝馬投票券의 發賣金額 및 枚數, 第15條의 規定에 依하여 換拂하여야 할 金額, 收得金額과 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에 依하여 交付하여야 할 還拂金의 總額
6. 競馬場內 諸般 狀況
7. 競馬開催에 關한 收支 計算

前項 第5號에 揭示한 事項은 單勝式勝馬投票法 및 複勝式勝馬投票法을 並用하는 競馬會는 勝式別로 이를 記載하여야 한다.

第26條 本令에서 賣得金額이라 함은 勝馬投票券의 發賣金額에서 第15條의 規定에 依하여 買戻에 應하여야 할 金額을 控除한 것을 말한다.

第27條 競馬會는 그 事業年度 開始 1月前에 豫算의 認可를 朝鮮總督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競馬會 豫算을 變更하려 할 때는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28條 競馬會는 會計에 關한 規定을 定하여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려 할 때도 같다.

第29條 競馬令 第12條의 規定에 依한 理事 및 監事의 就任認可申請書에는 그 履歷書 및 選任 決議를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附 則

本令은 朝鮮競馬令 施行日부터 이를 施行한다.

馬場의 길이와 넓이에 關하여는 當分間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 第3條의 規定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複勝式勝馬投票法에 依할 경우의 勝馬의 數를 決定하는 競走 參加馬의 頭數에 對하여는 當分間 조선총독의 認可를 받아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지 않을 수 있다.

朝鮮總督이 指定하는 競馬會에 있어서는 第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當分間 蒙古馬를 競走에 出走시킬 수 있다.

朝鮮馬事會令 (1942.2.14 公布. 制令 第1號, 1962.1.20 廢止)

- 第 1條 朝鮮馬事會는 朝鮮에 있어서의 馬事의 振興을 圖謀하고 國防 및 産業上 必要한 馬資源의 充實 確保를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 2條 朝鮮馬事會는 法人으로 한다.
- 第 3條 朝鮮馬事會는 그 主된 事務所를 京城府에 둔다.
- 第 4條 朝鮮馬事會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 한다.
1. 馬匹移植에 關한 施設
 2. 馬匹改良, 生産, 育成 및 利用의 指導 獎勵에 關한 施設
 3. 馬匹衛生에 關한 施設
 4. 競馬의 施行
 5. 馬事に 關한 調查研究
- 第 5條 朝鮮馬事會는 定款으로 다음 事項을 規定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의 所在地
 4. 前 各號에 揭示하는 것 外에 朝鮮馬事會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必要한 事業
 5. 役員에 關한 事項
 6. 事業 및 그 執行에 關한 事項
 7. 資産 및 會計에 關한 事項
 8. 定款 變更의 方法
- 第 6條 朝鮮馬事會는 成立한 날로부터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2週間 以內에, 從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3 週間 以內에 다음 事項이 登記를 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
 4. 成立 年 月 日
 5. 資産의 總額
 6. 會長, 副會長, 理事 및 監事의 姓名 住所
- 前項에 揭示한 事項中 變更이 있을 때는 主事務所 所在地에서는 2週間 以內에, 從事務所 所在地에서는 3週間 以內에 登記를 하여야 한다. 但 前項 第5號에 揭示한 事項에 對하여는 每 會計年度 末日 現在로 會計年度 終了後 1月 以內에 登記할 수 있다.
- 前項 規程에 依하여 登記하여야 할 事項은 登記를 하지 않고는 第三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 本會에 依하여 登記한 事項은 法院이 遲滯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第 7條 朝鮮馬事會에 다음 役員을 둔다.
- 會 長 1人
副會長 1人
理 事 6人 以內
監 事 2人 以內
評議員 若干名

- 第 8條 會長은 朝鮮馬事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理한다.
副會長은 會長 有故時 그 職務를 代理하며 會長 缺員時에는 그 職務를 遂行한다.
副會長 및 理事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長을 補佐하며 朝鮮馬事會의 業務를 掌理한다.
監事는 朝鮮馬事會의 業務를 監査한다.
- 第 9條 會長, 副會長, 理事 및 監事는 朝鮮總督이 任命한다.
會長, 副會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 第10條 會長, 副會長 및 理事는 他職業에 從事할 수 없다. 但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았을 때는 例外로 한다.
- 第11條 評議員은 朝鮮總督이 任命한다.
評議員은 事業經營에 關한 重要한 事項에 對하여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評議員은 名譽職으로 하며 그 任期는 2年으로 한다.
- 第12條 朝鮮馬事會가 會長, 副會長 또는 理事와 契約을 締結할 境遇에는 監事가 朝鮮馬事를 代表한다. 朝鮮馬事會와 會長, 副會長 또는 理事와의 訴訟에 對하여도 또한 같다.
- 第13條 朝鮮馬事會는 朝鮮總督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資金을 管理하여야 한다.
- 第14條 朝鮮馬事會는 朝鮮總督이 이를 監督한다.
- 第15條 朝鮮馬事會는 每 事業年度의 事業計劃을 定하여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려 할 때도 또한 같다.
- 第16條 朝鮮馬事會는 다음 事項에 對하여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1. 定款의 變更
2. 收支豫算 및 그 變更
3. 借入金 但 그 年度內의 收入으로 償還하여야 하는 一時 借入금은 除外한다.
4. 不動産의 取得 또는 處分
- 第17條 朝鮮總督은 朝鮮馬事會에 對하여 定款 또는 收支豫算의 變更을 命하여 其他 監督上 必要한 命令을 내리거나 處分을 할 수 있다.
- 第18條 朝鮮總督은 朝鮮馬事會에 對하여 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施設을 命할 수 있다.
- 第19條 朝鮮馬事會는 朝鮮總督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業務에 關한 諸般計算 및 狀況報告書 을 朝鮮總督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 第20條 朝鮮總督은 朝鮮馬事會 監理官을 두고 朝鮮馬事會 業務를 監視하게 한다.
朝鮮馬事會監理官은 何時라도 朝鮮馬事會의 業務 및 財産狀況을 檢査할 수 있다.
朝鮮馬事會監理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何時라도 朝鮮馬事會에 命하여 業務 및 財産狀況을 報告하게 할 수 있다.
朝鮮馬事會監理官은 朝鮮馬事會의 諸般會議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 第21條 朝鮮總督은 朝鮮馬事會 또는 그 役員의 行爲가 法令, 이에 依한 處分 或은 定款에 違 反되거나 公益을 害치거나 害칠 우려가 있다고 認定될 때는 役

員을 解任할 수 있다.

第22條 朝鮮馬事會가 아니면 朝鮮馬事會 또는 이에 類似한 名稱을 使用할 수 없다.

第23條 朝鮮馬事會에 解散이 必要한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는 그 處置에 關하여는 別述로 이를 定한다.

第24條 朝鮮民事令에 따라 定한 民法 第44條 第1項, 第45條 第2項 第3項, 第47條, 第48條, 第 50條, 第54條, 第55條 및 朝鮮民事令에 따라 定한 非訟事件手續法 第117條, 第119條 乃至 第121條, 第142條 乃至 第151條의 6 및 第154條 乃至 第157條의 規程은 朝鮮馬 事會에 이를 準用한다 但 民法 第 44條 第1項, 第54條 및 第55條와 非訟事件手續法 第 121條中 理事는 會長으로, 非訟事件手續法 第120條中 理事는 會長, 副會長, 理事 및 監事로 한다.

第25條 朝鮮馬事會가 施行하는 競馬에 關하여는 競馬法 第2條, 第3條, 第4條 第1項 第3項, 第 5條 乃至 第7條, 第8條 第1項 第3項, 第9條, 第21條, 第27條 및 第32條 乃至 第38條의 規程에 依한다. 但 同法上 日本競馬會는 朝鮮馬事會, 主務大臣은 朝鮮總督으로 하며 同法 第8條 第1項中 100분의 8은 100분의 5로, 同法 第35條 第1號 및 第36條 第1號中 第2項이라 함은 本令 第25條 第2項으로 한다. 競馬 1競走에 1人에 對하여 發賣하는 勝馬投票券 枚數가 制限에 關하여는 朝鮮總督이 이를 定한다.

第26條 朝鮮馬事會가 아니면 勝馬投票券 發行하고 投票의 中者에 對하여 金錢을 交付하는 競馬 其他 이와 類似한 競馬를 施行하지 못한다.

第27條 前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朝鮮馬事會가 아니면 競馬를 施行한 者는 3年 以下の 懲役 또는 5千圓 以下の 罰金에 處하거나 그 刑을 並科한다.

第28條 前條에 規定하는 行爲의 相對方이 된 者는 2千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29條 다음의 境遇에는 朝鮮馬事會의 會長, 副會長, 理事, 監事 또는 開催執務委員을 千圓 以下の 過料에 處한다.

1. 本令에 依하여 許可 또는 認可를 받아야 하는 境遇에 그 許可 또는 認可를 받지 않을 때
2. 本令에 依하여 登記하여야 할 境遇에 그 登記를 怠慢히 하거나 또는 不正登記를 하였을 때
3. 第13條의 規定에 違反하였을 때
4. 第17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命令 또는 處분에 違反하였을 때
5. 第19條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怠慢히 하였을 때
6. 第25條 第1項에 따른 競馬法 第27條 第4號의 規定에 依한 處분에 違反하였을 때
7. 行政官廳에 對하여 不實申告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하였을 때

第30條 朝鮮馬事會의 會長, 副會長 또는 理事가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하였을 때는 5百圓 以下の 過料에 處한다.

第31條 第22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百圓 以下の 過料에 處한다.

附 則

- 第32條 本令 施行期日은 朝鮮總督이 이를 定한다.
- 第33條 朝鮮競馬令은 이를 廢止한다.
同令 廢止前 從前의 罰則을 適用하여야 할 行爲에 對하여는 從前의 例에 따른다.
- 第34條 本令에 依하여 朝鮮馬事會가 開催하는 競馬場의 數는 當分間 9 以內로 한다.
- 第35條 朝鮮總督은 設立委員을 命하여 朝鮮馬事會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게 한다.
- 第36條 設立委員은 定款을 作成하여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朝鮮馬事會는 前項의 認可가 있을 때 成立한다.
- 第37條 從前의 朝鮮競馬令 第1條의 法人 및 社團法人 朝鮮競馬協會는 朝鮮馬事會 成立과 同時에 解散되며 그 權利 義務는 朝鮮馬事會가 이를 承繼한다. 이 境遇에 朝鮮民事令에 따른 民法中 清算에 關한 規定은 適用하지 않는다.
前項의 境遇 解散登記는 解散한 法人의 理事의 申請에 따라 登記한다.
- 第38條 朝鮮馬事會가 前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承繼한 不動産에 關한 權利의 取得에 對하여 登記를 하려 할 때는 그 登錄稅額은 不動産 價格의 1000분의 3으로 한다. 但 朝鮮登錄稅令에 依하여 算出된 稅額이 本條 規定에 依하여 算出한 稅額보다 적을 때는 그 稅額에 依한다.
- 第39條 朝鮮營業稅令 第3條 第1號中 「商業小組合」 다음에 「朝鮮馬事會」를 追加한다.
- 第40條 朝鮮登錄稅令 第7條 第7號中 「朝鮮商業組合中央會」 다음에 「朝鮮馬事會」를, 「朝鮮商業組合令」 다음에 「朝鮮馬事會令」을 追加한다.

朝鮮馬事會 競馬規則 (1942.2.17 公布)

- 第 1條 朝鮮馬事會令에 依하여 朝鮮馬事會가 施行하는 競馬에 關하여는 本 令의 定하는 바에 따른다.
- 第 2條 朝鮮馬事會는 競馬의 施行, 勝馬投票券의 發賣 및 拂戻金의 交付에 關한 規程을 定하여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려 할 때도 規程을 定하여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려 할 때도 같다.
- 第 3條 競馬施行에 關한 規程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入場者 및 入場料에 關한 事項
 2. 馬所有者, 調教師, 騎手 및 馬丁에 關한 事項
 3. 競走馬에 關한 事項
 4. 競走의 種類 및 名稱에 關한 事項
 5. 番組의 編成에 關한 事項
 6. 負擔重量에 關한 事項

7. 開催執務委員의 執務에 關한 事項
 8. 發走 및 審判에 關한 事項
 9. 勝馬의 確定, 競馬에 關한 異議의 裁定 및 馬所有者, 調教師와 騎手의 制裁에 關한 事項
 10. 場內 取締에 關한 事項
 11. 其他 必要한 事項
- 第 4條 勝馬投票券의 發賣 및 拂戻金의 交付에 關한 規程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勝馬投票法의 種類
 2. 勝馬投票券의 券面金額, 樣式 및 發賣에 關한 事項
 3. 朝鮮馬事會令 規定에 따른 競馬法 第9條의 收得金(賣得步合金)에 關한 事項
 4. 競馬法 第6條의 拂戻金의 交付方法
 5. 其他 必要한 事項
- 前項 第1號의 勝馬投票法의 種類에는 單勝式勝馬投票法 및 複勝式 勝馬投票法을 區別하여 記載하여야 한다.
- 第1項 第2號의 發賣에 關한 事項에는 第19條 및 競馬法 第4條 第3項에 規定하는 事項의 取締에 關한 方法을 記載하여야 한다.
- 第 5條 朝鮮馬事會는 各 競馬場에서의 競馬開催日數를 通算하여 年 144日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에서 競馬法 第2號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競馬를 開催할 수 있다.
- 第 6條 朝鮮馬事會가 競馬를 開催하려 할 때는 當該 競馬에 關하여 다음 事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開催執務委員을 두어야 한다.
1. 審判
 2. 發走
 3. 出馬 및 馬場의 取締
 4. 檢量
 5. 勝馬의 確定, 競馬에 關한 異議의 裁定과 馬匹所有者, 調教師 및 騎手의 制裁
 6. 負擔 均衡의 作成
 7. 場內의 取締
 8. 勝馬投票券의 發賣 및 拂戻金의 交付
- 前項의 開催執務委員의 設置는 當該 競馬 開催 1月前까지 朝鮮總督에게 申請하여 認可를 받아야 한다.
- 第 7條 朝鮮馬事會는 各季別로 各競馬場의 競馬開催日時 및 編成(番組)要領을 定하여 當該 季의 最初의 競馬開催 2月前까지 朝鮮總督에게 申請하여 認可를 받아야 한다.
- 第 8條 朝鮮馬事會가 競馬法 第2條 第1項 但書規定에 依한 競馬를 開催하려 할 때는 그 事由를 記載한 許可申請書 및 開催日時와 編成要領을 記載한 認可申請書を 當該 競馬 開催 1月前까지 朝鮮總督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 第 9條 朝鮮總督이 前2條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할 때는 各 競馬에서의 朝鮮產 新

- 馬의 出馬登錄馬數에 對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 第10條 競馬의 種類는 驅步 및 障礙競走로 한다.
- 第11條 競走의 回數는 1日 12回 以內로 한다.
- 第12條 驅步競走의 距離는 1,600m 以上, 障礙競走의 距離는 2,400m 以上으로 한다.
- 第13條 3歲以下馬 및 改良 增殖 또는 軍馬資源 確保에 裨益이 없는 馬는 이를 競走에 使用하지 못한다.
- 第14條 朝鮮馬事會는 朝鮮產馬만으로 하는 競走에 對하여는 賞을 厚하게 하여야 한다.
- 第15條 朝鮮馬事會는 다음 사람에게 미리 朝鮮總督에게 届出한 各 徽章을 交付하여 競馬場內에서는 常時 附着케 하여야 한다.
1. 有料入場者
 2. 無料入場者
 3. 競馬法 第5條 第1項에 列擧한 者
 4. 競馬法 第5條 第2項에 列擧한 者
- 第16條 勝馬投票券發賣所 및 拂戻金交付所는 競馬場內에 設置하며 또한 第19條 및 競馬法 第4條 第3項에 規定한 事項의 取締에 必要한 設備을 하여야 한다.
- 第17條 勝馬投票券의 發賣, 投票의 管理 및 拂戻金의 交付는 朝鮮馬事會 自體에서 하여야 한다.
- 第18條 勝馬投票券은 그 券面金額에 따라 5圓, 10圓 및 20圓의 3種으로 한다.
- 第19條 勝馬投票券의 發賣는 競馬 1競走에 對하여 1人 1枚에 限하며 單勝式 勝馬投票券 및 複勝式投票券을 發賣할 경우에는 競馬 1競走에 對하여 1人 各 1枚에 限한다.
- 勝馬投票券의 券面金額이 10圓 以下일 때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勝馬投票券은 競馬 1競走에 對하여 1人이 20圓에 達할 때까지의 枚數로 限하며 單勝式勝馬投票券 및 複勝式勝馬投票券을 發賣할 때는 競馬 1競走에 對하여 1人이 各 20圓에 達할 때까지의 枚數에 限하여 發賣할 수 있다.
- 第20條 勝馬投票券의 發賣는 當該競走 參加馬가 確定된 뒤에 開始하여 競走馬가 發走하기 前에 이를 마감하여야 한다.
- 第21條 勝馬投票券 發賣後 當該競走에 다음 各號의 하나에 該當되는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는 그 投票를 無效로 하며 朝鮮馬事會는 券面金額으로 勝馬投票券의 買戻에 應하여야 한다. 發賣한 勝馬投票券에 表示된 競走馬가 馬場에 出場하지 아니 하였을 때 또는 出場한 競走馬가 開催執務委員의 宣告에 依하여 發走에서 除外된 때는 그 競走馬에 對한 勝馬投票券 또한 같다.
1. 發走할 競走馬가 1頭뿐일 때
 2. 競走가 成立하지 않을 때
 3. 競走에 勝馬가 없을 때
- 第22條 朝鮮馬事會는 各 競走에 對하여 勝馬投票券의 發賣를 마감하였을 때는 遲滯 없이 各 競走馬에 對한 勝馬投票券의 總券面金額(勝式別)을 揭示하여야 한다.
- 第23條 單勝式勝馬投票法에서는 第1着馬를 勝馬로 한다.
複勝式勝馬投票法에서는 第1着, 第2着 및 第3着馬(勝馬投票券 發賣 開始時

- 競走馬가 7頭 以下 5頭 以上일 때는 第1着 및 第2着馬, 4頭 以下일 때는 第1着馬)를 勝馬로 한다
- 第1着, 第2着 및 第3着馬를 勝馬로 할 경우 第1着 또는 第2着馬가 2頭以上이 되었을 때는 次着順 以下馬는 1着順(2頭를 超過하였을 때는 超過頭數 1頭마다 다시 1着順)씩내린 着順으로 看做한다.
- 第1着 및 第2着馬를 勝馬로 할 때는 第1着馬가 2頭 以上일 때 또한 같다.
- 第24條 單勝式勝馬投法 및 複勝式勝馬投票法을 竝用할 때는 勝馬投票券發 賣開始時에 競走參加馬가 4頭 以下이면 그 競走에 對하여는 複勝式 勝馬投票券을 發賣하지 못한다.
- 第25條 勝馬가 確定되었을 때는 當該 競走에 對한 勝馬投票券의 賣得金(勝式別)을 別記算式에 依하여 各 勝馬에 對한 勝馬投票券의 拂戻金額을 算出하여 이를 當該勝馬에 對한 各 勝馬投票券의 券面金額에 按分한 것을 勝馬投票 的中者에게 勝馬投票券과 引換 交付하여야 한다. 但 그 金額은 勝馬投票券의 券面金額의 10倍를 超過하지 못한다.
-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拂戻金을 算出할 경우 勝馬投票 的中者가 없이 勝馬만 있을 때는 勝馬가 아닌 것으로 看做한다.
-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算出한 拂戻金의 金額이 勝馬投票券의 券面金額에 未達할 때는 그 券面金額을 拂戻金으로 한다.
- 第26條 競馬法 第6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拂戻하는 賣得金 또는 超過金이 있을 때는 賣得金은 그 金額에서 政府納付金과 收得金을 控除한 殘額을 勝馬投票券 購買者에게, 超過金은 그 金額을 出場한 競走馬中 勝馬 以外の 馬에 對하여 投票한 者에 對하여 勝馬投票券의 券面金額에 따라 拂戻金으로서 勝馬投票券 引換으로 交付하여야 한다.
- 第27條 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拂戻金을 交付할 때 그 交付上의 基礎가 되는 金額에 50錢 未滿의 端數가 있을 때는 그 端數는 切捨, 50錢 以上 1圓 未滿의 端數는 50錢으로하여 拂戻金을 交付할 수 있다.
- 前項의 端數切捨에 依한 金額은 朝鮮馬事會의 收入으로 한다.
- 第28條 朝鮮馬事會는 各季의 競馬終了마다 그 勝馬投票券의 賣得金額의 100분의 5 金額을 政府에 納付하여야 한다. 但 競馬法 第2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開催하는 競馬에 對하여는 그 때마다 이를 定한다.
- 第29條 朝鮮馬事會는 勝馬投票券의 發賣金의 出納을 明瞭하게 하기 위하여 必要한 帳簿를 따로 備置하여야 한다.
- 第30條 朝鮮馬事會는 各 競馬의 終了後 20日 以內에 다음 事項을 朝鮮總督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1. 出馬登錄馬數 및 入場馬數
 2. 出馬馬의 名稱, 新古別, 種類, 性, 年齡, 體高, 產地 및 所有者
 3. 各 競走에서의 受賞馬의 名稱, 着順, 賞金額, 競走距離, 速度, 負擔重量, 騎手 및 朝鮮產馬는 그 生産者
 4. 第15條 第1號 乃至 第3號에 揭示된 者 別로 그 等級別 入場人員數 및 入場料金額
 5. 各 競走別 勝馬投票券의 發賣金額 및 發賣枚數, 第21條 規定에 依하여

買戻한 金額, 賣得金額과 第25條 및 第26條 規定에 依하여 交付하여야 할 拂戻金の 總額

6. 競馬場內 諸般狀況

7. 競馬開催에 關한 收支計算

前項 第5條에 揭示한 事項은 勝馬投票法の 種類別로 記載하여야 한다.

第31條 本令에서 賣得金額이라 함은 勝馬投票券의 發賣金額에서 第21條 規定에 依하여 買戻하여야 할 金額을 控除한 것을 말한다.

第32條 朝鮮馬事會는 馬場, 馬見所, 下見所, 檢量所, 勝馬投票券發賣所, 拂戻金 交付所, 厩舍 其他 競馬開催에 必要한 建物 또는 工作物의 設置 및 그 位置, 構造 또는 設備의 變更에 對하여는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33條 朝鮮馬事會는 競馬場을 移轉, 新設 또는 廢止하려 할 때는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1. 移轉 또는 新設競馬場의 位置

2. 競馬場의 移轉 또는 新設土地의 狀況(狀況圖 添附)

3. 馬場, 馬見所, 下見所, 檢量所, 勝馬投票券發賣所, 拂戻金交付所, 厩舍 其他 競馬開催에 必要한 建物 또는 工作物의 位置, 構造 및 設備 및 圖面

4. 競馬場의 移轉 또는 新設에 所要되는 費用의 見積 및 支辨方法

第34條 本會에 依하여 朝鮮總督에게 提出하는 書類는 朝鮮總督府令 第5號의 規定에 不拘하고 直接 朝鮮總督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附 則



本令은 朝鮮馬事會令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朝鮮競馬令 施行規則은 이를 廢止한다.

朝鮮馬券稅令 (1942.2.28 公布 · 制令 第2號, 1950.2.9 廢止)

第 1條 朝鮮馬事會에는 本令에 依하여 馬券稅를 課한다.

第 2條 馬券稅는 勝馬投票券의 發賣에 依하여 얻은 金額 및 勝馬投票券의 購買者에게 拂戻할 金額에서 朝鮮總督이 定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에 對하여 課한다.

第 3條 馬券稅의 稅率은 다음과 같다.

1. 勝馬投票券의 發賣에 依하여 얻은 金額의 100分の 4

2. 勝馬投票券의 購買者에게 拂戻할 金額에서 朝鮮總督이 定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의 100分の 10

第 4條 朝鮮馬事會는 競馬 終了後 即時第2條의 金額을 記載한 申告書를 政府에 提出하여야 한다.

申告書の提出이 없을 때 또는 政府가 申告를 不當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政府는 그 課稅標準額을 決定한다.

第 5條 馬券稅는 競馬 終了後 20日 以內에 納付하여야 한다.

第 6條 朝鮮馬事會는 朝鮮總督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競馬의 施行에 關한 事項을 帳簿에 記載하고 또는 必要한 事項을 政府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 7條 稅務官吏는 朝鮮馬事會에 對하여 競馬施行에 關한 質問을 하거나 또는 帳簿, 書類를 檢査할 수 있다.

第 8條 朝鮮馬事會가 詐僞 其他 不正한 行爲로 馬券稅를 逋脫하거나 또는 逋脫하려 하였을 때는 그 逋脫한 또는 逋脫하려 한 稅金의 5倍에 相當하는 罰金에 處하고 即時 그 稅金을 徵收한다. 但 罰金額이 20圓에 未達하는 때는 20圓으로 한다.

第 9條 朝鮮馬事會가 第4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怠慢하거나 또는 虛僞의 申告를 한 때는 300圓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第10條 朝鮮馬事會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는 100圓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1. 第6條의 規定에 依한 帳簿의 記載를 怠慢하거나 또는 虛僞의 記載를 하거나 帳簿을 隱匿한 때
2. 第6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怠慢하거나 또는 虛僞의 申告를 한 때
3. 第7條의 規定에 依한 稅務官吏의 質問에 對하여 答辯을 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虛僞의 陳述을 하거나 또는 그 職務의 執行을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때



附 則

本令은 1942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社團法人 朝鮮競馬俱樂部 定款

第 1章 目的, 名稱 및 事務所

第 1條 本俱樂部는 競馬를 施行하여 馬匹의 改良增殖 및 馬事思想의 普及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條 本俱樂部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 한다.

1. 朝鮮競馬令에 依한 競馬의 施行
2. 新馬를 購入하여 抽籤으로 이를 會員에게 分讓하는 일
3. 其他 馬匹改良 增殖 및 馬事思想의 普及上 必要한 施設을 하는 일

第 3條 本俱樂部는 社團法人 朝鮮競馬俱樂部라 稱한다.

第 4條 本俱樂部는 事務所를 何道, 何府(郡), 何邑, 何洞(理), 何番地에 둔다.

第 2章 理事 및 監事

第 5條 本俱樂部에 다음 役員을 둔다.

理事 7人, 監事 3人

第 6條 理事 및 監事は 總會에서 會員이 互選한다.

理事 및 監事の 就任은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就任認可를 받지 못한 者 또는 解任命令을 받은 者는 3年間 理事 또는 監事로 選出할 수 없다.

第 7條 理事 및 監事の 任期는 3年으로 한다. 但 任期滿了後라도 後任者가 就任할 때까지는 그 任務를 遂行한다.

第 8條 理事 또는 監事に 缺員이 있을 때는 補闕選舉를 한다. 但 特別한 事情이 있을 때는 다음 總會까지 選舉를 延期할 수 있다.

補闕選舉로 選出된 理事 및 監事は 前任者의 殘任期間 在任한다.

第 9條 監事は 本俱樂部의 財産狀況 및 理事의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하며 必要하다고 認定할때는 總會를 召集하거나 또는 朝鮮總督에게 諸般 報告를 할 수 있다.

第10條 理事中 1人을 理事長, 2人을 常務理事로 한다.

理事長 및 常務理事는 理事가 互選한다. 理事長 및 常務理事의 就任은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11條 理事長은 本俱樂部를 代表하며 一切의 業務를 統轄한다.

常務理事는 理事長의 指揮를 받아 事務를 掌理하며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12條 理事長은 每期 本俱樂部의 事業成績 및 業務執行狀況을 總會에 揭示함과 동시에 朝鮮總督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13條 本俱樂部의 役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第 3章 會員 및 名譽會員

第14條 本俱樂部의 會員은 會費로서 年額 金10圓을 納付하고 抽籤에 依하여 新馬引受의 義務를 진다.

第15條 本俱樂部의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會員 2人 以上の 紹介에 依하여 住所, 姓名 및 職業을 記載한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第16條 會員의 入會는 理事 全員の 承諾이 있어야 한다.

第17條 會員은 每年 1月 그 年度의 會費 全額을 納付하여야 한다.

第18條 新規入會者는 入會承諾 通知日부터 2週日 以內에 入會金 300圓 및 그 年度의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이 期間內에 納付하지 않을 때는 入會申請을 取消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19條 會員이 會費納付에 怠慢하여 再次 期間을 定하여 督促하여도 指定 期間內에 納付하지 아니 할 때는 會員의 資格을 喪失한다. 이 境遇에는 그 뜻을 本人에게 通知한다.

第20條 本俱樂部의 名譽를 毀損하거나 또는 不正한 行爲를 하거나 其他 會員으로서의 義務를 다 하지 아니 할 때는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除名할 수 있다. 이境遇에는 그 뜻을 本人에게 通知한다.

- 第21條 會員이 脫會하러 할 때는 書面으로 本俱樂部에 申請하여야 한다.
- 第22條 入會를 拒絶 당한 者 및 第18條 規定에 依하여 入會申請을 取消한 것으로 看做된 者는 1年間, 第20條 規定에 依하여 除名된 者는 3年間 本俱樂部의 會員이 될 수 없다.
- 第23條 脫會, 失格 또는 除名에 依하여 會員의 資格을 喪失한 者는 既納付한 入會金 및 會費를 返還하지 않는다.
- 第24條 名望이 있거나 또는 本俱樂部 事業에 關하여 功勞가 있는 者는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名譽會員으로 推薦할 수 있다.
名譽會員에 對하여는 會員에 關한 規定을 適用하지 않는다.
- 第25條 本俱樂部는 會員名簿를 備置하고 會員 및 名譽會員의 住所, 姓名 및 職業을 記載한다.
- 第26條 本定款에 規定하는 外에 入會, 脫會 및 會員의 處罰에 關한 細則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이를 定한다.

第 4章 理事會

- 第27條 理事會는 必要에 따라 理事長이 召集한다.
理事會는 理事定員의 半數以上 出席하지 않으면 會議를 開議하지 못한다. 但 競馬開催期間中 그 競馬의 開催에 關하여 急히 施行하여야 할 事項이 發行하였을 때 競馬監督官의 承認을 받았을 때는 理事定員의 3분의 1以上 出席으로도 無妨하다.
理事會의 議事는 出席理事의 過半數로써 決定한다.
- 第28條 理事長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 第29條 다음 事項은 理事會의 決議를 要한다.
1. 競馬施行規程, 勝馬投票規程, 執務細則, 給與規程, 會計規程, 積立金 管理規程 其他 規則의 制定 또는 改廢
 2. 事務長, 書記長, 馬場取締, 審判委員, 發賣係員, 檢量係員, 速度係員 및 勝馬投票券의 發賣와 拂戻金交付事務에 從事하는 主係員의 採用
 3. 豫備費의 支出 또는 豫算 各款項目의 流用
 4. 馬場, 馬見所 其他 工作物의 新築 增築 또는 大修繕
 5. 不動產 및 重要動產 또는 財產權의 處分
 6. 不動產의 管理方法
 7. 借入金 其他 債務의 負擔
 8. 總會에 提出하는 議案
 9. 訴訟, 和解 또는 仲裁 契約
 10. 其他 本俱樂部에 關한 重要事項
- 前項 第1號 乃至 第7號에 揭示한 事項에 對하여는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 5章 總會

- 第30條 總會는 通常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눈다.
通常總會는 每年 2月, 臨時總會는 必要에 따라 이를 召集한다.

- 第31條 總會는 理事長이 召集한다.
 總會의 召集은 적어도 期日 10日前에 開會日時, 場所 및 會議目的 事項 등을 記載한 書面으로 會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第32條 會員의 3분의 1 以上으로부터 會議의 目的事項을 揭示하고 總會開催의 要求가 있을 때는 理事長은 그 要請을 받은 날로부터 2週日 以內에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 第33條 總會의 解散 및 定款變更議事에 對하여는 會員의 3분의 2 以上, 其他 議事에 對하여는 會員의 3분의 1 以上 出席이 아니면 會議를 開議할 수 없다.
 出席會員이 前項의 定數에 未達할 때는 假決議를 하고 다시 그 뜻을 通知하여 1週日 以內에 總會를 召集하고 그 會議에서 假決議 認否를 決定한다.
- 第34條 總會의 議事는 出席會員의 過半數로써 이를 決定한다. 可否 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解散 및 定款變更議事는 出席會員의 3분의 2 以上の 同意를 要한다.
 總會에 出席할 수 없는 者는 出席會員을 代理人으로하여 表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前項의 경우 代理人은 本人의 委任狀을 提出하여야 한다.
- 第35條 解散에 關한 總會의 召集은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第36條 總會의 顛末은 議事錄에 記載하고 議長 및 出席會員 2人 以上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第 6章 財 務

- 第37條 本俱樂部의 維持 및 事業經營에 必要한 經費는 다음 收入으로 이를 支辨한다.
 1. 所有財産의 收入
 2. 會員의 入會金, 會費 및 有志者의 寄附金
 3. 事業收入
- 第38條 本俱樂部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에 시작되고 12月 31日에 끝난다.
- 第39條 本俱樂部는 每會計年度의 一切의 收入을 歲入으로 하고 一切의 支出을 歲出로하여 豫算을 編成한다.
- 第40條 豫算은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이를 編成하여 每會計年度 1月前에 朝鮮總督에게 提出, 認可를 받아야 한다.
- 第41條 決算은 豫算의 款 項目에 따라 이를 編成하고 每會計年度 終了後 2月 以內에 總會의 決議를 거쳐 朝鮮總督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 第42條 每會計年度 收支決算에 따라 생긴 剩餘金을 處分하려 할 때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但 翌年度에 移越하는 경우는 除外한다.
- 第43條 積立金의 使用에 對하여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第44條 解散時의 殘餘財産의 處分에 對하여는 總會의 決議를 거쳐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第45條 理事, 監事 및 職員의 實費辦償金, 手當金 및 旅費에 對하여는 給與規程으

로 이를定한다.

第46條 本章에 規定하는 外의 會計에 關한 事項은 會計規程으로 이를 定한다.

第 7章 贊助員

第47條 本俱樂部의 事業을 贊同하는 者를 贊助員으로 한다.

第48條 贊助員은 그 所有 馬匹을 本俱樂部의 競馬施行規程에 따라 競馬에 出走시킬 수 있다.

第49條 贊助員에 關하여는 第14條 乃至 第23條 및 第25條의 規程을 準用한다.

贊助員의 會費는 年額 20圓으로 하고 入會金은 徵收하지 않는다.

社團法人 朝鮮競馬協會 定款

第1章 目的, 名稱 및 事務所

第 1條 本協會는 會員 共同利益의 增進, 競馬事業의 統一進步, 馬匹의 改良增殖 및 馬事思想의 普及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條 本協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 한다.

1. 競馬會의 競馬施行, 勝馬投票 및 會計에 關한 規程과 執務上의 統一改善에 關한 事項
2. 競走馬名 및 騎手服色 其他 登錄에 關한 事項
3. 競走馬의 購買斡旋에 關한 事項
4. 優良馬의 獎勵에 關한 事項
5. 其他 前條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項

第 3條 本協會는 社團法人 朝鮮競馬協會라 稱한다.

第 4條 本協會는 事務所를 京城府에 둔다.

第 2章 役員 및 職員

第 5條 本協會에 다음 役員을 둔다.

會長, 理事 7名 以內, 監事 3名 以內

役員의 就任은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 6條 役員은 總會에서 選舉한다.

第 7條 役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但 任期 滿了後라도 後任者가 就任할 때까지는 그 任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第 8條 役員에 闕員이 있을 때는 補闕選舉를 한다. 但 特別한 事情이 있을 때는 다음 總會까지 選舉를 延期할 수 있다.

第 9條 理事中 1名을 常務理事로 한다.

常務理事는 理事가 互選한다.

常務理事의 就任은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10條 會長은 本協會를 代表하고 一切의 業務를 統轄하며 會議의 議長이 된다.

常務理事는 會長의 指揮를 받아 會務를 掌理하고 會長 事故 있을 때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會長 및 常務理事 모두 事故가 있을 때는 理事會에서 選任한 理事가 會長 職務를 代理한다.

第11條 監事는 本協會의 財産의 狀況 및 理事의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하며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總會를 召集하거나 또는 朝鮮總督에게 諸般 報告를 할 수 있다.

第12條 本協會에 參事 6名 以內를 둘 수 있다.

參事는 總會에서 會員인 法人의 役員 및 書記長中에서 推薦한다.

第13條 參事の 任期는 2年으로 한다.

參事는 參事會를 組織하여 重要한 會務의 諮問에 應한다.

參事會는 會長이 召集한다.

參事는 理事 또는 監事を 兼하지 못한다.

第14條 本協會에 顧問 若干名을 둘 수 있다.

顧問은 總會에서 推薦한다.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며 理事會, 參事會 및 總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開할 수 있다.

第15條 本協會에 書記長, 書記 및 雇員을 두며 會長이 이를 任免한다.

書記長은 常務理事의 指揮를 받아 事務를 掌理하며 其他 職員은 上司의 指揮를 받아 事務에 從事한다.

會長은 會務上 必要에 따라 囑託을 둘 수 있다.

第 3章 會員

第16條 本協會는 朝鮮競馬令에 依하여 競馬를 施行하는 法人을 會員으로 한다.

第17條 本協會의 會員은 會費를 負擔하여야 한다.

負擔의 限度는 總會에서 定한다.

第18條 會員으로서 本協會의 目的에 違反하고 會員으로서의 體面을 毀損하거나 또는 會員으로서의 義務를 履行하지 않을 때는 總會의 決議에 依하여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 이를 除名할 수 있다.

前項의 規定에 따라 除名되어도 既納付會費는 返還하지 않는다.

第19條 前條의 規定에 따라 除名된 法人所屬 抽籤馬 및 그 法人施行 競馬에 出場한 馬는 本協會 會員이 施行하는 競馬에 出場할 수 없다.

第 4章 總會

第20條 總會는 通常總會 및 臨時總會로 나눈다.

通常總會는 每年 1回, 臨時總會는 必要에 따라 召集한다.

競馬開催日程은 總會에서 이를 協議 決定한다.

第21條 總會는 會長이 召集한다.

第22條 會員의 半數以上이 會議의 目的을 提出하고 總會 召集 要請이 있을 때는 會長이 그 要請을 받은 날로부터 1週日 以內에 召集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 第23條 總會는 解散 및 定款變更 議事에 對하여는 會員 3분의 2 以上, 其他 議事는 會員 半數以上 出席이 아니면 開議하지 못한다.
- 第24條 總會에서 出席會員 3분의 2 以上 同意가 있을 때는 미리 通知하지 않은 事項에 關하여 議決할 수 있다.
- 第25條 總會에 議事는 出席會員의 過半數로 決定하며 可否 同數일 때는 議長의 決定에 따른다.
 解散 및 定款變更의 議事는 出席會員의 3분의 2 以上の 同意가 있어야 한다.
- 第26條 總會에 出席할 수 없는 會員은 出席會員을 代理人으로하여 表決權을 行事할 수 있다.
 前項의 경우 代理會員은 委任狀을 提出하여야 한다.
- 第27條 解散에 關한 總會의 召集은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第28條 事業遂行上 必要한 規程은 總會의 決議에 依하여 따로 이를 定하여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第29條 總會의 顛末은 議事錄에 記載하고 議長 및 出席會員 2名 以上 署名 捺印하여 이를 保存한다.

第 5章 財 務

- 第30條 本協會의 維持 및 事業經營上 必要한 經費는 다음 收入으로 支辨한다.
1. 會員의 負擔金
 2. 所有財産의 收入
 3. 事業收入
 4. 補助金 및 寄附金
- 第31條 本協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에 시작되고 12月 31日에 끝난다.
- 第32條 收支豫算은 總會의 決議에 依하여 이를 編成하여 每會計年度 1月前에 朝鮮總督에게 提出, 認可를 받아야 한다.
 豫算의 更正은 그 때마다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第33條 收支決算은 豫算의 款 項에 따라 編成하며 總會의 決議를 거쳐 每會計年度 終了後 2個月 以內에 朝鮮總督에게 届出하여야 한다.
- 第34條 特別히 定하는 경우 外에는 다음 事項은 總會의 決議를 거쳐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1. 不動産 및 重要한 財産權의 處分
 2. 不動産의 管理方法
 3. 借入金 其他 債務의 負擔
 4. 解散時의 殘餘財産의 處分
 5. 積立金의 使用
 6. 其他 重要事項
- 第35條 每會計年度 收支決算에 依하여 發生하는 剩餘金을 處分하려 할 때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但 翌年度에 移越하는 경우는 除外한다.
- 第36條 役員 및 職員의 實費辦償金, 手當金 및 旅費에 對하여는 給與規程으로 定

한다.
第37條 本章에 規定하는 것 外에 會計에 關한 事項은 會計規程으로 定한다.

朝鮮馬事會 定款 (1942. 3. 1 制定)

第 1章 總 則

- 第 1條 本會는 朝鮮馬事會令에 依하여 設立하며 朝鮮馬事會라 稱한다.
第 2條 本會는 朝鮮에 있어서의 馬事의 振興을 圖謀하고 國防 및 産業上 必要한 馬 資源의 充實 確保를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條 本會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事業을 한다.
1. 馬匹移植에 關한 施設
2. 馬匹改良, 生産, 育成 및 利用의 指導獎勵에 關한 施設
3. 馬匹衛生에 關한 施設
4. 競馬의 施行
5. 馬事에 關한 調査 및 研究
6. 前 各號에 揭示한 外에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必要한 事業
第 4條 本會는 主事務所를 京城府에 둔다.
本會는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道에 從事務所(支部)를 둘 수가 있다.
第 5條 本會의 公告는 朝鮮總督府 官報 및 本會가 發行하는 會報로써 한다.

第 2章 役員 및 職員

- 第 6條 本會에 다음 役員을 둔다.
會長 1人, 副會長 1人, 理事 6人 以內, 監事 2人 以內, 評議員 若干名
前項의 役員은 朝鮮總督이 任命한다.
第 7條 會長, 副會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 및 評議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理事 또는 監사가 缺員이 있을 때 補充된 理事 또는 監사는 前任者의 殘任期間 在任한다.
第 8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理한다.
副會長은 會長 有故時에 그 職務를 代理하며 會長 缺員時는 그 職務를 執行한다.
副會長 및 理事는 會長을 補佐하며 本會의 業務를 掌理한다.
監사는 本會의 業務를 監査한다.
評議員은 名譽職으로 하며 事業經營에 關한 重要事項에 對하여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 9條 會長, 副會長 및 理事는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지 않으면 他職業에 從事할 수 없다.

- 第10條 本會에 名譽總裁를 둔다.
名譽總裁는 朝鮮總督을 推戴한다.
- 第11條 本會는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 馬事に 功勞가 있는 者 또는 馬事に 學識 經驗이 있는 者를 顧問으로 推戴할 수 있다.
顧問은 本會의 事業經營에 關한 重要事項에 對하여 意見을 開陳한다.
- 第12條 本會는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 競馬參與를 둘 수 있다.
競馬參與는 競馬에 關한 知識經驗이 있는 者를 會長이 委囑한다.
競馬參與는 競馬에 關한 重要事項에 對하여 會長이 諮問]에 應한다.
- 第13條 本會의 支部에 支部長을 둔다.
支部長은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 會長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支部長은 會長이 定하는 바에 따라 支部에 關한 業務를 掌理한다.
- 第14條 本會에 理事會 및 評議員會를 둔다.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및 理事로써 組織한다.
理事會 및 評議員會의 議長은 會長이 된다.
- 第16條 本會에 다음 職員을 둔다.
參事, 主事, 技師, 書記, 技手
前項의 職員은 會長이 任免한다.

第 3章 事業의 執行

- 第17條 다음에 揭示하는 事項은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는다.
1. 定款의 變更
 2. 事業計劃 및 그 變更
 3. 收支豫算 및 그 變更
 4. 事業執行에 關한 規程 및 庶務, 會計와 資産의 管理에 關한 規程 其他 諸規程의 制定 및 改廢
 5. 借入金과 不動産의 取得 및 處分. 但 借入金은 當該年度 收入으로 償還하는 一時借入金은 除外한다.
 6. 債務의 保證 및 收支豫算으로 定하는 것 以外の 새로운 義務의 負擔과 權利의 拋棄
 7. 積立金의 造成, 管理 또는 處分
- 第18條 다음 事項은 評議員會의 諮問을 받는다.
1. 定款의 變更
 2. 事業計劃
 3. 收支豫算
 4. 其他 本會의 業務經營에 關한 重要事項으로서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 4章 資産 및 會計

- 第19條 本會의 資産은 다음 것으로 이루어진다.
1. 所有財産 및 이에서 얻는 收入
 2. 其他 收入

- 第20條 本會는 다음 事項에 對하여 使用料, 手數料 또는 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1. 販賣 또는 購買 斡旋
 2. 營造物 및 物件의 使用
 3. 免許, 登錄, 調査, 鑑定, 證明 및 出版使用料, 手數料 및 實費辨償額은 會長이 定한다.
- 第21條 本會의 事業年度 및 會計年度는 1年으로 하며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 까지로 한다.
- 第22條 本會는 每年 10月 31日까지 翌年度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의 認可를 朝鮮總督에게 申請한다.
- 第23條 本會의 收支決算은 每會計年度 終了後 3月 以內에 朝鮮總督에게 報告한다. 前項의 收支決算에는 前年度末現在의 財産目錄 및 業務報告書를 添附하도록 한다.
- 第24條 本會의 保有資金은 經常經費로 必要한 것 外에는 다음 方法으로 管理한다.
1. 國債證券, 地方債證券 또는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은 有價證券의 取得
 2. 朝鮮總督이 指定한 銀行에의 預金 또는 郵便貯金

